

2008 공통교재

회계실무



시·도 공무원교육원

회 계 실 무

시·도 공무원교육원

공무원윤리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길 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목 차

지출분야

제I장 회계제도 일반	6
1. 회계의 의의	6
2. 회계의 종류	7
3.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10
4.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13
5. 통합지출관	18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19
제II장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26
1. 세출예산의 집행 흐름도	26
2. 예산의 집행품의	27
3. 재정사항 합의	30
4. 예산집행의 제한	31
5. 지출원인행위	35
제III장 지 출	42
1. 지출의 개념	42
2. 지출의 절차	42
3. 예산비목별 집행기준	57
제IV장 지출의 특례	102
1. 지출특례의 개념	102
2. 지출특례의 내용	103
제V장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소멸시효	127
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27
2. 소멸시효	129

제Ⅵ장 결 산	136
1. 결산의 의의	136
2. 결산보고서	138
3. 결산의 준비	140
4. 출납사무의 완결	142
5. 결산 잉여금의 처리	143
6. 결산검사	144
7. 지방의회회 결산승인	146
8. 보고 및 고시	146
제Ⅶ장 회계장부 관리 및 계산증명	149
1. 회계장부	149
2. 계산증명	150
제Ⅷ장 공유재산 관리	152
1. 공유재산의 일반관리	152
2.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155
3.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157
4.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161

계 약 분 야

제Ⅰ장 계약의 의의와 특징	166
1. 계약의 의의	166
2. 계약의 집행기관	172
3. 계약체결 금지	174
4. 계약의 대행	176
제Ⅱ장 자치단체 계약의 종류	180
1.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	180

2.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182
3. 공동계약의 형태 및 비교	214
제Ⅲ장 입찰의 절차	225
1. 입찰 및 계약절차 흐름도	225
2. 입찰절차별 세부내용	226
제Ⅳ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38
1. 추정가격	238
2. 예정가격	241
3.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작성 절차	245
4. '복수예비' 가격의 산정	246
5. 감정가격,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	247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	249
제Ⅴ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	265
1.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265
2. 행자부의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267
제Ⅵ장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269
1. 일반경쟁계약	269
2. 제한경쟁계약	270
3. 지명경쟁계약	276
4. 수의계약	279
제Ⅶ장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301
1. 적격심사제도 개념	301
2. 적격심사 범위 및 적용대상	301
3. 심사방법	302
4. 적격심사 절차	303
5. 적격심사의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305
6.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306

7. 적격심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307
제VIII장 계약체결, 이행 및 대가지급	382
1. 계약의 체결	382
2. 계약문서	382
3.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392
4. '하자보수' 보증제도	408
5. 계약의 이행 지체 및 해제·해지	412
6. 부정당업자 제재	413
제IX장 계약금액 조정	422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422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427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428
제X장 대형공사계약에관한특례 및 국제입찰	432
1. 대형공사계약에관한특례	432
2. 국제입찰	434
제XI장 일반건설공사의 하도급	441
1. 하도급제도 개요	441
2. 하도급의 제한	441
3. 부당하도급의 제재	442
4. 하도급계약 결과통보	442
5. 하도급대가의 지급	442
6. 하도급 심사승인	443
<부 록> 계약업무관련 법원의 명령	447

지 출 분 야

제 I 장 회계제도 일반

학습목표

- 회계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정 및 예산의 개념과 비교해 본다.
-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를 구분하고, 그 의미를 알아본다.
-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직무 및 책임의 한계를 이해한다.
-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내용, 대리자 및 분임자의 임명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 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절차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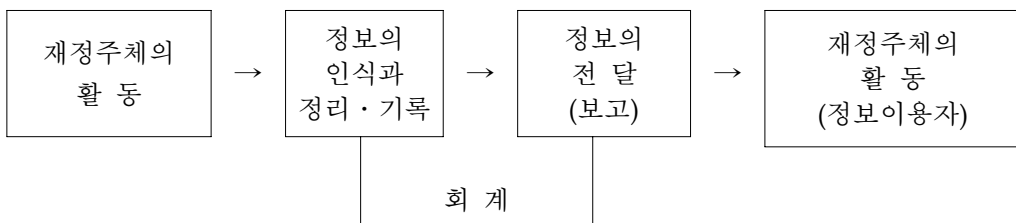
학습내용

1. 회계의 의의

가. 회계의 개념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이다.

- **재정(Finance)** : 경제 주체로서의 종합적인 경제활동
- **예산(Budget)** :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의 재정적 계획
- **회계(Accounting)** : 계수로서 연속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작용



나. 회계의 특성

- **엄정성** : 회계문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써 책임소재의 명확화
- **정확성** : 지출서류에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수정액등으로 고침) 등의 제한
 ※ 정정하는 경우 정정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 **공정성** :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 **통일성** : 서식, 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재량성 불인정

2. 회계의 종류

가.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구 분	내 용	관 련 법 규
현금회계	현금의 출납, 보관을 관리하는 회계 (회계의 주종)	지방계약법령, 지방재정법령, 관련개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물품회계	현금·공유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및 각종 물품을 출납·관리하는 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물품관리조례
재산회계	부동산 등 재산을 출납·관리하는 회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채권회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를 관리하는 회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나. 목적에 의한 분류

- 1) **일반회계** : 지방자치단체 기능수행을 위하여 공적 일반활동에 소요되는 수입·지출을 포괄하는 회계
- 2) **특별회계**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

▲ 기타특별회계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예)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관광개발사업 및 의료보험 특별회계 등

▲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이며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됨

예) 상·하수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등

질 의 회 신

< 질의 >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국·도비의 처리방법은

< 답변 >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나 특별회계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성립전 예산 집행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성립전 예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예산편성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참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차이점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설치사유	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 활동	·특정사업의 운영 ·자금보유 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특정목적에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조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 제공이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 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용자사업 등 유상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운용계획 확정·집행	자치단체가 예산편성권을 가지며, 의회가 심의·확정함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과 동 (일반회계와 같음)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과 동 (일반회계와 같음)

3.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는 물론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원칙

※ 예외 :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결산잉여금이월, 지난 회계년도 지출, 앞당겨 지출 등

질 의 회 신

<질의>

소규모 공사계약을 12. 30일자로 하고 공사기간은 30일로 다음연도 1월 28일까지 준공토록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중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해에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이후에는 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은 불가능하므로 증액되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감액 지급해야 할 것임

- 회계연도 : 1. 1 ~ 12. 31까지 (지방재정법 제6조)
- 출납폐쇄기한 : 2월말 (지방재정법 제8조)
- 출납정리기한 : 3. 10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 세출에 대한 지출은 사실상 2월말로 종료되나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3.10까지 금고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출납정리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한이 공휴일인 때에는 출납정리에 관한 사무는 기한 전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나.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15조)

-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 ※ 예외 : 수입대체경비(행정자치부-수입대체경비 운용요령 참고)
 - 자치단체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경비로서
 -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음

다.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

-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기부금, 보조금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법령에 의하여 제한

《 예 외 》

-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의정회 관련 대법원 판례

의정회는 지방재정법(舊)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나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기부·보조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의결 대상으로 한 재의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위반되어 위법임

질 의 회 신

<질의>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특정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 시행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아 사회단체보조금(307-03)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자치단체조례 등에 의하여 교부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 귀 단체의 경우처럼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민간(사회) 단체에 위탁 시행할 경우에는 민간위탁금(307-05)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 출자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의 타 단체에 대한 출자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제한 단,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자할 수 있음

《 예 외 》

- ◆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 ◆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예시: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마. 지출 및 지급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71조)

○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자 외에는 지급할 수 없음 (정당한 채주에게만 지급 가능)

※ 예외 : 출납원에 대한 자금교부 및 금고에 대한 자금의 교부

바. 회계기관의 분립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75조)

회계기관의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직무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토록 하여 회계관리의 엄정성과 직무상의 비위를 방지

- 수입 : 징수관(분임포함)수입금 출납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음.
- 지출 : 경리관(분임포함),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각각 겸직할 수 없음.

※ 예외 :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 관서에 대하여는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겸할 수 있고 3인이내의 관서에서는 세입징수와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음

질 의 회 신

<질의>

○○도에서 세정과와 회계과가 직제개편에 의하여 통합되어 “세정 회계과”로 되었을 경우 세정회계과장이 분임징수관과 분임경리관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회계기관의 분립은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직무를 분리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격이 다른 명령계통인 분임징수관과 분임경리관의 직무는 상호 겸직이 가능함

4.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방재정법 제91조, 재무회계규칙 제3조)

가. 임명 또는 위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

나. 관직지정 예시

1) 광역시의 경우

관 직 명	본 청	지 방 의 회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징 수 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서장, 국장 또는 부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서장, 회계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세정담당관, 세외수입업무 담당하는 각 실·과장		세입업무담당과장	
경 리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처장	관서의장, 부서장, 국장 또는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서장, 회계업무담당국장	
분 임 경 리 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회계업무담당사무관	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기획관리실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처장	관서의장, 부서장, 국장 또는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서장, 회계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총괄채무관리관	예산담당관			
채 무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처장	관서의장, 부서장, 국장 또는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서장, 회계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관리실장			
지 출 원	회계업무담당사무관	경리업무담당사무관	경리지출업무담당자	
수 입 금 지 출 원	세외수입업무담당사무관	총무업무담당사무관	세입업무담당자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일 상 경 비 지 출 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사무관	총무업무담당사무관, 의사업무담당사무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경리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 입 세 출 외 금 출 납 원	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 주사	경리지출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주사

2) 도의 경우

관 직 명	본 청	지 방 의 회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징 수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처장	관서의장, 부서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서장, 회계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분 입 징 수 관	세정과장,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장		세입업무담당과장	관서의 장
경 리 관	자치행정국장, 회계부서에 국장 직제가 없는 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	사무처장	관서의장, 부서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서장, 회계업무담당국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입경리관)	
분 입 경 리 관	회계부서에 국장 직제가 있는 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자치행정국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서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서장 또는 세입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총 괄 채 무 관 리 관	예산담당관			
채 무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처장	관서의장, 부서장 또는 국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서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기획관리실장			
지 출 원	경리담당사무관	경리담당사무관	경리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담당사무관,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사무관	세외수입담당사무관	세입업무담당	세입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서무담당사무관	의사담당사무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보조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담당(경리업무담당인이 일상경비출납원인 경우 경리주무자)

3) 기초자치단체 市의 경우

관 직 명	본 청	지 방 의 회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징 수 관	부시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는 세입업무 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세정과장, 세외수입 업무담당 각 실과장		세입업무담당과장	
경 리 관	부시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는 회계업무 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분 임 경 리 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부시장, 국장직제가 있는 때는 세입업무 담당국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총 괄 채 무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채 무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지 출 원	경리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경리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 및 징수 업무담당, 세외수입 업무 주관 각 담당	의정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4) 기초자치단체 郡의 경우

관 직 명	본 청	지 방 의 회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징 수 관	부군수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재무과장, 세외수입 업무담당 각 실과장		세입업무담당과장	
경 리 관	부군수	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분 임 경 리 관	재무과장, 각 실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부군수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총 괄 채 무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채 무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지 출 원	경리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경리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담당, 세외수입업무 주관 각 담당	의정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질의 회신

<질의>

분임경리관의 장기출장 시 일상경비출납원(또는 지출원)을 분임경리관으로 임명하고 차석담당(5급) 또는 주무(담당차석)담당자를 출납원 또는 지출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회계관직자의 출장 등 일시적으로 유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임명해야 함. 다만, 직무대리자가 공석중이거나 다른 회계관직을 담당하고 있어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적임자를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을 것임.

5. 통합지출관(지방재정법 제90조)

가. 의 의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복식부기의 통합재무제표 산출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지출관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 있음 (아직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없음)

나. 통합지출관의 임무

- 재무보고서의 작성
- 지출원 및 출납원이 지출 의뢰한 자금의 통합지출
- 자치단체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 ※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음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가. 변상책임(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 의 의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함.

2) 변상책임의 주체 : 회계사무 집행자,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성립요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할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것**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것
-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것
-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을 것

질 의 회 신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품의를 하는 공무원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업부서 공무원도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4) 변상책임의 유형

- **단독변상** : 회계관계직원 1인만이 책임을 짐
- **공동변상** :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 책임을 지고,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할하여 책임을 짐.

- 연대변상 : 회계관계직원들의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요구하여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 당해 상급자는 그 명령을 집행한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짐.

— < 예 외 > —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의 연대책임이 아닌 **단독책임을 짐**
(회책법 제8조2항, 3항. 2001. 4. 7.개정)

나. 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절차

1) 변상책임의 판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원이 변상판정하기 전이라도 변상을 명할 수 있음.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유무와 그 범위는 감사원의 판정에 의하여 확정

2) 변상책임의 구제

- 변상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상판정서가 도달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음
- 감사원의 재심의 불복 시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

3) 변상책임의 소멸 : 변상완료에 의하여 소멸

— < 대법원판례 2001. 2. 23, 99두5498 > —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변상책임이 있음

다. 회계책임

1) 징계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이 법령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징계는 신분상 조치이므로 변상책임과는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여 병과 가능

2) 형사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이 형사법규 위반시 형사책임도 짐.
- 변상책임, 징계책임과는 목적과 기능, 책임의 성립기초가 다르므로 병과 가능

3) 외부적인 효력

-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책임을 질뿐 사인과 체결한 계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변동되지 않음.

라. 재정보증

1) 근 거

-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자 포함)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2) 재정보증 대상

- 지방재정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보조자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회계사무에 준하여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예시 : 보상업무 담당자)

3) 재정보증 설정

-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정
- 재정보증 방법 : 보증보험
- 보증기간 : 1년(매년 갱신), 직위포괄계약 때는 3년
- 보험료 지급 :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도 : 1천만원이상에서 자율결정)

4)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사유발생 때는 보험회사 통지 및 징수
-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직원에게 변상요구(사전 채권확보 필요)

< 감사원 변상판정 사례 >

-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횡령(1999년도 감판 제11호)
 -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판매수량을 속여 쓰레기봉투 판매대장을 정리한 후 봉투 판매대금의 일부를 시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사용한 수입금출납원 보조자는 변상책임이 있다.
- 유류 판매대금 횡령(2000년도 감판 제5호)
 - 실제 매출한 유류량보다 금액을 늘려서 판매일보에 기록하고 그 차액을 횡령한 회계책임자의 보조자는 변상책임이 있다.
-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부당지급(2000년도 감판 제10호)
 - 사업지구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소유자에게 주거비 등이 지급되게 한 경리관의 보조자들은 변상책임이 있다.
- 농경지 복구비 편취(1999년도 감판 제13호)
 - 피해가 없는 농경지를 유실된 것으로 허위 조사·보고하고 임의 개설한 농지소유자 명의계좌에 복구비를 입금한 후 개인용으로 인출·사용한 분임경리관 보조자는 변상책임이 있다.

학습정리

- 회계는 **엄정**하고 **정확**해야하며 **공정**하고 **통일성**을 **유지**해야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 회계는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분류되며 특별회계는 다시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분류되며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다.
- 회계는 당해연도의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며 1회계연도 (1.1-12.31) 단위로 집행을 정리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 기관에 납부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에 계상해야하는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원칙**,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집행을 제한하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원칙**, 법령의 근거없이 **출자를 제한하는 원칙**,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채주이의 돈을 집행할수 없는 **지출 및 지급의제한원칙**, 회계관직에서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을 분리하여 회계관직공무원을 지정하는 **회계기관 분립의 원칙**이 있다.
- 회계관직은 집행을 결정하는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으로 구분되고 집행을 담당하는 관직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으로 구분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지며 이외에 징계책임, 형사책임은 별도로 지는 것임
-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면 1년 단위로 재정보증에 가입해야 함.

학습평가

1. 다음 중 회계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엄정성 ② 정확성 ③ 통일성 ④ 형평성

< 정 답 > ④ 회계는 예산편성규모 등에 따라 집행되므로 형평성을 요구하지는 않음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계속비예산 ② 세출예산의 이월
③ 지난연도지출 ④ 출납폐쇄기한

< 정 답 > ④ 출납폐쇄기한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것임

3.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 민간단체 행사에 지원하는 경비

< 정 답 > ④ 민간단체 행사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함 (지방재정법 제 17조 제1항 제 4호)

4. 회계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 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②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③ 출납정리의 원칙 ④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원칙

< 정 답 > ③ 출납정리는 회계의 일반원칙으로 볼수없음

용어사전

○ 채권

타인으로부터 앞으로 재화 또는 노무를 받을 권리로서 물권에 이르는 수단을 말한다. 즉, 물권은 생활자료로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채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이 물자를 급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채권은 물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대종을 이룬다.

○ 출자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 등의 일부로서 금전·기타재산·신용 또는 노무를 법인이나 조합에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 회계년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역년제이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도 역년제 회계년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매년 10월 1일에서 다음해 9월 30일까지, 일본, 영국, 인도 등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

○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89조 내지 제96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4조 내지 제135조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2조 내지 제7조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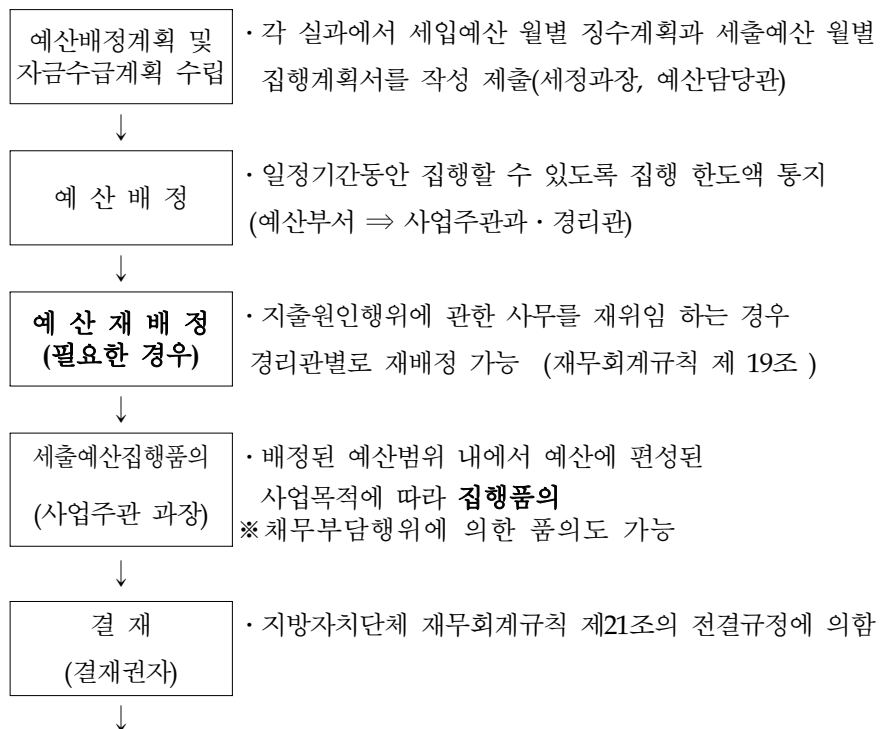
제II장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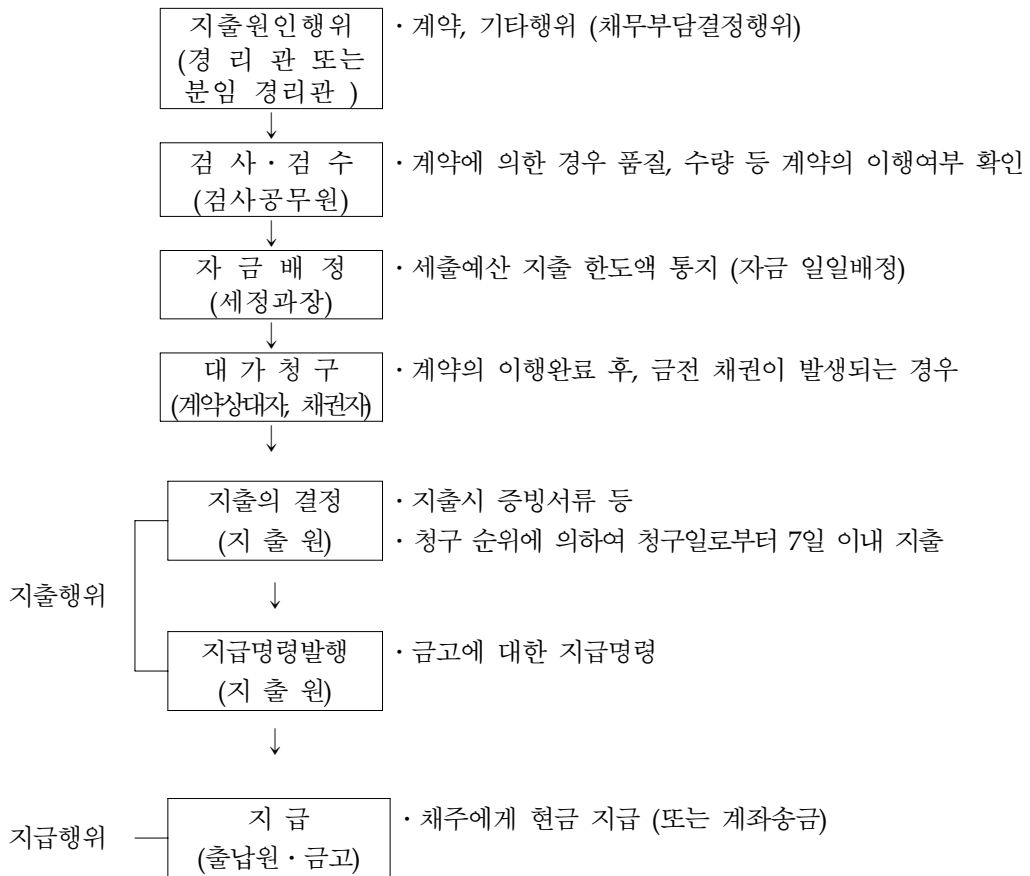
학습목표

- 예산집행품의 절차 및 방법을 이해한다.
- 예산배정 및 재배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 지출원인행위의 개념과 원인행위 때 검토해야 할 사항, 제한 사항을 학습한다.
- 명사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의 개념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1. 세출예산의 집행 흐름도





2. 예산의 집행품의

가. 의 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니다.

나. 집행품의 방법

- 집행품의는 집행내용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됨

< 집행품의 전결 예시 >

구 분	부단체장			국 장			과 장
	공사	용역·물품	기타	공사	용역·물품	기타	1 건당
시·도 광역시	30억원	10억원	4억원	10억원	5억원	2억원	5천만원
일반구가 있는 시	5억원	3억원	2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국이 있는 시	4억원	2억원	1억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시·군·구	2억원	1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 집행품의 한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한도범위내에서 시·도 및 시·군·구에서 품의한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 품의종류 : 공사집행(수선),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보조금 교부 등
- 품의서의 작성 요령
 - 제목은 집행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기
 - 집행의 목적, 집행액, 집행내역(복잡한 경우 별지로 작성)
 - 교부처(또는 지급처), 예산과목(세목까지 정확히 기재)
 - 집행의 내용에 따라 예산·세입·회계부서의 협조

< 재정사항 합의 범위 >

구 분	경리관(자치·재무국장)		분임경리관(회계과장)		비 고
	공사·토지매입	제조, 구매, 용역	공사·토지매입	제조, 구매, 용역	
시·도	10억 초과	3억 초과	10억 이하	3억 이하	
시·군·구	1억원 초과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합의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 업무추진비(건당 1백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제조구매(2백만원 이상) • 민간위탁경비 		

다. 품의서 작성 시 검토사항

- 집행의 내용이 예산편성의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액의 범위 이내인지 예산은 배정되었는지 여부
(※자금배정은 예산지출시 검토할 사항)
- 집행예정금액이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액과 부합되는 지 여부
- 자금의 지급(교부)처는 정당한지 여부

● TIP : 질의회신

-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지급시 보수로 보아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시간외 근무수당은 보수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보수”라 함은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의 합을 의미합니다(지방공무원보수규정) 따라서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5항)

- 직책급업무추진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공무원 보수, 여비
-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공무원후생시설 경비 및 산업시찰경비 제외)

질 의 회 신

<질의>

예산집행품의를 하기 위하여는 내부결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

예산집행품의서에 대한 법정서식은 없으며, 품의 내용에 따라서 내부결재 방식 또는 품의 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며, 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가급적 별지를 사용하여 품의 내용이 정확하게 명기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재정사항 합의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가. 회계부서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이상)
- 물품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건당100 만원 이상)
-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출장여비 ,포상금
- 기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합의사항을 정한 경우 관련 경비

나. 예산부서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

-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재정·개편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이외에 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4. 예산집행의 제한(재무회계규칙 제24조)

- 예산이 배정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집행 제한**
 -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이 있어서, 그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 다만, 비상재해 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집행 가능

예시 1 : 복사용지 구입 집행품의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제 목 복사용지 구입

우리 과에서 사용되는 복사용지를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1. 구입금액 : 금650,000원(금육십오만원정)

2. 구입내역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650,000	
복사용지	A4	박스	50	13,000	650,000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배정액	기 집행액	금회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대비)	비 고
5,000	4,000	2,500	650	1,850	

4. 예산과목 : ○ , ○ , ○ , ○ , 경상적경비 (201 - 01) 끝.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예시 2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제 목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출계획

000업무를 원활히 추진한 시·구·군 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 격려코자 급식을 제공하고 청구에 의거 지출코자 합니다

1. 소요금액 : 금680,000원(금육십팔만원정)
2. 산출기초 : 20,000원 × 34명 = 680,000원
3.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06. 00. 00(수) 18:00
 - 장 소 : 00식당(00구 00동 00번지)
 - 참석대상 : 34명
 - 시 : 10명(0000국장의 9명)
 - 구·군 : 24명(구·군별 3명 - 선거담당, 선거·주민전산담당자)
4. 지출방법 :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B.C카드사)
5. 지출과목 : ○ , ○ , ○ , 업무추진비(204). 끝.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5. 지출원인행위

가. 개념

-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함.
- 지출원인행위의 주종은 계약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외에도 인건비, 경상경비 지출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출연금 교부결정 등이 있음.

나. 지출원인행위 제한사항

- 예산집행품의는 제대로 되었는가(특히 예산배정 범위내인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상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재가 이루어 졌는지 등)
- 법령, 조례, 규칙, 지침, 예규 등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인가
- 회계의 일반원칙은 준수되는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아닌가
- 예산과목은 임의로 전용되지 않았는가

다. 지출원인행위 시 확인사항

- 지출원인행위 제한사항 저촉 여부
- 계약에 의한 경우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정당 여부
 - 계약보증금 납부, 정부수입인지 소화여부 등 확인
- 지출원인행위는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집행내용은 예산편성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라. 지출원인행위기관

-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기관이나, 경리관은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분임 경리관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마.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지방재정법 제50조)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미리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명시이월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서 기간을 정하여 계약(지출원인행위) 가능

※ 통상적으로 마무리 추경 시 명시이월 승인절차를 거침

※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바. 지출원인행위의 종류

1)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

-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일정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기 위한 채무 확정행위를 말함

※계약과 관련된 법령 :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2) 계약에 의하지 않는 지출원인행위

- 계약에 의하지 않는 지출원인행위란 수당지급, 인건비 지급, 보조금지급,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경상비 집행행위가 해당됨

사.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는 지출원인행위

- 회계연도 종료(12.31)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비로서 계약기간이 출납폐쇄기(2월말) 이전에 완료될 수 있는 경우(공사·제조·물건구입 등의 준공 또는 납품의 완료)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기한으로 계약체결 가능

※ 출납폐쇄기한까지 계약이 완료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비 또는 명시이월비로 조치하여야 함

아.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구 분	정 리 시 기	지출원인행위 금액
<p>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류 ·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 · 출연금 · 제 세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결정 시 · 지출결정 시(교부결정 시) · 출자 또는 출연결정 시 · 납입결정 시 · 지출결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기간분 급여액 ·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 출자 · 출연결정액 · 납부세액 ·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p>2. 계약에 의한 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 공사비 · 매입 · 제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결정 시 · 계약체결 시 · 계약체결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결정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p>3. 기타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금 · 보증금 · 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결정 시 · 납부결정 시 · 지출결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을 요하는 금액 · 납부를 요하는 금액 · 지출을 요하는 금액
<p>4. 조달의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사 · 물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에서 - 계약체결 통보시 - 대금청구서 접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금액 · 대금청구금액

감 사 지 적 사 례

○○광역시 ○○군에서는 세출예산의 집행은 지출원인행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2001. 9. 17부터 2002. 11. 5까지 ○○면 신 청사 전산망(LAN) 설치 공사를 사전 시행한 후 2001. 10. 19 추경예산에 시설비 5,500천원을 확보하고 2001. 11. 3 품의를 득한 후 같은 해 11. 5 사전 시공한 업체와 계약 체결

학습정리

- 예산 집행 품의는 예산편성 내용과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일종의 서면상 의사표현으로서 품의내용이 예산의 범위내인지 예산편성목적과 부합되는지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직책급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급여, 여비, 복리후생비는 예산집행의 품의를 하지 않으며 공사용역이나 200만원이상 물품구입, 10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경비 등은 예산집행품의시 회계부서와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예산이 편성된 경우라도 상급관청의 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원 지원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할 수 없음
- 지출원인행위시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법령지침 등의 준수여부, 정당한 채주인지 여부, 회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아닌지 여부, 예산의 범위내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
- 명시이월비는 회계연도를 걸쳐서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며 명시이월비가 아닌 단일 예산이라도 출납폐쇄기한까지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시기는 일반적으로 지출을 결정하는 날짜가 지출원인 행위 일자로 정리하나 조달의뢰 하는 경우 공사용역은 조달계약일자를 물품 조달은 대금고지서 청구일자를 원인행위 일자로 함

학습평가

1. 다음 중 예산집행품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구입요구서 작성
- ②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하여 구입요구서 작성
- ③ 자치단체 축제행사에 만찬경비 지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 ④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회계부서에 지출요구서 작성 제출

< 정 답 > ③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예산집행품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임

2. 지출원인행위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집행
- ②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 ③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을 준수
- ④ 경쟁입찰 공사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

< 정 답 > ④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하는 것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3. 다음 중 지출원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조달요구 ② 공사계약
- ③ 물품구매 계약 ④ 용역계약

< 정 답 > ① 조달요구는 지출원인행위 전 단계이며 공사는 조달계약이 이루어진 후 물품은 대금납부 고지서가 도착한 후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것임

용어사전

○ 예산의 이월(移越)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회에 한하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명시이월은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50조>

※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가능한 경비

회계연도내에 사고이월한 사업비의 부대경비,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경비(PQ대상공사, 협상계약대상, 대형공사, 재해복구공사), 손실보상비(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등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피해에 관한 보상비등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재해복구경비),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당해경비에 대한 예산의 5%이내)

○ 지출원인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지출부담행위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의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지출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때문에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지방재정법49조>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67조 내지 제76조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19조 내지 제21조

제Ⅲ장 지 출

학습목표

- 지출의 개념을 지출원인행위와 구분하여 이해한다.
- 지출결의서(구입과지출결의서 등 포함) 작성요령을 알아본다.
- 지급명령의 종류와 작성요령을 이해하고 지급명령을 받하기 전에 지출원(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학습내용

1. 지출의 개념

가. 광의의 지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결정(집행품의) 행위와 경리관의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원이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함

나. 협의의 지출

지출원이 지출의 결정과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

2. 지출의 절차

가. 지출결의서(구입과지출결의서 등 포함)의 작성요령

-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 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 품의서, 계약서 등임

세 출 예 산 서(000 도)

회계연도 : 2008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문화예술~체육청소년과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예술과	60,902,454	57,693,114	3,209,340
문화예술진흥	60,604,334	57,337,554	3,266,780
지방문화창달	11,220,740	5,282,700	5,938,040
농어촌도서관 건립지원	1,752,840	1,047,000	705,840
308 자치단체등이전	402,840	0	402,84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2,840	0	402,84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805,680,000원	402,840		
*50% =		[국 402,84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50,000	1,047,000	303,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50,000	1,047,000	303,000
○ 농어촌도서관 건립 =	750,000		
		[균 750,000]	
○ 농어촌도서관 건립 =	600,000		
		[균 600,000]	

지출결의서

증제 ① 호						
담 당	회계과장	경 리 관 (분임경리관)	200 년도세출 ⑤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일상경비출납원)	
	②		세 출 과 목	⑦		
③ 발 의	200		분야	⑧ 발 의	200	
			부문		⑥	200
			정책 사업			⑨ 지출부기재
④ 원인행위 부 기재	200		단위 사업	지급⑩명령 발행부기재	200	
			세부 사업	지 급 명 령 번 ⑪ 호	제 호	
			편성 목			
수입인지	일금 (₩)					
적 요						
채 주	주 소	⑬ 계 좌 입 금				
	상 호 ⑫ 성 명	은행 지점				
		계좌 번호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⑭ 2008 년 월 일 성명					
주 관 과						
취 급 자						
⑮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 개서 사용

(뒷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 준수사항 >

- 구분 : 지출결의서
- 용도(목명)
 -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등
 - 물건비 중 업무추진비, 조달구입대금, 공고료, 각종사용료,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 이전경비 중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등
 - 자본지출 중 시설비(계약서 작성 시) 등
- 첨부서류 : 해당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①품의서 ②청구서 ③영수증 ④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분	적요	날인자	비고
①증 제 호	원인행위부의 일자순에 따라 일련번호기재		
②결 재 란	재무회계규칙 제5조의 위임규정	해당자	
③발 의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 품의일자 ※예산집행품의가 생략되는 경우 발의 일자는 삭선 가능	취급자	
④원인행위부 기 재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결정일자 (원인행위부 등재일)	취급자	
⑤연도, 회계	세출연도 및 목적에 의한 회계분류		
⑥세 출 과 목	지출 해당 세출과목 기재		
⑦결 재 란	회계실무자 및 회계관직자	취급자, 지출원, 일상경비,	
⑧발 의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지급기한의 도래 등)	취급자	
⑨지 출 부 기 재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지출부 및 지급내역부 등재일)	취급자	
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지급명령발행부 및 현금출납부 등재일	취급자	
⑪지 급 명 령 번호제 호	지급명령발행부 및 현금출납부의 일련번호		
⑫채 주	채주의 주소, 상호, 성명 기재		
⑬계 좌 입 금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⑭영 수	계좌입금 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⑮추 산 란	추산부(보조장부)의 해당목에 기록	취급자	

구입과지출결의서

증계 ① 호							
담 당	회계과장	경리관 (분임경리관)	200년도세출 ⑤ 일반회계		취급자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②		세출과목		⑦		
발 ③ 의	200 . . .		분야		⑧ 발 의	200 . . .	
원인행위 부기재④	200 . . .		부문	⑥	⑨ 지출부기재	200 . . .	
주 ① 문	200 . . .		정책 사업				
납 ② 품	200 . . .		단위 사업		지급⑩명령 발행부기재	200 . . .	
검 ③ 수	200 . . .		세부 사업		지 급 명 령 번 ⑪ 호	계 호	
물품출납 부기재④	200 . . .		편성 목				
일금 (₩)							
적 ⑤ 요							
본 계약에 있어서는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⑥ 2 0 0 년 월 일 주소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⑦ 200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⑧ 200 년 월 일 성명			거래은행 계좌번호⑨	
주 관 과							
취 급 자							
⑩							

(뒷면)

물 품 명 세

㉔

품 명	규 격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 ㉕ 1. 20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물품중 검사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할 것.
-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1일당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미납대가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 하여도 이의가 없음.
-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에도 완성치 못하는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 등에 적합치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못한다.
- 4. 전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 해제 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 준수사항 >

- 구분 : 구입과지출결의서
- 용도(목명)
 - ┌ 물건비 중 인쇄비, 제작비, 물품구입비 등
 - └ 자본지출 중 자산취득비 등
- 첨부서류 : 해당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 작성요령
 - ①~⑮ 지출결의서 작성요령과 동일
 - (⑫청구란은 납품을 완료하고 채주가 대금을 청구한 날 및 채주성명, 날인)

구분	적요	날인자	비고
㉠주문	납품업체를 결정하여 물품을 주문한 날	취급자	
㉡납품	납품업체가 계약서에 의거 물품을 납품한 날 (납품 받은 날)	취급자	
㉢검수	구입물품을 검수(영수)한 날	(분임) 물품출납원	
㉣물품출납부 기재	물품출납원장 및 운용카드 등록일	취급자	
㉤적요	구입물품의 내용요지		
㉦승낙란	계약(승낙)체결일자 및 인적사항 기재 날인	납품업자	
㉧물품명세	구입한 물품을 양식에 의거 기재		
㉨승낙사항	계약서에 의거 납품지정일 기재		

< 별지 제47호서식 >

여비지출결의서

증제 ① 호									
담 당	회계과장	경리관		⑥ 연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②			세출과목	⑦				
③ 발 의	년 월 일	인	분야			⑧ 발 의	년 월 일	인	
④ 원인행위부 기 재	년 월 일	인	부문	⑤		⑨ 지 출 부기재	년 월 일	인	
			정책 사업			⑩ 지 급명령 발행부기재	년 월 일	인	
			단위 사업			⑪ 지 급명령 번호	제 호		
			세부 사업						
			편성목						
개산금에 대한 정산	개산액⑫		년 월 일 ₩		정 산 액	₩⑬			
금				₩		⑭			
년월일	청구자 성명	⑮ 인							
근무처	국 과	봉 급	급 호		영수자 성명	인			
		급 여	원						
주관과									
취급자 인 ⑯	용무	⑰		출장지	⑱				

(앞면)

< 준수사항 >

- 구 분 : 여비지출결의서
- 용 도 : 국·내외 출장시 여비 지출
- 첨부서류 : 출장명령서 사본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날 인 자
① 증 제 호	원인행위부 일자 순에 따른 일련번호	
② 결재란	재무회계규칙 5조에 위임 규정	해당자
③ 발 의	출장명령일자	취급자
④ 원인행위 부기재	지출결정일자	"
⑤ 세출과목	지출해당 예산과목	
⑥ 연도, 회계	세출연도 및 목적에 의한 회계분류	
⑦ 결재란	회계실무자 및 지출원	해당자
⑧ 지출부 기재	지출부 등재일자	취급자
⑨ 지급명령발행부	지급명령부 발행 등 재일자	
⑩ 지급명령번호	지급명령 번호 기재	
⑪ 개산액	당초지급액(14과 동일)	
⑫ 정산액	최종정산액	
⑬ 여비산출액	여비산출 금액	
⑭ 청구자	출장자 성명기재(다수인 경우 대표자 인으로 기재)	
⑮ 추산필	해당부서 추산자 날인	
⑯ 용 무	출장목적	
⑰ 출장지	출장도시 기재	

● TIP : 질의회신

- 지출결의서와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소규모 공사시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기 위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구분 기준은

- 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이계약인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용
- ② 지출용도에 따라 구분
 - 지출결의서 : 인건비, 물건비중 업무추진비 등, 이전경비 중 보상금 등, 자본지출중 시설비 등
 - 구입과 지출결의서 : 물건비중 인쇄비·물품구입비 등, 자본지출 중 자산취득비 등 따라서 상기의 구분에 따라서 적절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TIP : 질의회신

- 수의계약시 3000만원 이하면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 경우에 계약서를 생략하고 공사(수선)지출결의서로 같음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승락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 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인 "공사(수선) 집행과 지출결의서"로 집행한다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지급명령

지출원이 지급대상인 채주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대신, 현금출납을 책임진 금고를 지급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절차

1) 지급명령의 종류(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가) 통상지급명령 :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나) 송금(계좌)지급명령 :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 지급할 때

- 10만원 이상 반드시 계좌송금 (재무회계규칙 제50조)

※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경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현금지급 가능

다) 집합지급명령 : 지출과목이 동일한 경우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반드시 금액·성명표 첨부)

라) 약식지급명령 : 금고가 구내에 있거나 근거리에 있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금고에 제시

※ 지급명령서에는 지출원의 회계관인과 인감을 날인해야 함

2) 지급명령 발행요건(재무회계규칙 제51조)

○ 예산과목별, 채주별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 지급은 제외)로 작성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

○ 청구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

-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

- 일상경비(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 월정액 업무추진비, 도급경비

-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복리후생비, 의정활동비, 조의금

- 복리후생비, 의정활동비

< 지급명령시 지출원 검토사항 >

- ①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되어 있는가
- ② 당해 경비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③ 당해경비는 배정을 받은 예산 및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④ 소속 회계연도와 세출예산과목은 틀림이 없는가
- ⑤ 필요한 관계서류는 구비되어 있는가
- ⑥ 세입·세출을 혼동하고 있지 않는가
- ⑦ 예산전용을 제한한 전용이 아닌가
- ⑧ 지출의 특례로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 기타의 제한을 넘은 것이 아닌가
- ⑨ 지출하여야 할 시기는 도래하였는가
- ⑩ 정당한 채권자인가
- ⑪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⑫ 지출의무가 법령·조례·규칙·예규·지침·계약 등에 의한 것인가

학습정리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일반적인 지출을 하는 경우 지출결의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구입과 지출결의서,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여비를 집행하는 경우 여비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 지급명령서를 발행하는 경우 통상지급명령서, 집합지급명령서, 약식지급명령서로 구분되며 금고은행이 자치단체 청사내 또는 인근에 있는 경우 약식지급명령서를 사용함
- 지급명령서 예는 금액의적정 여부, 지출한도액 초과여부, 예산 및 자금배정여부, 정당한 채주인지여부, 법령 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정당한 채주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연습문제

1. 다음 중 지출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하여 품의 후 법인카드 결제
- ② 강사수당을 채주에게 계좌입금
-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관서운영비 지출
- ④ 공사계약 체결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지급

<정답> ① 카드사용후 카드대금을 지급해야 지출행위로 볼 수 있음

2. 책자를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출하는 경우 작성하는 결의서는?

- ① 수선과지출결의서 ② 구입과지출결의서
- ③ 운반과지출결의서 ④ 지출결의서

<정답> ④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 208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결의서를 사용토록 하고 있음

용어사전

3. 예산비목별 집행기준

○ 채무

빚진 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채권의 반대말로서 채권이 있으면 반드시 채무가 존재한다.

○ 지출결의

지방자치단체 지출원의 지출의사에 대한 결정행위를 말한다. 지출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리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에 당해 채무의 내용을 조사하여 지출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다. 따라서 지출원은 구체적인 채무에 대한 지출결의에 앞서 그 채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 지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송부 받아 지출을 할 때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명령의 종류는 통상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약식지급명령이 있다.

○ 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한다. 이에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현금출납사무를 관장하는 고유금고제도 ②은행 기타의 자에게 출납사무를 위탁하는 위탁금고제도 ③특정은행이 출납사무를 위임하는 예금제도가 있다.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는 한국은행이 취급하며,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에 예금을 하도록 하는 예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사무는 위탁금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51조 내지 제53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내지 제90조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70조 내지 제71조

1 인건비(101목)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등에 의해 집행

1-1. 기본급(101-01)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으로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2. 연가보상비(101-07)

-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사항을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지출부서에 지급의뢰하여야 한다.

1-3.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9)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경비외에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1/4 분기에 일괄 납부시 납부금액의 5%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시 원천공제 한다.
- 청사관리요원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10)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 특정사업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 완료 후 사역을 중단해야함
-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②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1. 일반수용비

- 각급 기관에서는 종이류 구입 및 인쇄·유인물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노트북 회의 등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고가품 구입은 자제한다.
- 내용연수 1년미만의 재물조사(자산등재)대상이 아닌 소모성 물품 구입시 집행한다.

-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품가가격정보(조달청), 수입변호사보수규정(법무부 훈령) 등

2. 위탁교육비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한다.
 - 단, 필요에 따라 입교시 집행 가능
- 민간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시에는 해당교육기관장이 요구한 금액을 집행한다.
 -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지방의회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수당 등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으로 자문료 지급이 가능함

다. 일·숙직비

- 일·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숙직근무시 일정시간(예: 오후 9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재택근무하는 경우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숙직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재택당직근무자에게 별도의 숙직비등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재택당직근무자가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야간 급량비 및 시간외근무 규정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시험관리비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집행한다. 다만 각급교육훈련기관의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사,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강사료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기준으로 지급하되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본청(의회포함), 사업소, 읍·면·동 등을 말하며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 예시) 본청직원이 사업소에서 강의를 한 경우 강사료 지급가능

바. 직원능력개발비

- 자치단체에 정한 지급대상, 지급금액(연간 상한액)을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직원능력개발비 지급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자체실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며
 - 직원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수강료납부영수증 및 출결사항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4. 피복비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 소속 공무원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음

5. 급량비

가. 급식에 필요한 경비

-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등 다만 합숙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다.

나. 급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에게도 특근매식비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급식대상에서 제외 한다

6.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단, 청소비 등은 실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 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을 우선 이용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하도록 한다.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시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지급 가능
 - 선금지급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음
-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형태로 집행이 가능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 전화는 행정자치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함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 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함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 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2. 연료비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냉·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 하여야 한다.

3.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의 용역비로 한다.
-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재료비축은 지양하여야 한다.
-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가단가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한다.

□ **시설장비유지비** : 일반운영비(201목)에 포함되며 주로 운영적 측면에서 시설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책결상 등 소규모 수리비로 비교적 내용연수가 짧고 사용용도에 중점을 두는 소모성 경비)

□ **시 설 비** : 자본적지출(400목)에 포함되는 세목으로 과목설정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남으로 자본적 경비)

4. 차량·선박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한다.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무실·양호실 등에 소요되는 의약품·소모의료기구 구입비용에 집행한다.
 - 소속직원에 대한 공상치료비 등에 집행한다.

2-3. 행사운영비(201-03)

-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수용비와 강사료,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며 부서연찬회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3] 여 비(202목)

3-1. 국내여비(202-01)

1. 근무지내 출장

-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 출장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 특정인에게 다른 직원의 여비 지급 및 여행사 등에 지급 금지

2. 근무지의 출장

가. 여비의 지급

- 출장자 본인이 부서장에게 출장 신청 다만, 서무업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여러명이 함께 출장 신청하는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출장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일비, 식비 등은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 숙박비와 운임에 대하여는 실비를 정산한다.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자는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여비전용카드(이하 “여비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개인카드 등을 이용하여 결제한 후, 회계담당자에게 여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현금, 개인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출장지가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여비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여비카드를 이미 다른 출장자가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소속부서에 여분의 카드가 없는 경우 등

나. 여비의 정산

- 출장자는 여행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회계담당자는 여비를 정산한 후 여비카드 입금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 출장자는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회계담당자는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 후 여비 지급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철도, 고속(도는 시외)버스,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
 -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거서류의 가맹점명 또는 업종분류가 숙박업소나 여객운송업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자가 유선 등으로 숙박업소 또는 운송업체임을 확인한 때에는 여비지급 가능
- 여비정산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출장신청내역과 단체여비카드 사용내역이 일치할 경우 정산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약식정산 절차

- 여비정산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출장신청내역과 여비카드 사용내역이 일치할 경우 정산절차의 일부를 생략한다.
- 생략되는 절차 : 기관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내역확인(서무업무담당자), 여비정산결재(부서장)중 1개 이상 선택가능
- 약식정산의 조건 : 출장자, 일자, 업종(숙박/운송), 출발지, 도착지, 차종(KTX, 새마을호 등), 객실등급(특실, 일반실 등) 숙박비(한도내) 등

다. 여비의 지급기준

○ 숙박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지급할 수 있다.
-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1주일 이내에 신용카드 사용시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담당자에게 정산 신청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숙박비 한도금액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정무직 및 기타 직급 등에 대하여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되는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 부대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요금 등) 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2인 이상이 같은 방에 숙박한 경우 실제 숙박비를 결제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인원에 대하여만 숙박비를 지급한다.
- 친지의 집에서 숙박하거나 소속기관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사유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출장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 숙박비 상한금액 내에 발생한 숙박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운 입

- 출장지 사정상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행구간의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에 해당되는 금액 중 최소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비 또는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등 출장이

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도 이용 등으로 영수증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 철도이용협약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라. 식 비

- 국내출장시 식비 및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 따라 출장 전에 출장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마. 공무원 인사이동 등에 따른 이전경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또는 청사 이전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자에게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은 전액, 2.5톤 이상 5톤미만은 실비의 80%(5톤 상한)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비용, 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바. 공무원 인사이동 등에 따른 국내가족여비

-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자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가족을 이전한 경우도 국내가족여비 지급 가능

○ 지급기준

- 운임과 숙박비는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일비와 식비는 본인이 출장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2, 12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 기 타

- 기타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자치단체 여비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 출장자가 철도·항공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출장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여비카드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출장자에게 카드를 지급하거나 반납받는 즉시 여비카드 수불부에 카드사용자 및 지급·반납일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및 가족여비는 파견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

3. 교육훈련여비

가. 지급대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체 등의 연수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위탁교육을 받는 공무원

나. 지급기준

- 교육훈련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일비, 식비 등은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 숙박비와 운임에 대하여는 실비를 정산한다.
- 여비의 조정으로 인한 차액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의 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33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교육훈련기관구분	여비구분		교통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	합 숙	지급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지급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		지급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공무원여비규정상[별표2]일비의 5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 외의 지역	합 숙 또는 기숙사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지급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상[별표2]일비의 5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기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되는 교육훈련여비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8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다. 교육훈련기관 조치사항

-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 피교육자 선발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훈련기간 및 훈련방법(합숙여부)
 - 합숙훈련의 경우 숙식의 무상제공 여부 또는 숙식비 청구액
 - 비합숙의 경우 근무지외의 피교육자에 대한 기숙사제공 여부 및 숙식비 청구액. 다만, 근무지외의 피교육자에 대하여 기숙사를 제공할 때에는 합숙으로 간주한다.
 - 구내식당의 식비, 기타 교육훈련비에 관련된 사항

3-2. 월액여비(202-02)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정한 대상부서와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기타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자치단체 여비 조례 등에 의한다.

3-3. 국외여비(202-03)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 해외 출장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자치단체 여비조례를,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가. 운 입

- 국외항공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회계담당자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여비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때에는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영수증 등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 요금 노선별·종류별·할인율표를 적용 하여 지급한다.
 - ※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항공요금을 제외하고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나. 일비, 숙박비, 식비

- 국외여행경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 출장지 사정,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 및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숙박비 및 식비를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을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신용카드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갖추어 회계담당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

- 단체장·부단체장을 제외하고 3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 할 수 없다.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금지하여야 한다.
 - ※ 예시 :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시 국외여비에서 집행 금지(민간인 해외여비 과목에서 집행)
- 지방의회의원은 어떤 이유에서도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집행 할 수 없다.
-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표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
 - ※ 특정인에게 다른 직원의 여비 지급 및 여행사 등에 지급금지
- 기타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4]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

-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3만원이하로 한다. 다만, 행사성격, 행사장 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십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이 제한된다.
 -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
 - 개인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각출성 성금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축·조의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4-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

-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에 소요되는 경비 >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4-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

-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에 소요되는 경비 >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4-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

<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실과가 없는 사업소, 의회전문위원실등도 지급 >

- 부서운영 공통경비 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
- 과운영비
 -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과 인원수	5인이하	15인 이하	30인이하	비고
월 지급액	1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정원31인 이상1인 초과시 월 5천원추가

-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 과 인원수에는 직제상 정원외에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직무수행경비(204목)

5-1.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기초의회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 일선기관의 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퇴직, 직책 신설,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실제로 2개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

5-2. 직급보조비(204-02)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지급한다.

5-3. 특정업무수행활동비(204-03)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감사·세무·예산·법무담당공무원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한다.

-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예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법무는 법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다만, 예산업무는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근무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예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계가 별도의 전담팀(계)으로 설치된 경우 지급가능

- 대민활동비를 제외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적용이 중복되는 경우(예: 과장)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그밖의 방법활동비, 교통활동비, 경무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는 병급 지급할 수 있다.
- 대민활동비와 기타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병급 지급할 수 있다.

-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을 업무담당과장 이하로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시·도 및 시·군·구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여론·동향, 복식부기, 공무원단체,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한다.
- 관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부서의 공무원을 말한다.
-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업무수행경비를 원소속기관에서 월정직책급의 지급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를 지급받거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6] 의회비(205목)

-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9가지 경비(통계목)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6-1. 의정활동비(205-01)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5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6-2. 월정수당(205-02)

- (현행과 같음)

6-3. 국내여비(205-03)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 지급대상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 지급 금지)
-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집행한다.

6-4. 국외여비(205-04)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8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원 국외출장시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
- 국외여비의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6-5. 업무추진비(205-05, 205-06)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 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현금 전달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로 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십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의회와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은 집행할 수 없음. 단, 지방의회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집행할 수 있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중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함
-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⑦ 연구개발비(207목)

-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임상연구용역 : 실소요경비
 - 학술연구용역등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 계약방법,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⑧ 일반보상금(301목)

< 일반보상금 공통 >

- ❖ 『일반보상금』은 세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 ❖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장단활동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운영경비
 -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 목에 편성

8-1. 통·리장·반장수당 및 활동비(301-05)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행자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
-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 통·리장 변경시에는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 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예) 통·리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1. 19일 변경됐을 경우

┌전임자 : 200,000원÷31(12.21~1.20)일×29(12.21~1.18)일=187,100원

└후임자 : 200,000원÷31(12.21~1.20)일× 2(1.19, 1.20)일 =12,900원

8-2. 민간인 국외여비(301-07)

-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내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은 금지

8-3. 외빈초청여비(301-08)

- 외빈초청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자치단체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자치단체별 분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1박/1식)
숙 박 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식 비	주 빈 50 수행원 30
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

8-4. 행사실비보상금(301-10)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1식 7,000원 이내)를 적용하여 현금지급하고 영수증 징구
 - 단체급식 및 다과시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원칙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를
-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한다.

8-5. 기타보상금(301-12)

-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집행

9. 포상금(303목)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국내에 한함)·공로연수비
 -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집행
 -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
- 예산성과금
 -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불가
 - 예산성과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에 따라 집행
- 선택적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 선택적복지제도의 시행경비에 “정무직공무원”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등 타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배상금등(305)

10-1. 배상금등(305)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으로 집행한다.

11 출연금(306)

11-1. 출연금(306)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하여야 한다.

12 민간이전(307)

12-1.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 집행 및 정산절차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 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자금송금 → 정산(정산잔액반납)
-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
 - 보조 대상단체
 -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지원범위
 - ▶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자본적 경비는 제외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 당해연도에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 발생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명시
- 지방의회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일반적인 민간에 대한 보조금 등과 같이 사업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 인건비등 운영비 지원은 지양, 사업비 지원 내역 공개, 보조사업의 성과와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비 지원 결정에 반영하는 등 보조사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 관련 지원조례 적법성 확보후 지원여부 결정

- 대법원의 서울시 서초구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조례와 동일·유사한 조례의 보조금 지급 규정은 삭제
 - 보조금 지급규정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를 엄격하게 적용, 보조금 지급규정 개정·보완 후 지원
 - 보조금 지원시 일반적인 민간에 대한 보조 등과 같이 사업별로 검토하여 집행
 - 행정동우회도 지원조례가 있는 경우, 의정회 조례에 준하여 자체 검토 후 집행
- ※ 재정정책팀 - (2008. 12.)호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 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권고」 참조

■ 집행방법

-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효과성과 단체의 재정여건, 전연도 유사사업 추진실적,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
 -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를 지원하되,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지양
 -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하여 보조사업의 성과와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
- ※ 보조사업 성과실적평가 : 보조금 집행내역(자부담 등), 보조사업 달성도(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보조사업자 자체평가,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의 파급효과, 관련부서 평가 등을 종합하여 예산부서에서 평가
- 보조금의 지원내역과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주민에 공개

12-2. 민간행사 보조(307-04)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용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정산요구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편성, 직접 집행
-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 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준수 철저

12-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정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사업중지 또는 종료시 반드시 비용을 정산하여야한다.

-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수탁기관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한다.

13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13-1. 기본조사설계비(401-01)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 조사설계가 완료되고 당해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13-2. 실시설계비(401-02)

- 실시설계 집행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3-3. 토지매입비(401-03)

-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 중 토지매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용지매입(보상)이 원활한 타사업 토지매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13-4. 시설비(401-04)

-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집행가능
 - 동일 세목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 또는 세목을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집행

예) 건축공사 낙찰차액으로 건축물의 조경·안전시설공사 등 실시

※ 이외의 신규 사업의 사용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5. 감리비(401-05)

-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13-6. 시설부대비(401-06)

- 현장감독관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의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 가능함.
- 시설부대비는 당해시설공사의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등 당해 공사 이행과 직접 관련된 공사 경비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
- 시설부대비로 국외여행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O사업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 공사감독관은 책임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3-7. 행사관련시설비(401-07)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14 민간자본이전(402목)

14-1. 민간자본보조(402-01)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하되,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14-2. 민간대행사업비(402-02)

-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 민간수탁자선정, 계약이행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집행 및 정산은 민간위탁금(307-05)의 예와 같이 한다.

15 자산취득비(405목)

15-1.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자산취득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요물품정수 책정기준”에 의한 물품구입에 집행한다.
-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 사무실 집기 등을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이 가능한 복사기, 모사전송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15-2. 도서구입비(405-02)

-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하여 집행한다. 다만, 민원실,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16 반환금 기타(802목)

16-1. 국고보조금 반환금(802-01)

-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치 후 시·도에서 반납할 수 있다.

제Ⅳ장 지출의 특례

학습목표

- 지출의 특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개념 및 집행대상, 절차를 이해한다.
- 선금급, 개산급, 과년도지출의 개념 및 범위를 이해한다.
- 세출예산 이월의 개념 및 종류와 사례를 익힌다.

학습내용

1. 지출특례의 개념

회계제도는 일정한 원칙을 두고 있으나 그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서 특례를 인정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도모하고 있다.

원 칙	특 례
1) 정당한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서를 발행할 수 없음 (지재법 제71조)	○ 일상경비의 교부(지재법 제72조) ○ 도급경비의 교부(지재법 제74조)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출(지재법 제7조)	○ 지난해회계년도 지출(지재법 제76조) ○ 예산의 이월제도(지재법 제50조)
3)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고 이행시기가 도래해야만 지출 가능(재무회계규칙 제50조)	○ 선금급(지재령 제65조) ○ 개산급(지재령 제66조)
4) 10만원 이상 대가는 계좌입금 (재무회계규칙 제50조)	○ 신용카드의 사용 (행자부예규 “신용카드 사용요령”) ○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경비,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여비는 현금 지급 가능

2. 지출특례의 내용

지출의 특례에는 일상경비의 교부, 도급경비의 교부, 과연도 지출, 예산의 이월, 선금급, 개산급, 신용카드의 사용이 있으며, 이러한 특례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상경비

1) 개념

- 일상경비란 도서벽지, 기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 이 경비는 지출원이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자금을 출납원에게 교부하여 지급케 하는 경비임

2) 일상경비의 교부 범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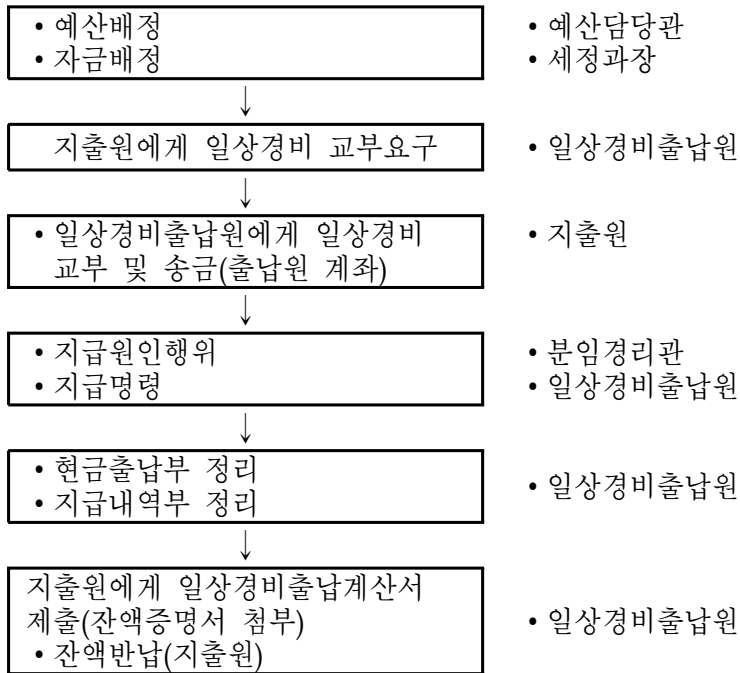
-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범위 내)
- 여비(1회 교부한도액 500만원 범위 내)
- 일반운영비(제한없음)
-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제한 없음)
-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범위 내)
-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립에 소요되는 경비(1회 교부한도액 2,000만원 범위 내)
-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제한 없음)
- 업무추진비(제한 없음) 등
- 다수인에게 소액을 지급하는 경비(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범위내)
-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범위)
- 지방채 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지급
- 공무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수당, 정액수당, 정액의 복리후생비

- 각종수당, 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 당해 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의 행정구역 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 포함(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 국가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 각 관서에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3) 자금교부의 제한(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 관서의 일상경비 : 매1월분 이내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다만,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외국·교통·통신 불편지역 등의 경비는 3월분 이내 교부가능
- 수시 비용에 대하여는 사무상 지장이 없는 한 분할 교부해야 함

4) 일상경비 집행절차



5) 일상경비로 지급되는 일반운영비의 범위

지출원은 매년 초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하여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자금교부의 범위와 한계 설정하여 통보

- 일반운영비 자금교부 범위 설정
 - 지출원은 예년의 자금교부 수준, 예산서상 일반운영비 내의 부기상 구분된 금액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 각 실·과의 조직구조, 인력, 업무량, 업무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상경비 교부한도액을 설정

< 일반운영비 자금교부 한도액 결정시 검토사항 >

지출원이 직접집행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중 기관단위요금 성격의 경비 ○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성격의 경비 ○ 재료비, 의료비 성격의 경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 수당 성격의 경비 ○ 공공요금 중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등

- 자금교부 범위 통보
 - 시·도 및 시·군·구 지출원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매년 1. 10까지 일반 운영비 자금교부 한도액을 설정, 각 분임경리관(실·과장)에게 통보

6) 회계연도 개시 전의 일상경비 교부범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

-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 여 비
-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속물의 매입경비
- 업무추진비
-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나. 임시일상경비출납원(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재무회계규칙 제61조)

1) 개념

채주 및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 이를 집행하게 한 후 지출원에게 정산토록 하는 제도

2) 교부요건

- 행사 등으로 현지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물품을 구입하게 할 경우
-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에게 현지에서 직접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외국의 물품을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지 아니하면 구입할 수 없을 경우
- 기타 임시일상경비지출이 필요한 경우

3) 집행 및 정산절차

가) 주관과에서 소요경비에 대한 집행품의(지출원 협조) 및 집행결정

나) 인사부서에 의뢰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명(집행결정과 동시)

다) 회계부서로 임시일상경비 지급의뢰 및 수령

라) 임시일상경비 집행

- 집행시 지급원인행위(계약) 생략 가능(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마) 임시일상경비정산(재무회계규칙 제61조)

- 정산서 제출 : 집행후 5일 이내(지출원에게 제출)
- 잔액이 있을 때 : 당초 집행한 예산과목에 반납
- 부족금이 있을 때 : 증빙서를 구비하여 청구
- 과부족이 없을 때 : 정산서만 제출(집행관계서류 첨부)

※ 직전에 지급한 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재교부 금지(긴급한 사유시 제외)

다. 도급경비(지방재정법 시행령제98조)

- 읍·면·동의 출장소, 소방파출소, 기타 3인 이내의 관서 등 지출원이나 출납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의 소요경비를 지급하여 그 관서의 장 책임 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지급대상기관
 - 읍·면·동의 출장소,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
 - 도시철도 역과 현업사무소, 화장장, 수원지 관리사무소
 -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자치단체 해외사무소, 119구조대, 기타 3인이내 관서
- 도급경비지급 범위
 -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도급경비의 집행
 -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정리하고 관서의 실정에 맞게 사용하되, 도급경리부를 정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함
 -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출원에게 집행상황 보고
 - 회계연도말 사용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 사용
 -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사용시 정리부 기재
 - 도급경비 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관
 -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 조례, 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함

라. 선금급 (지방재정법 제73조)

1)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무 이행 이전 또는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비로서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 지급

2) 선금지급 범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 운임 및 사례금
- 관공서(정부투자기관 포함)에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 경비
- 부담금, 교부금과 보조금
- 봉급지출일에 전출 또는 출장하거나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외국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
-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관보 기타 정기간행물의 대가
-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토지의 매수나 수용 또는 그 토지위에 있는 지장물의 보상금 및 이전료
- 시험·연구·조사의 수입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제조와 1천만원 이상인 용역

다. 개산급 (지방재정법 제73조)

1) 개 념

채무액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가 성립되어 있고 이행기한 도래 전에 지출하는 점은 선금급과 같으나 채무액이 미확정인 점이 다름

2) 개산급의 범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97조)

- 여비, 업무추진비
- 소송비용
-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부담금, 교부금과 보조금

3) 개산급의 정산(재무회계규칙 제64조)

개산급을 받은 자는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지출원에게 제출

- 잔액이 있을 때 → 반납고지서 발행받아 반납
- 부족금이 있을 때 → 증빙서를 구비하여 청구
- 과부족이 없을 때 → 정산서만 제출

※ 개산급 중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 정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바. 지난연도의 지출 (지방재정법 제58조)

1) 개 념

과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출납폐쇄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지출의 제한

- 과연도지출은 그 경비의 소속연도인 과연도 세출예산 항목별 불용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보충적 경비는 불용액을 초과하여 지출 할 수 있음 (공무원 보수, 배상금, 소송비용, 제세공과금 등)
- 과연도지출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음
 - ※ 전 전연도분에 대한 과년도 지출은 불가
- 채무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특례인 만큼 남용금지

질 의 회 신

<질의>

과연도지출 가능 여부

<답변>

- 지난연도지출은 지난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 못한 경비를 현년도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며, 이를 후년도까지 이월·지출할 수 없으며,
- 미지급된 채무액을 정산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예산조치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경비(미지급된 공무원보수 등)은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경비 소속연도의 불용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음

사. 세출예산의 이월

1) 개 념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집행은 당해연도 내에 한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

2)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명시이월비는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지방재정법 제50조)를 할 수 있음
-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후 10일 이내)

○ 사고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경비는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가능함

※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가능한 경비

회계연도내에 사고이월한 사업비의 부대경비,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PQ대상공사, 협상계약대상, 100억이상대형공사, 재해복구공사), 손실보상비(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등 공 완료후 존속하는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토지 및 물건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재해복구경비),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당해경비에 대한 예산의 5%이내)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함(천재지변 등)

- 상대방의 채권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년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당초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맞지 않음(명시이월비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
-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요구는 40일 이내)

감사지적 사례

-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계약이행완료 전제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 절대공기부족 등 사유로 연도 내에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됨에도 회계부서에서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발주 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은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계속비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이내(필요 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단,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 : 10일 이내)

3)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 재이월의 제한

명시이월 예산은 법적원인을 달리하여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 예산은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이 불가능

- 예비비 사용경비의 이월
예비비 사용경비에 대하여는 이월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사고이월의 조건에 해당되면 이월처리는 불가피할 것임.
-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함
- 이월에 수반된 자금
 - 원칙적으로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함
 - 단,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 자금이 부득이 당해 회계년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년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자금 없는 이월)

아. 신용카드 사용

1] 신용카드 사용대상

일반운영비(201) : 급량비는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임의 적용

가. 사무관리비(201-01)

- 물품구매,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수수료, 임차료, 연료비, 직원능력개발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제작비
-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 지급대상 :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직장교육 참가자중 단체 급식을 요하는 경우
 - ※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지급단가 : 7,000원 이내/식·1인 이내로 함

나.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여 비(202) : 숙박비, 교통비는 의무적용

가. 국내여비(202-01) 또는 국외여비(202-03)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자는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여비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개인카드 등을 이용하여 결제한 후, 회계담당자에게 여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현금, 개인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출장지가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여비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여비카드를 이미 다른 출장자가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소속부서에 여분 카드가 없는 경우 등

업무추진비(203,205) : 의무적적용, 다만 1백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임의적용

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십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

재 료 비(206) : 임의 적용

- 재료비(206)
 -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통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연구개발비(207) : 임의 적용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일반보상금(301) : 임의 적용

1. 외빈초청여비(301-08) : 의무적 적용(일부 임의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카드로 집행
 -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행사 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카드로 지급하되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집행이 가능

2. 행사실비보상금(301-10)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의무적적용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신용카드사용

3. 기타보상금(301-12) : 임의 적용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시설비및부대비(401) : 임의 적용

- 시설부대비(401-03)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405) : 임의 적용

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
- 공관 및 관사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나. 도서구입비(405-02)

-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전자상거래 : 임의 적용

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시 가능
 - 이 경우에는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검사·검수 ⇒ ⑥카드대금지출(1개월 후)
 - 물품제조·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 ③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제출 ⇒ ④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카드 번호입력) ⇒ ⑤납품(택배 등) ⇒ ⑥검사·검수 ⇒ ⑦카드대금지출(1개월 후)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 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② 신용카드 발급절차

< 법인용 신용카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한다.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 신용카드발급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실과 주무담당자 개설

- 신용카드 발급시 법인일반용으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시 현지에서공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2개 카드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3개 이상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관서 장의결재를 득한 후 추가발급사용 가능(이 경우에도 1개 계좌원칙 적용)
- 신용카드는 민간 법인카드와 구별·관리 될 수 있도록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마련한 3가지 도안 중 자치단체 형편에 맞는 도안을 선택하여 제작한다.



(1안)



(2안)



(3안)

< 여비용 신용카드 >

- 여비카드의 발급은 실·과·소 형편에 따라 발급한다. 다만, 허용 업종은 숙박업종, 여행업종, 일반·휴게음식업종으로 제한한다.
 - 여비카드의 사용은 국·내외 출장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 여비카드의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수불부(별표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기타 발급절차, 도안 사용절차 등은 법인카드를 준용한다.

❖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

❖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실·과·소의 신용카드발급상황을 종합관리

③ 신용카드 사용절차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가능
 -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카드사용 및 원인행위를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집행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 ②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다 ⇒ 원인행위
-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용도로 사용한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공채의 매출대상이되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카드대금 지급시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채권대금만큼 공제 처리할 수 있음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을 선행한 후 구매대금 지불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재한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
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 법인
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
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
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
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
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
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실·
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통보)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
※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경리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십만원이상** 카드사용내역은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해야 함

질 의 회 신

○ 급량비의 현금지급 가능 여부

<질의>

근무지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에 주변에 식당이 거의 없어 근무중 특정한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하는 것이 곤란한 바, 이와 같은 경우 급량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특근매식 등 급량비는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에 의해 지출하고 매출 전표를 증빙서류로 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 특별단속 등), 관용차량 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특정식당 등을 이용한 지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기관이 근무여건이 상기에 예시된 경우라면 현금지급이 가능할 것임

○ 급량비 지급대상자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의 일치 여부

<질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근무시간 종료후 2시간 초과 근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2시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량비 지급도 불가능한 지 여부와 만약 급량비 지급이 가능하다면 초과근무대상이 아닌 별도의 증빙자료로 갖추어야 할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특근매식비 등 급량비 지급에 적용되는 시간대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치하지는 않는 바,

- 예를 들면 오후 6시 퇴근인 날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최소한 오후 8시 이후 근무자부터 적용되지만, 특근매식비 등 급량비는 원칙적으로 오후 6시 이후 근무자부터 적용되므로
- 근무종료 후 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퇴근한 직원들도 특근매식비는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TIP : 질의답변

- 현재 신용카드사용 범위 확대실시로 기존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외빈초청여비에서 추가로 도서구입비,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100만원이하 사용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도 사용가능토록 개정되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 관리 요령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중 임의적용 사항으로 보아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비품성 수리비, 수선비도 신용카드로 금액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계약절차로 수리비를 집행해야 하는지요?

⇒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계약의 종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지방계약법령에 의하여 계약(계약서 작성 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의한 간이계약 등)이 이루어졌다면 금액에 관계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습정리

- 일상경비는 일반적으로 각실과등 의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 정당한 채주이외에 교부되는 지출의 특례에 해당된다.
- 지난년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라도 불용액의범위내에서 집행하는 지난 회계연도분을 금년에 집행하는 것은 지출의 특례에 해당된다.
-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급하는 개산급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선금은 지출의 특례에 해당된다.

-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제도를 두고 있으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지출원인행위 없이 이월이 가능하나 사고 이월의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출원인행위가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이루어 져야 이월이 가능함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10만원이상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사용(클린카드사용의무화)은 그 예외로 지출의 특례에 해당됨

연습문제

1. 다음중 지출의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일상경비의 교부 ② 도급경비의 교부
- ③ 선금급 및 개산급 ④ 예산의 전용

<정답> ④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과 관련되며 지출의 특례와는 관련없음

2. 다음중 일상경비의 교부범위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여비 - 1회 교부한도액 500만원
- ②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 1회 교부한도액 2,000만원
- ③ 업무추진비 - 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 ④ 일반운영비 - 제한 없음

<정답> ③ 업무추진비의 1회 교부한도는 제한없음

3. 다음 중 선금 지급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운임 및 사례금 ② 관보 기타 정기간행물 대가
- ③ 부담금, 교부금과 보조금 ④ 관서운영비

<정답> ④ 관서 운영경비는 개산급으로 일상경비로 교부됨

제 V 장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소멸시효

학습목표

- 세입세출외현금의 개념 및 관리요령을 이해한다.
-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시 이자지급 방법을 살펴본다.
- 소멸시효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여 본다.

학습내용

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가. 개념

세입세출과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을 말하며, 연도소속 구분은 출납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함

나. 종류

- 보증금 : 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증금 중에서 현금으로 보관되는 경비
- 보관금 :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관하는 금전 등(체납처분 경매대금의 미교부금 등)
- 잡종금 등 기타 : 보증금, 보관금 이외의 세입세출외현금(각종성금, 위문금, 재해의연금, 기여금 등)

다. 보관 및 귀속

- 출납관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보관 : 금융기관에 예치보관이 원칙
 - 귀속 : 반환기간 경과한 후에도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에 귀속 조치
- ※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 5년(공법상 원인에 기한 것)

라. 수납 및 반환

- 수납 : 납부의뢰→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발부(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금고에 납부(납부자)→영수증 교부 및 납입통지서 송부 (금고)→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정리
- 반환 : 반환요구→요구서 심사 및 지급명령(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지급·계좌송금(금고)→지급필 통보(금고)

마. 이자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자지급(재무회계규칙 제85조)
- 지급대상
 - 차액·계약·하자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 지급기준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예금 예 탁	만 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 당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최고의 이자율	
별단예금 예 탁	만 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 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 이자 미지급(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 지급 가능)	

2. 소멸시효

가. 의 의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완료되었을 때, 지금까지 평온하게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 그 자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간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제도

나. 채권소멸시효

(1)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 5년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채무자인 주민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상의 채권 청구절차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정권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 받을채권 : 세금,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 등
- 줄채권(채무) : 과오납(잘못낸)세금 반환청구 등
 - ※ 민법상 채권소멸시효 : 10년
- 사법상의 매매나 도급 기타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소멸시효 적용 : 5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공·사법상의 권리를 망라하고 공법상 채권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판례 65다 2506호('66. 9. 20)

다. 시효중단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일정사실이 생겼을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되어진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음(청구·압류·가압류·최고 등)

질 의 회 신

○ 공연수입금을 세입세출외로 적용할 수 있는 경비 적용여부

<질의>

○○구에서 「난치병 돕기 한마음 음악회 행사」 예산을 편성, 지출하고 동 음악회를 △△사와 공동개최하여 그 수입금으로 암, 백혈병, 심장병 등으로 고생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돕기 위해 동 금액을 ○○구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일시 적립후 연말에 치료비를 전달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9조의3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공연수입금 등 일반적인 세입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모든 수입은 우선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고 이후에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담금, 보증금, 예치금,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토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공연수입금을 일시적으로 보관 후 연말에 난치병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치료비로 전달하기로 주최기관간 상호 약정하였고, 공연참석자들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근거하여 자치구가 일시적으로 보관 후 난치병 어린이에게 전달하였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제4호(舊)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장기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조치 시효기간

<질의>

○○구 재무회계규칙 제80조4항에 의하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1998년 4월에 가로수 이식하고 예치기간 2년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반환기간」이라 함은

①지방재정법 제69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예의 귀속)에 의하여 보관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한 2005년 4월 이후인지

②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항의 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보관기간 만료 후 10년이 경과한 2010년 4월 이후인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은 지방재정법 제166조 및 제167조(舊)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을 보충적으로 보완하는 규칙입니다.

○ 따라서 자치단체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69조(舊)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으로 하고 있는 바

- 위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별도의 시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므로 ①과 같이 2005년 4월 이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TIP : 질의답변

○ 관할 학교급식실공사 계약을 하면서 하자보증금(현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당시(1996년) 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세외통장에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하자기간과 보관(5년)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지나 ○○시교육청으로 세입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세입조치를 할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69조에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귀 기관의 경우 하자책임기간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귀 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세입조치를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등을 관계징수관에게 송부하여 징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생각해 봅시다.

○ 현재,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에 의한 보관금 지급시 출납원은 주관부서에서 반환 의뢰한 원금과 통장해지 이자("이자"임을 표기)를 즉시 송금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지급, 지출은 결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자발생분에 대한 것을 세입세출외현금 수입으로 결의해서 원금과 합한 금액을 지출결의서에 표시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예산총계주의를 따진다면 오히려 "기타이자수입"으로 처리하여 세입부서에 이자반환청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반환시 즉시 줄 수 있는 이자발생분을 세입처리하여(지급일자를 미리 추산하여 주관부서에서 두서금액을 맞추어 와야 함)처리하는 것은 수입계수만 늘릴 뿐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타 시군의 경우 이자수입을 기타잡종금으로 부기해 놓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수입처리 않고 즉시 송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지급 현황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학습정리

-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되며 공공성이 있는 현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 계좌를 말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반환시에 정기예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6개월 미만 보관하는 경우 별도예금으로 원천세, 의료보험료 등 공공성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세입세출외 현금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이를 보관 및 관리하며 보증금이나 보관금, 잡종금 이외의 현금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할 수 없음.
- 공법상 채권소멸시효는 5년으로서 민법상 장기채권 소멸시효인 10년과 차이가 있으며 시효의 기초가 되는 청구·압류·최고 등이 이루어 질 경우 그때 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음

연습문제

1. 다음 중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입찰보증금 ② 하자보증금 ③ 계약보증금 ④ 공사준공금

<정답> ④ 공사준공금은 채주인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음

2. 공공시설손실부담금을 자치단체에 1년 이상 보관하였을 경우에 이자지급 기준은?

- ① 정기예금예탁에 의한 이자지급
② 별도예금예탁에 의한 이자지급
③ 공공예금예탁에 의한 이자지급
④ 시중금리에 의한 이자지급

<정답> ① 부담금의 경우 6개월이상 예치한 경우 정기예금이자율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3. 입찰보증금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만 6년 동안 예치하고 예치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 ① 자치단체에 귀속 ② 본인에게 환급
- ③ 계속하여 보관 ④ 국고에 귀속

<정답> ① 지방자치단체 채권소멸 시효가 5년이므로 5년이 경과하도록 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 임

용어사전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계약·입찰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이다.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다.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라 함.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 계약법령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그 공사대가 최종지출 시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령상으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있음.

○ 보증금 반환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동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 즉시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5조 내지 제7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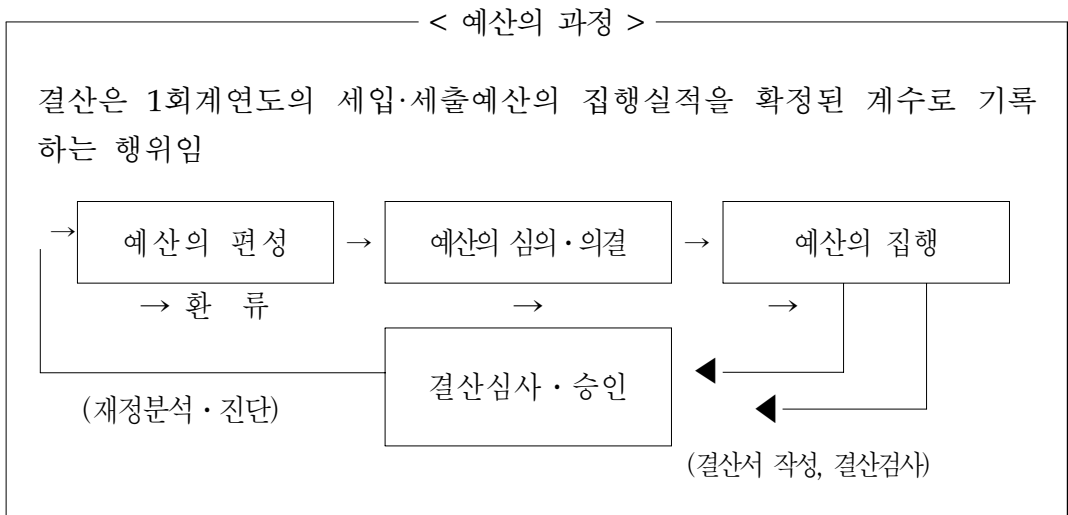
제VI장 결 산

학습목표

- 결산의 의의 및 결산업무처리 순기를 숙지한다.
- 결산보고서 작성요령 및 내용을 숙지한다.
- 결산업무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시차별로 이해한다.
- 결산잉여금의 처리절차 및 방법을 숙지한다.
- 결산검사 및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절차와 의미를 이해한다.

학습내용

1. 결산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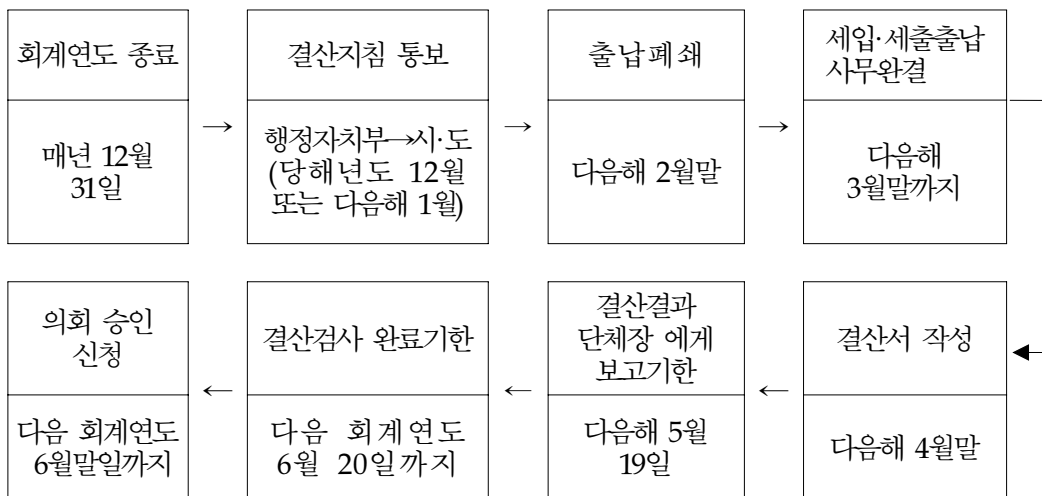
-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감독 수단인 예산의 심의·의결과 구별됨

○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함으로써

- 당초예산과의 차이,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결산업무 처리 순기



○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의 책임을 해제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음(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하는 것으로서 특정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님)

○ 결산서는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지방의회의 재정통제수단으로 활용됨

2. 결산보고서

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2항)

- 세입·세출실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소관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함
- 결산서의 작성
 - 결산총괄설명서
 - 세입결산
 -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미수납액(결손처분 + 다음년도 이월액)
 - 세출결산
 -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조서
 - 계속비 집행
 - 예비비 지출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채무부담행위
 - 수입대체경비

나. 기금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는 기금은 현금회계방식으로 결산함

다. 채권현재액보고서

소관별·회계별로 채권의 종류, 현재액을 사유별로 그 증감내역을 파악하여 계산함

라. 채무결산보고서

지방채·차입금·해외차관·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의 증감내역을 파악하여 작성함

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역을 용도별, 종류별로 계산함

바.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을 품종별로 계산함

※ 결산서 부속서류

- 결산수지상황 총괄
-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 전년도 결산대비표
-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전연대비)
- 세입금 불납결손사유별 현황
-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 세출결산 불용액현황
- 보조금 집행현황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 보증채무 현재액

3. 결산의 준비

가. 출납사무의 폐쇄

- 예산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기 때문에 출납사무의 완결을 전제로 작성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말로 폐쇄함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정리를 위하여 3월 10일 까지 출납정리기한을 두고 있음
 - 1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내에 완결하여야 함
- ※ 매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을 폐쇄하고 출납사무를 완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액 및 세계잉여금이 확정됨

나. 출납사무 완결을 위한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수입과 지출의 발생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2개 연도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어느 회계년도에 소속시키느냐가 문제됨
 - 회계연도 소속 구분 기준
 - 실질주의 : 세입·세출의 원인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
 - 형식주의 : 현실적으로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질주의를 채택, 출납정리기한을 경과한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형식주의를 인정함

1)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임. 다만, 그 납기 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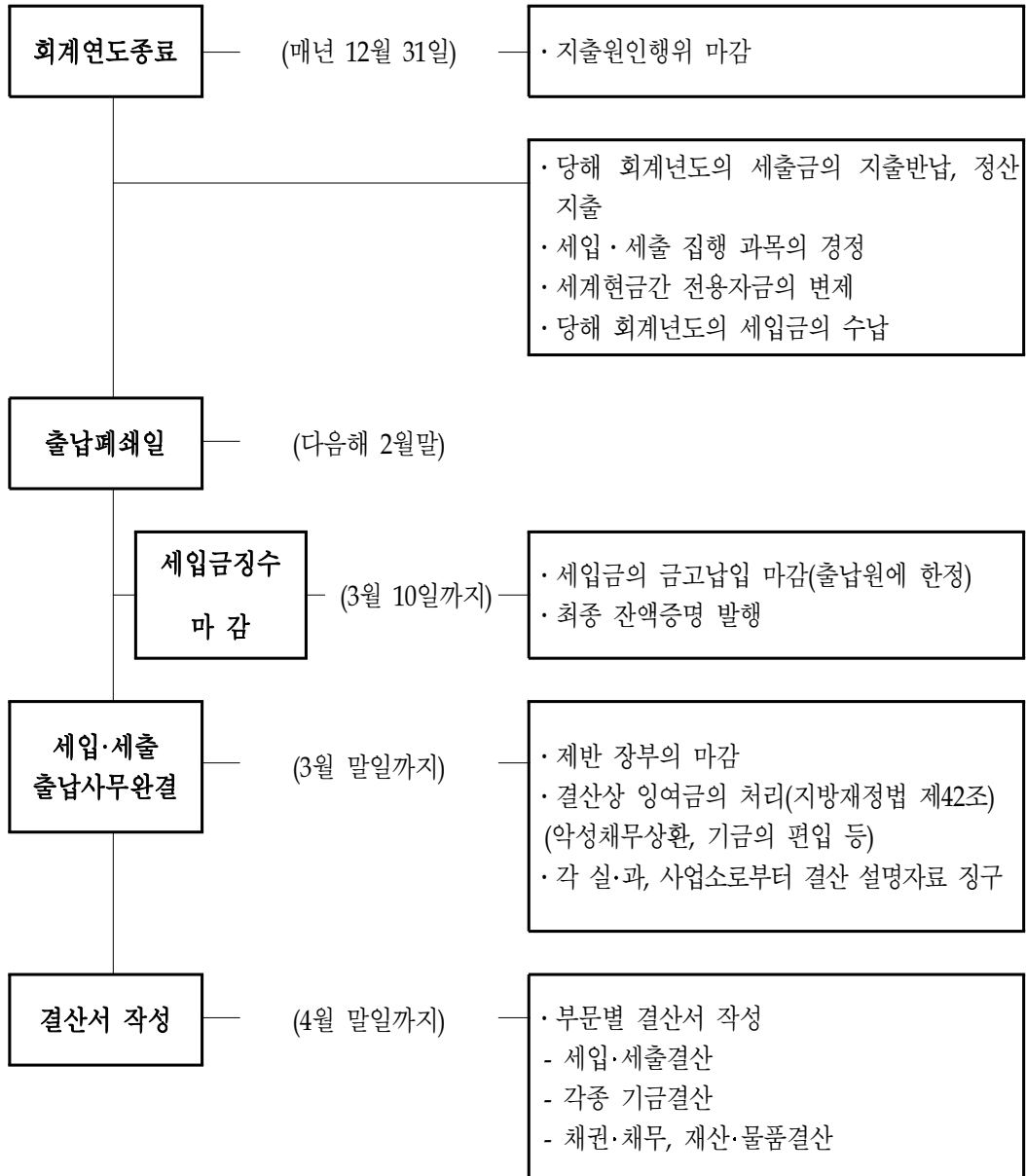
-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년도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 수입이 속하는 년도임
-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다만, 지방채 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년도임
- 수시수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년도임

2)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지방재정법시행령 제3조)

- 지방채의 원리금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임
- 모든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기타 유사한 것은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임
-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임
- 사용료·보관료·전기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임
- 공사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다만, 출납폐쇄기한까지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 기타 사항은 그 지급명령을 발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4. 출납사무의 완결

[처리과정]



5. 결산잉여금의 처리

가. 잉여금의 의의

- 세계잉여금이란 1회계년도 중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뺀 잔액을 말함
- 잉여금은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경우와 예산을 미집행한 불용액에 의하여 발생됨
-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함(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임)

나. 잉여금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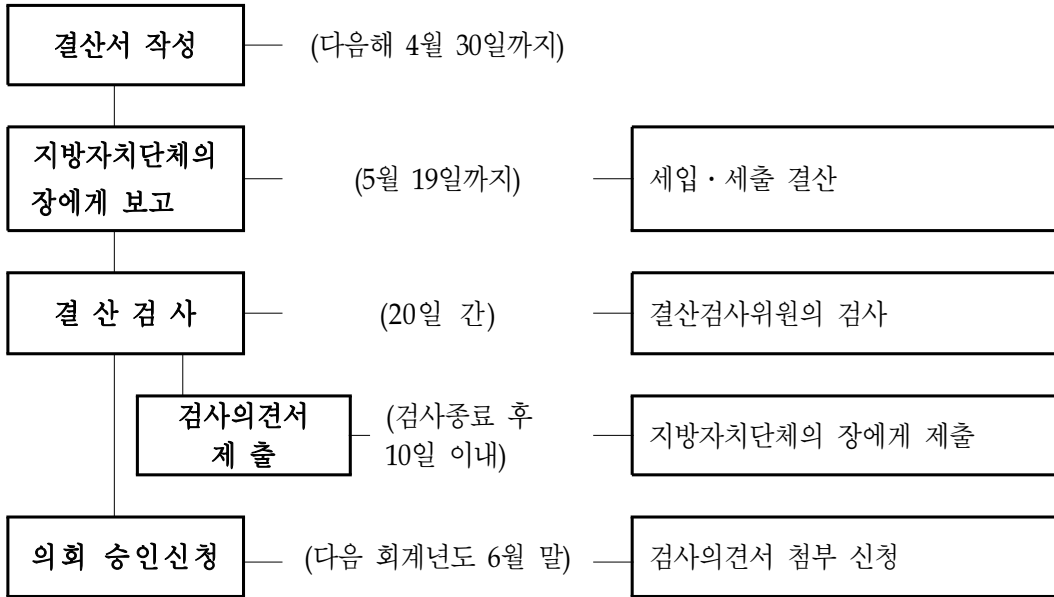
- 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집행잔액, 익연도이월금(명시·사고·계속비)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함
- 이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음

○ 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순세계잉여금 = 잉여금 - (이월금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 결산검사

[처리과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회계담당과장은 5월 19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2항)

나. 감사위원의 결산검사

- 감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함
 - 시·도 : 5인 이상 10인 이하
 - 시·군 및 자치구 : 3인 이상 5인 이하
- ※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면 대표위원과 감사일정을 협의하여 수검장소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1항)
 - 세입·세출의 결산
 - 계속비·명사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 감사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및 금고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2항)
 - 세입·세출 관련 회계부책
 - 결산내용의 기초가 되는 서류 및 그 설명서 등

결산검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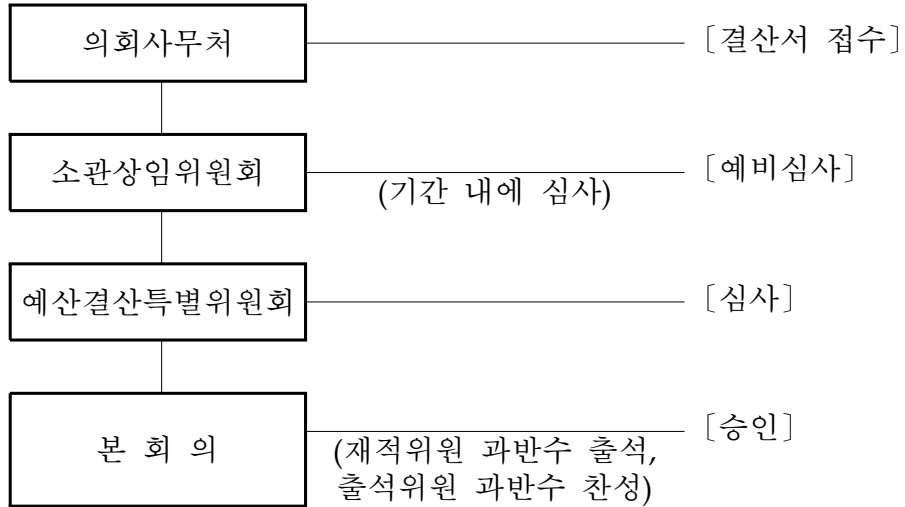
- ① 결산결과 계산의 과오 여부
- ②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 ③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료요구 창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함

- 감사위원의 검사기간은 20일간으로 함
- 감사위원(대표감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사위원의 심사결과 결산서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7.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가. 승인신청

- 승인대상 : 세입세출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 등 결산서 6종
- 지방의회 제출 :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나. 승인의 효과

- 승인의 효과는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사항에 대한 회계적·법적 책임은 별개의 것임
- 불승인 시에도 이미 집행한 수입·지출은 유효하고, 당해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정치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음

8. 보고 및 고시

- 지방의회 승인 후 5일 이내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고시 : 시·도보, 시·군·구보 등 공보와 게시판에 공고

학습정리

- 결산이란 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기록하는 행위를 말함
-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결산서 부속서류 등으로 구분되며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는 총괄 설명서 세입결산, 세출결산, 계속비 집행, 예비비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출납사무의 폐쇄기한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이며 결산시에는 회계연도 소속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 결산서는 다음연도 5월 19일 까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해야 함
-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시도는 5인이상 10인이하 시군구는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되 지방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며 특정사항에 대한 법적·회계적 책임은 별개임

연습문제

1. 결산보고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세입·세출결산보고서 ② 기금결산보고서
- ③ 채권현재액보고서 ④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정답> ④ 예산 집행상황 보고서는 예산의 현재 집행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1년간 집행결과인 결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2. 다음 중 결산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출납사무의 폐쇄 ② 출납사무완결을 위한 회계연도 소속 구분
- ③ 결산잉여금 ④ 출납상황보고

<정답> ④ 출납상황은 현재상태의 예산 집행상황을 보는 것으로 결산과는 무관함

3. 결산검사 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다음 연도(5. 19까지)
- ② 감사위원의 결산검사(20일 간)
- ③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 ④ 상급기관의 결산승인(다음 연도 6월 20일까지)

<정답> ④ 결산은 지방의회 승인으로 종료되며 상급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내지 제61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 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회계결산지침」

제Ⅶ장 회계장부 관리 및 계산증명

학습목표

- 회계장부의 종류 및 보존방법을 이해한다.
- 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이해한다.
- 회계문서의 표기, 정정, 날인절차 등을 이해한다.
- 회계처리의 지정정보 처리장치의 사용의무화 된 배경을 알아본다.

학습내용

1. 회계장부

가. 장부의 비치 정리(지방재정법 제96조, 재무회계규칙 제8장)

- 경리관 : 지출원인행위부
- 지출원 : 지출부, 일상경비정리부, 지급명령발행부
- 일상경비출납원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유가증권수급부
- 분임자 :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함
- 보조부의 비치 : 위 항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음

나. 장부조제, 보존(재무회계규칙 제150조)

-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조제하여야 함.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

다. 장부기재상의 주의(재무회계규칙 제149조)

-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
- 각 계좌의 색인을 붙임
-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함
- 매월 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
-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기재
-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임
-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앞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

라. 장부 및 지출서식 내용을 전산처리할 경우 별도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음(재무회계규칙 제150조)

-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2. 계산증명

가. 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계산증명규칙 제3조)

증명책임자는 증명기간마다 계산서를 작성하고 증명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전산디스크 제출) 해야 함. 다만, 다른 증명책임자의 계산을 병산하거나 계산서를 수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

※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디스크 제출

나. 두서금액의 표시(재무회계규칙 제124조)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을 한글로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 불가

다. 금액, 수량 등의 정정(재무회계규칙 제125조)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라. 회계문서의 날인(재무회계규칙 제128조)

- 회계문서 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 다만, 강의, 감시 또는 회의참석의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의 경우에 실비 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의 수당은 가능함

마. 증빙서류 원본주의(재무회계규칙 제126조)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을 첨부

바. 회계서류 편철(재무회계규칙 제126조)

-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의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해야 함

사. 회계처리의 지정정보 처리장치의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회계처리 해야 함.

※ 지정정보처리 장치 : (e)-호조 시스템

제Ⅷ장 공유재산 관리

학습목표

- 공유재산의 개념, 범위, 종류, 관리체계를 알아본다.
-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사용관리, 처분관리에 관하여 알아본다.

학습내용

1. 공유재산의 일반관리

가. 공유재산의 개념

1) 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 공유재산 내역별 현황 >

2006.12.31 기준

구 분	수 량	면 적	금 액
계			2,463,214억원
토 지	3,619,054필지	6,954,456천㎡	2,052,927억원
건 물	105,754동	38,756천㎡	240,980억원
기타(공작물 등)			169,307억원

<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

2006.12.31 기준

구 분	금 액	비 고
행정재산	222조 4,934억원	90.3%
보존재산	3조 6,304억원	1.5%
잡종재산	20조 1,976억원	8.2%

2) 공유재산의 성질

-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 기능
 - 국민과 주민의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의 활용수단
- 사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수익재로서 역할
 - 세외수입의 확대 등 재원조달의 수단

나. 공유재산의 범위

1) 부동산과 그 종물

※ 종물 : 건물의 냉·난방시설(보일러 포함), 엘리베이터시설, 전기·통신시설, 주택에 있어서의 우물, 농장의 부속시설 등

2) 선박·기관차 등 중요 기계와 기구

3) 지상권·특허권·주식,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등

다. 공유재산의 종류

1) 구 분

종 류	공 유 재 산
○ 행정재산 ·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도서관, 각종 회관등)
·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등)
·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상·하수도, 지하철등)
○ 보존재산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등)
○ 잡종재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2)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유물중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큰 재산
- 공용·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출자, 사권설정, 신탁이 불가능한 재산

3) 보존재산

- 행정재산과 같이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신탁, 출자, 사권설정이 금지되는 재산
-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용
- 양여·교환 등은 행정재산과 맥락을 같이 함.

4) 잡종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님
- 필요에 따라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 변제하거나 사권을 설정
-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재산
- 구 분
 - 「수익재산」으로서 활용되는 것 : 대부·매각 등
 - 「준행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것 : 출자재산과 준공용재산
 - 준공용재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재산
- 시효취득의 대상이 됨

라. 관리체계

- 총괄재산관리관
 -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당해 자치단체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받은 공무원(회계관계공무원)
- 재산관리관 : 재산의 종류별·소관별로 지정하여 관리
- 분임재산관리관 : 재산관리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 또는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

마. 관리계획

- 1) 익연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집행권을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

2) 예산편성의 준칙으로서 강행성과 구속력

3) 관리계획 수립대상

구 분	취 득	처 분	비 고
서울시·경기도	10억원 또는 6천㎡이상	10억원 또는 5천㎡이상	
기타 시·도	“	5억원 또는 5천㎡이상	
시·군·자치구	5억원 또는 1천㎡이상	5억원 또는 2천㎡이상	

※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 건물·기타 재산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기준

(신축공사는 설계·감리비 등을 포함한 건축비 시설비를 기준함)

4) 관리계획 중 제외대상

- 다른 법률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한 무상귀속, 수용, 매각 등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등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항)

바. 실태조사

1) 실시시기 : 매년 실시(2007년의 경우 4월~8월(5개월간))

2) 조사내용

- 공부상 기재사항과 현황 일치여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 무단 점·사용여부, 불법시설물 축조여부, 무단 형질변경 여부
-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변경 필요성
- 무단 전대·권리양도 확인 등

2.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가. 재산의 매입

- 1) 사법상 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후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취득형태
- 2)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할 수 없으며 공유지분으로 된 재산과 사유지로 둘러싸인 맹지, 도시계획 등 공법상 토지이용이 제한된 토지 등은 재산의 가치하락과 토지이용의 제한이 있어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나. 건물의 신·증축 등에 의한 취득

- 1)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사를 신·증축하거나 공작물의 신설, 증설 또는 입목의 식재 등에 의한 재산의 취득형태
- 2) 예산의 투입이 있으나 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기관일 경우

다. 기부채납

1) 개요

- 사유재산을 기부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채납하는 행위로 민법 제55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와 유사
- 지방재정법상의 공유재산은 매각, 교환, 양여, 무상귀속, 출자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처분할 수 없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인에게는 기부가 불가
- 기부채납이 되는 대상은 물건상태에서 공유재산에 편입이 가능한 재산으로 반드시 재산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 따라서 건물 등의 보수·유지관리, 토지의 형질변경, 가공비, 공사비 등과 같은 경우는 재산의 증가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불가하다. 다만, 주물과 관련된 종물의 취득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부터 물건의 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됨.
 - 시설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민원이 야기되거나 사권이 설정된 재산
 -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사용이 곤란한 경우
 -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무상사용하기 위한 재산
 -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인에게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부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없음.
- 기부채납한 재산은 어떠한 이유로도 기부자에게 반환이 불가
 - 무상사용수익허가 또는 조건이 수반되지 않은 기부이기 때문임

3) 기부채납의 종류

-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 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민자유치 수단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 기부재산을 평가하여 그 가액만큼 무상사용이 가능
- 자치단체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 무상사용 불가
- 기부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는 경우
 - 무상사용 불가

라. 교환에 의한 취득

1) 개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 상호간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취득
- 사인이 필요하여 공유재산과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교환이 성립 불가

2) 조건

- 행정재산을 교환하고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 잡종재산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
-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유사한 것이어야 함(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 제외)
 -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주된 재산의 종류가 같은 경우

3.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1) 개념

-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최고 3년

- 대부계약 : 잡종재산,
 - 토지와 그 정착물은 최고 5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일부 20년, 50년 허용)
 - 기타의 물건은 1년
- 2) 수의계약 대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행정·보존), 제29조(잡종)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잡종재산으로서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등
 - ※ 다만, 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 3) 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 면제의 범위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한정, 수도·전기 및 관리비용 제외
- 4) 대상 재산가액의 평가
 - 토지의 경우 :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필요시 감정평가액)
 -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 :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
 - ※ 건물의 경우 :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동안 1회의 감정 후 감가상각율 적용하여 산출 가능
- 5) 사용료의 산출
 - 연간 사용료 : 시가 원칙(재산평가액 × 사용료율)
 - 사용료율은 역산하여 산출(사용료 / 재산평가액)
 - 경쟁입찰시 사용료
 - 최초년도 : 최고입찰가
 - 2차년도 이후(수의방법으로 허가 갱신한 경우 포함) :

$$\text{당해연도의 재산가액} \times \frac{\text{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연도의 사용료}}{\text{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나. 허가 또는 계약의 갱신

1) 적용범위

당초 사용·수익허가한 기간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2) 갱신의 요건

-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만료일 전에 입찰공고하여 새로운 사용자를 결정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그러나, 천재지변 또는 재산관리청의 귀책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기간갱신을 신청받아 기간갱신은 할 수 있음

다. 위탁관리

1) 개념

행정·보존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업무로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하는 업무 형태

2) 위탁의 대상

- 행정·보존재산에 한정(잡종재산의 위탁은 불가)
- 위탁재산내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포함된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3) 위탁의 개념

- 위탁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에게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를 수탁자의 명의로 책임하에 수행하고 법률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됨

-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분야로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적용

예) 체육·문화 관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 용역(아웃소싱)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충당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수요자적인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

예)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청사관리

- 사용수익허가 : 민간부문의 임대개념

4) 재산의 성질별 위탁요령

-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관리하던 재산을 수탁자에게 위탁비용을 보조하고 수탁자는 그 비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대신하는 형태로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

5) '06. 1. 1 이후 적용시 유의사항

- '06년도 이후 위탁계약체결분부터 위탁비용과 사용료의 상계처리가 가능
- 시설활성화로 인해 위탁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한 수입증대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 사용료 징수 및 위탁보조금 상계범위, 초과이익금 분배방법 등 제반 사항은 계약전에 (안)을 수립하여 **입찰을 통해** 확정

※ 위탁에 대한 수의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

라. 영구시설물의 축조

1) 영구시설물 축조의 금지범위

- 당해 공유재산의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함
-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상호간에 소유토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상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할 수 없음.

- 2)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이 경우 조건이 없는 기부이기 때문에 향후 기부자가 무상사용도 불가하고 아무런 연고권이 발생하지 아니함
- 3)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무상사용수익허가 목적
- 4)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이 때 영구시설물의 존치기간은 최고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1회 사용 후에 철거이행을 확약(연장 불가)하여야 하며, 자진철거 불이행시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비를 예치하여야 함.
- 5) 외국인투자기업이 기부 또는 원상회복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6)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 축조하는 경우
- 7)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시설을 대체시설코자 축조하는 경우
- 8) 매각·양여·교환계약 체결에 의하여 필요에 의거 축조하는 경우
- 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 10)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공유 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가. 재산의 매각

1) 매각대상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목적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
-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 기타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 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2) 매각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하거나 보존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으로 그 사용 수익 또는 매각을 신청한 경우
-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경우
-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경우
- 물관리종합개선대책(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수질특별대책수립지침, 국무총리지시 제1998-11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코자하는 일부 경우

3) 수의계약 매각 가능대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등

4) 수의매각 제외대상

- 상반된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 수의매각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 재산의 교환

1) 의 의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간에 또는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에 쌍방 합의에 의하여 교환하는 사법상의 계약

2) 법적요건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상호가격 3/4 이상일 경우)
 - 당해 지자체의 수용권 사업은 현금 보상하여야 하며, 교환 취득 불가
- 교환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하여 교환이 성립되는 것이 아님
- 교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 유사한 재산(예 : 부지와 부지, 건물과 건물간) 이어야만 교환이 가능함.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공유재산과 교환시는 예외)

3) 교환의 제한

-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케 하는 경우 또는 장래에 도로, 항만, 공항등 공공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의 필요가 있는 재산은 교환 불가
-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교환으로 취득 불가
-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을 해제하지 않고는 교환취득이 불가

4) 교환가격의 평가

-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
- 교환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시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한다.

다. 재산의 양여

1) 의 의

-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국·공유 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타에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민법 제55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 양여는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양여의 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특약을 하는 등 특수성이 있음. 또한 양여 자체가 금전적 보조와 같은 효과를 가짐.

2) 양여의 요건

○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당해 행정목적, 용도 등의 성질 등을 그대로 유지하며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 국가기관 또는 시·도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적과 용도가 다른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서의 양여 불가

○ 잡종재산의 경우

- 광역자치단체가 그 구역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시·도에서는 시·군·구로 양여할 수 있으나, 시·군·구는 시·도에 양여가 불가하고, 시·도, 시·군·구 모두 국가로의 양여도 불가함

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1) 개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각 개별법에서 인·허가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기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2) 대상

- 도로·하천·제방 등 개별법령에 의해 지정, 설치 준공된 공공시설

3) 무상귀속 범위

- 사업시행자가 시행청인 경우 : 부담한 비용에 관계없이 귀속 가능
-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 : 부담한 비용의 범위내(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설치비용과 동 부지가액)에서만 무상양도 가능

계 약 분 야

제 I 장 계약의 의의와 특징

학습목표

-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의의와 법률상의 효과를 이해한다.
- 계약의 원칙과 특성을 이해한다.
- 계약과 관련한 법령체계와 계약의 집행기관을 알아본다.

학습내용

1. 계약의 의의

가. 계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낙찰취소처분 등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96.12.30 누 14708)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도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판례> 계약금액 감액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90.11.28, 사건 90-다카 3659)

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원가계산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환수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공공복리 추구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며, 이에 따라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 계약업무담당자의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예산집행의 공익성·공정성·경제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계약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라. 계약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대리경리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경리관이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구 분	공 사		물품제조·구매, 용역		조달구매	
	광 역	기 초	광 역	기 초	광 역	기 초
본 청	추정가격 10억원이하	추정가격 1억원이하	추정가격 3억원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금액제한 없 음	금액제한 없 음
제1관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추정가격 5백만원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00만원이하	"	"

※ 지방의회(사무처)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함(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마. 계약의 법령체계

- 2006년 1월 2일 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각종 예규, 훈령이 제정되어 전면시행 되고 있으며 2007년 9월 20일 제1차 개정이 이루어짐
- 그 동안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왔던 계약제도 운영방식은 이제 사실상 사라졌으며 지방의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 한편, 지방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 법령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우선적인 적용대상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체계

① 법 제41조문 ②시행령 8장 125조

③ 예규·고시 -25개(예규 23, 고시 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저가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3)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 운영요령 ○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 계약일반조건 (공사·기술용역·물품)
- 입찰유의서 (공사·기술용역·물품)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정보처리장치 지정고시
- 국제입찰금액 범위 고시(2006.12.29)

사. 지방계약법령의 적용대상 기관

1) 직접 적용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제1조)

- 전국 246개 시·도 및 시·군·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기관·법인

○ 교육행정기관(지방계약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36조)

-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청
- 초·중·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2) 준용할 수 있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의무적 준용기관)
- 지방공사·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아.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방계약법 제4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함

※ 다른 법률 예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기술사법, 건축사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령,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 물품관리법령, 폐기물관리법령, 소방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조달사업에관한법령, 정부투자기관기본관리법령, 지방공기업법령,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법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산림법령, 장애인복지법령, 어항법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전력기술관리법, 민사소송법, 공탁법, 증권거래법, 인지세법, 국세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방자치법 등

※ 관련부처·청의 고시·지침·공고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 공고 (중기청)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 (건교부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공정위)
- 감리업무 수행지침 (건교부지침)
-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건교부지침)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건교부고시)
- 설계 감리 업무 요령 (건교부요령)
- 설계·감리·용역 손해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건교부요령)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과기부공고)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건교부고시)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건교부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 비용 산정기준(건교부고시)
- 경미한 공사의 범위 (정통부고시)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자부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 (노동부고시)
-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동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정통부고시)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 (정통부고시)

질 의 회 신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방 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동 공사·공단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되며 지방계약법령은 동 회계규정에서 준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임

2. 계약의 집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무원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 ※ 전문기관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비영리 법인 등을 말함
-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가. 전문기관의 범위

- ◆ 계약사무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원가검토는 제외)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공익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수감하는 기관 또는 법인
- ◆ 원가검토만 위탁 가능한 기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 해당)
 - 국가·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 원가검토를 하고자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

나. 전문기관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기관 범위내에서 당해 사무수행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
-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
- 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다.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해야 함.

라.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대상

구분	조달청 의뢰(의무)	자 체 계 약 · 전문기관위탁 가능계약
공사	○ 대안입찰공사 ○ 일괄입찰공사 ※ 근거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 조달요구 대상공사중 - 재해 및 사고의 긴급복구공사의 계약 - 시설·감독·하자보수 등에 관한 기술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공사로서 조달청장과 사전 협의한 경우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원가 검토 의뢰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중 다음의 경우 -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경우 - 재해복구사업 - 기타 공사의 특수성,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구분	조달청 의뢰(의무)	자 체 계 약
용역	○ 의무적 대상용역은 없음 ※ 자율의되는 가능	○ 모든 용역계약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 가능함
물품	○ 조달청장이 조달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요물자 ※ 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① 천재·지변·긴급한 행사의 물자구매 ②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는 경우 ③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직접 구매토록 한 경우 ④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시설공사의 단계적 조달 자율화(조달사업법시행령 부칙)

2007년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PQ대상공사 ⇒ 2008년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 ⇒ 2010년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모든 공사 자율화)

3. 계약체결 금지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들이 종사하는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계약 체결이 금지되어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88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계열회사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지방계약법 33조, 영 제93조)

※ 계약금지 대상

구 분	적 용
①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본인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경쟁입찰을 불문하고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② ①의 배우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금지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은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금지
④ 본인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 회사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금지
⑤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사실상 본인 소유 재산이 자본금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
①~⑤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

※. 자료제출 요구 등

- 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예:의회사무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갖추지 않은 경우
 - ※ 단,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하는 경우 예외(이 경우도 조합원은 자격 필요)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자 또는 납세번호 부여가 되지 않은 자
-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
-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
- 영업정지 중인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 또는 사업행위를 일시 중지된 경우

질 의 회 신

<질의>

당초에는 ○○군청에서 군도확·포장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도중 지방도(道)로 승격되어 동일도로에 대하여 ○○도청에서 다시 발주를 하는 경우 도청에서 새로운 낙찰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하는 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당해 공사계약관련 예산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체결되어 이행 중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 명의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4. 계약의 대행 (법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로부터 계약의 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음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 정산해야 함

학습정리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과 관련된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개별법에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 할 수 있음
- 계약과 관련된 각 부처나 청의 고시 지침 등이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계약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해야 하나 조달청에 의뢰 할 수 있으며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는 물품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백억원 이상이며, 이외에 국가나 다른 공공법인, 전문기관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들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계열회사는 그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음
- 영업정지등 자격이 정지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와 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당해관할구역 내의 사업등과 관련된 공사 등의 계약을 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음

용어정리

○ 지역제한경쟁입찰

경쟁입찰시 입찰 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발주, 지방자치 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제도

○ P.Q(pre-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제도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공사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에 있는 1개 이상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하는 제도

○ 적격심사제도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낙찰자의 결정방법 중에 충분히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2조, 제4조 내지 제8조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부칙

제II장 자치단체 계약의 종류

학습목표

- 계약의 종류별로 개념을 이해하고 계약체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살펴본다.
- 낙찰자 결정방법의 유형을 살펴보고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기준을 숙지한다.

학습내용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크게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구분된다.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물품·공유재산의 매각, 청사임대, 리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 유의할 사항중 하나는 입찰보증금은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나 계약보증금은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기타의 경우 등 대가를 미리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중 경매에 의한 경우가 있다. 경매의 경우에도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 이외에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도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동등한 적용을 받게 된다.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구분

구 분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가격 낙찰자	최저가·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보증금(서)	대가를 일시에 선납 받는 경우 불필요	필요
대가지급	○ 선납원칙	○ 계약이행후 지급 ○ 선금지급
입찰보증금	○ 필요(면제 가능)	○ 필요(면제 가능)
예정가격	○ 작성 ○ 잡종재산인 경우 2인 이상 감정평가	○ 작성 ○ 생략 가능(2억(전문1억원, 전기공사 등 8천만원)미만 공사, 5천만원 미만 용역·물품)
하자보증	불필요	필요
지체상금	부과	부과
계약담당공무원	경리관(분임, 대리경리관)	

2.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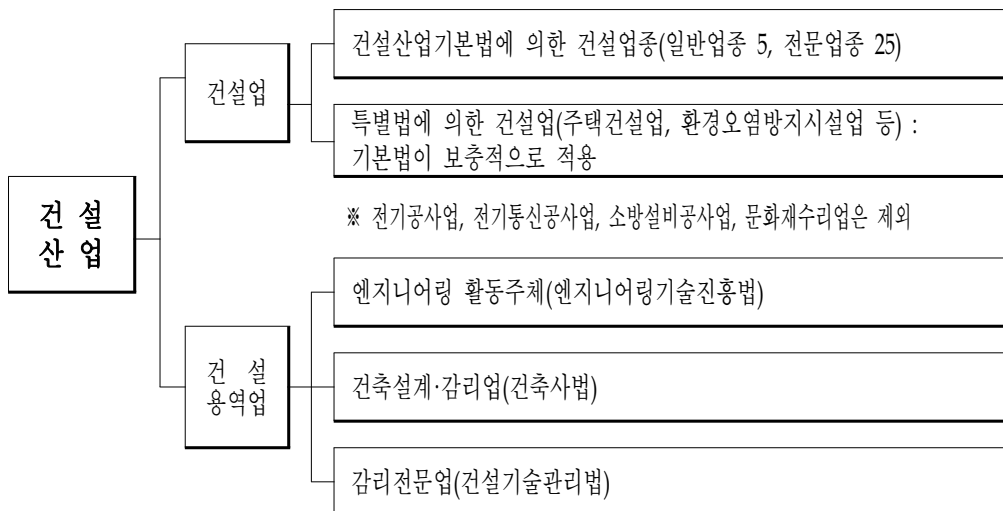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경쟁형태별로 구분하여 계약체결 절차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 계약의 종류 >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경쟁형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사 - 전문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공사 - 문화재공사 - 환경관련공사 등 ○ 물품제조·구매계약 ○ 용역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용역 - 일반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 계약, 단년도계약 ○ 회계연도개시전계약 ○ 단독계약, 공동계약 ○ 종합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가. 계약목적물별 분류

1) 건설공사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
 -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예 : 환경시설의 설계·시공업, 주택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함(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일반건설업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 전문건설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 개인건설업자는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구분	업 종	업 무 내 용
일반건설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도로, 하천, 철도, 댐, 택지조성 등 건축공사 및 부수되는 시설물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수목원, 공원조성 등
전문건설업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8. 지붕판금·건출물조립공사업 9.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13. 철도, 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사도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22. 송강기설치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 24. 난방시공업 25. 시설물유지관리업	인테리어, 칸막이, 목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미장, 방수, 다듬기, 줄눈, 타일, 조적 돌쌓기, 돌붙임, 돌포장, 석재공사 도장, 뽀칠, 차선도색, 경기장바탕 비계, 구조물해체, 파일, 말뚝 창호, 철물, 온실설치 지붕, 판금공사, 건축물조립 철근구조물, 2차선미만도로포장 건물내 기기설비, 무대장치, 냉장 상·하수도기기설비, 옥외용수관 보링, 그라우팅, 착정공사 레일, 침목, 건물목보판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선택층 수중공사, 부표, 항로표지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조경석, 인조목, 파고라, 놀이기구 철구조물 하수급, 육교, 철탑, 수문 교량, 건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 케이블카, 리프트 항만, 운하, 하천준설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설비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점검, 정비, 복구, 개량, 보수, 보강

□ 영업범위제한의 내용

- (가)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 (나)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법 제16조제3항)
- ① 일반건설업자가 전체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②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 ③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부대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4항, 영 제21조 >

- (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 (나)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인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 (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 일반건설업자의 공사 하한 금액

-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임
 - ※ 하한금액 : 당해공사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81억원은 초과할 수 없음

□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 ① 아래의 기준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 ☞ 건설업종별 등록기준 (별표2)

업종구분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기 타
• 토건, 산업설비	12억원	기술계12인	사무실50㎡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자본금기준 상당 금액)
• 토목	7억원	기술계 6인	사무실33㎡	
• 건축	5억원	기술계 5인	사무실33㎡	
• 조경	7억원	기술계 6인	사무실33㎡	
• 전문건설업	2~10억원	기술·기능계 2~5인	사무실20㎡	

□ 등록대상 제외

-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 일반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시설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해당업종등록자가 수행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
 -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님

※ 하도급법상의 건설하도급거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는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은 하도급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하도급 제한

○ 일괄하도급의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영 제31조)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주요 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조정하면서

①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②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2인이상의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전문공사의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영 제32조)

- 도급받은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경우를 포함

- 전문공사의 하도급 예외

①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②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

- 감리자에게 통지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제한(법 제29조제3항)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재하도급의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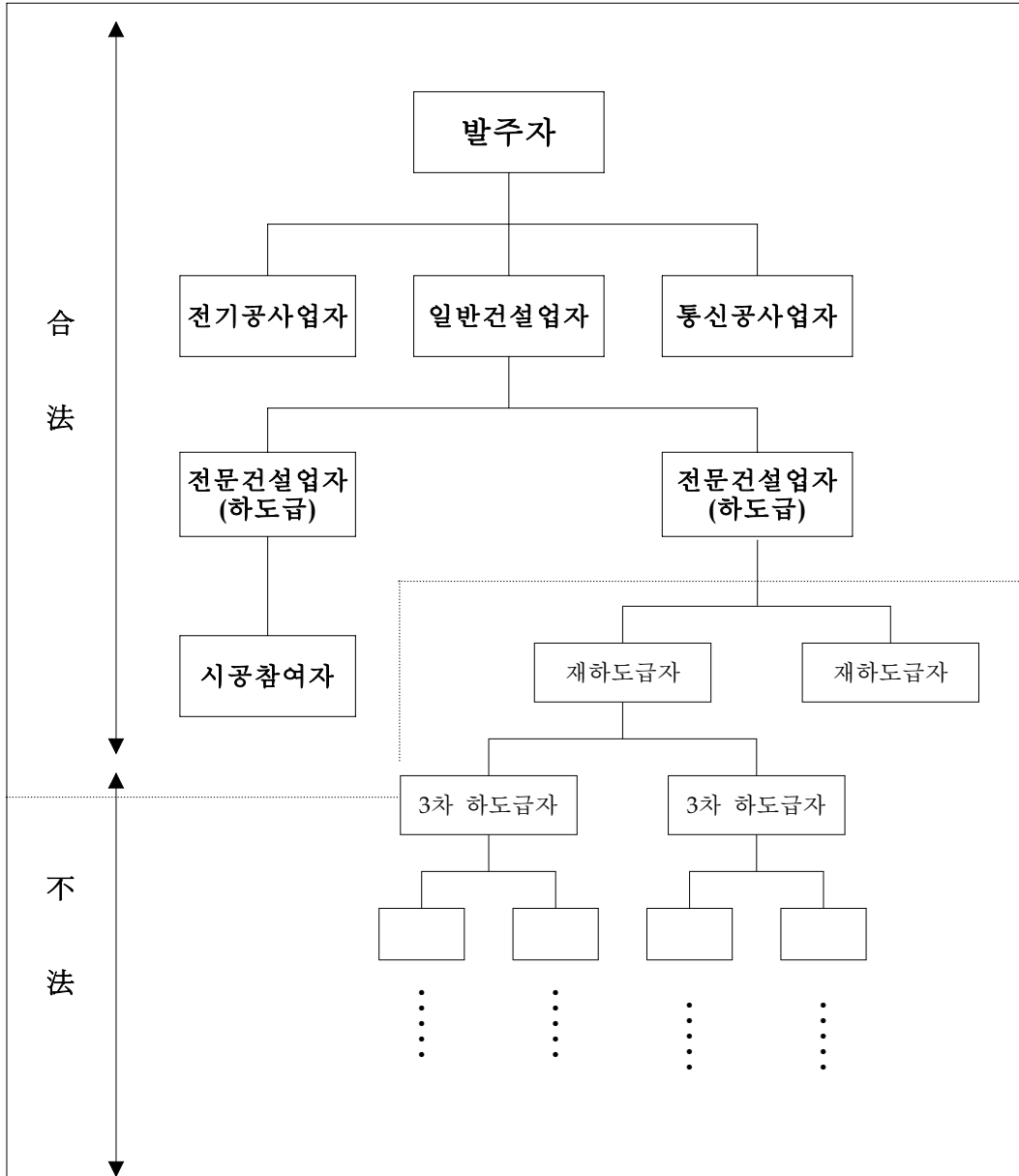
-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 재하도급 제한의 예외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음

• 하수급인과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한 자로서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자

<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원·하도급 구조 >



2)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 하도급대금 지급(법 제34조)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및 방법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의 규모 : 4개월간 시공할 하도급공사의 금액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규모 :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예외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어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보증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①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평가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 ② 수급인이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결과가 고시하는 기준이상 등급의 경우

- ③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인은 선금급을 받은 때 그가 받은 선금급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급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34조제3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명백히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①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 ② 공사에정가격의 100분의 88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한 공사
-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제도

- 수급인은 공사 시공시 하도급부분의 공법 및 공정 등에 관하여 사전 하수급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법 제33조)
- 수급인이 하도급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증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해야 함. 또한 공사금액 감소시 이에 준하여 감액(법 제36조)
-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때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함(법 제37조)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8조)
-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동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하도급에 따른 발주자의 권리보호 규정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변경 요구하여야 함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음
-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법 제32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음.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동일
-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간주함(법 제32조)
-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권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제4항)

3) 전기공사

□ 전기공사 시공자격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전기공사법 제3조)
-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로서 공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공에 참여할 수 있음.
 - 꽃음접속기, 소켓, 로우젯,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공사
 - 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교환공사
 - 벨, 인터폰, 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시설 소형변압기(2차측전압 36V 이하) 설치 및 2차측공사
 -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 내는 공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꽃음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KW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단,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공사)
- 국가·자치단체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는 직접 시공할 수 있음
 -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 보수공사
- 재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기관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통지를 받은 발주청 및 수급인은 당해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자 또는 재하도급자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함

□ 분리발주 의무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함. 다만,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 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발주가 가능

□ 하도급의 제한

- 전기공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됨. 다만,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하도급하거나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함
- 하도급자는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됨.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 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공사업자가 납품한 전지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가능함
- 원도급자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시공관리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해야 하며, 그 구분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시 공 관 리 자
특급·고급 전기공사기술자	모든 전기공사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사용전압이 10만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사용전압이 1천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해야 함
-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매년 7월 31일까지 시공능력을 공시해야 하며, 시공능력은 1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수급금액을 말함

4) 정보통신관련 계약 : 정보통신공사법

(가) 공사(정보통신공사법 제2조, 영 제2조 별표1)

- 대상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
 - 통신설비 공사 : 통신선로설비,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설비, 이동통신설비, 위성통신설비, 고정무선통신
 - 방송설비 공사 : 방송국설비, 방송전송선로

- 정보설비 공사 : 정보제어·보안설비, 정보망설비, 정보매체설비, 항공·
항만통신설비, 선박의통신·항해·어로설비, 철도통신·
신호설비
- 기타설비 공사 : 방송국설비, 방송전송선로
- 공사업 등록(법 제14조, 영 제14조) :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 공사의 제한(법 제3조)
 -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 다만 다음과 같이 경미한 경우는 예외로 도급·시공 가능함
 -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 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경우
 - ▶아래와 같이 경미한 공사의 경우

- 물품제조·구간이 무선국, 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공사
 - 연면적 1000㎡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 방송설비, 구내방송 설비
및 폐쇄회로 TV 설비공사
 -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이하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이하 근거리
통신망(LAN) 선로 증설공사
 -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공사
 - 정통부장관이 공시한 아래 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 무선통신설비의 이전, 변경, 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공사
 - 기타 붙임과 같이 정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

○ 공사의 분리발주(법 제25조)

-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통합 발주가 가능함
 -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는 터널, 댐, 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비상재해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 관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또는 통신구설비공사로 분리하여 발주가 곤란한 경우

○ 하도급의 제한(법 제31조)

- 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다만, 아래의 경우는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
|---|

-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 재하도급은 금지함

- 다만, 하도급금액의 50%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서면승락한 경우 재하도급을 예외적으로 인정
 - ※ 기술상 분리 시공할 수 있는 부분 : 공정별, 구간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함

(나)정보통신 분야 용역

- 용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역무수행
- 용역업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 ※ 정보통신관련 분야 : 정보통신·정보관리·공업계측기·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운용·전자응용 및 철도신호
- 설계 :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비내역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 설계는 설계업자에게 발주해야 함
 - 다만, 경미한 공사,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 및 그 부대공사, 통신구 설비공사,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의 공사로서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감리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해야 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억원미만인 공사
- 철도, 도시철도, 도로, 항만,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 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이 발주자인 경우로서 발주자가 감리원 자격을 갖춘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자체 감리가 가능함

5)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범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영업의 범위가 구분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모든 특정시설공사를 말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된다.

구 분	내 용
기계분야	연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
전기분야	연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

- 하도급의 제한
소방시설공사도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청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발주청은 하도급인을 변경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 검사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하게 되며, 감리대상(연면적 1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시설물은 감리결과 보고로 같음

6) 문화재공사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수리업자
 - 보수단청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보수단청업자로 등록된자.
 - 조경업자 : 일반조경공사업, 전문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을 한자.
 - 실측·설계업자 :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업신고자
 - 실측·감리업자 :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한 자
 -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박제업자 등록자
- 계약담당공무원은 문화재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문화재수리업자 해당요건에 맞게 제한해야 함.
- 문화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문화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문화재보호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공사의 특성상 일반공사와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7) 환경관련 시설물 시공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환경과 관련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적인 환경관련 시설물의 설치업자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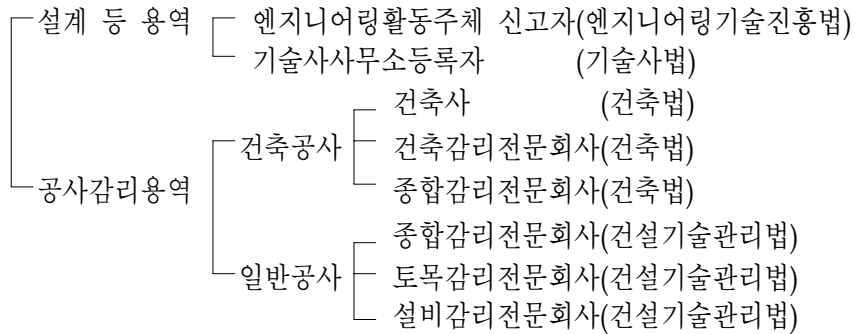
구 분	자 격 요 건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격 요건(폐기물관리법)	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 ② 폐기물 최종처리업 ③ 폐기물 종합처리업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자 (소음·진동규제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설계·시공)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설계)
○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자(오수·분뇨및축산폐수 처리에관한법률)	○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 ○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 정화조의 설계·시공업

8) 용역계약

세출의 원인이 되는 용역계약의 유형은 크게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용역은 설계, 감리, 조사, 연구 등 기술과 관련되는 용역을 말하며, 일반용역은 기술용역외의 용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시설관리·청사 관리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①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



② 건축설계용역(건축법, 건축사업) : 건축사사무소등록자

-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건축설계 제외),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및 안정성 검토,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과 건설공사물자의 구매 및 조달,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공사감리, 시운전, 건설사업감리, 건설기술 타당성 검토, 건설기술정보처리, 건설공사의 견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건설기술용역에서 설계 등의 용역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설계 등 용역목적으로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기술사법 제6조)가 용역업을 수행하며, 설계 등의 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예정용역사업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은 입찰을 하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해야 한다.

○ 용역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 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선정하며,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은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책임감리용역**

- 건설공사의 전면 책임감리대상용역은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100m 교량 포함 공사, 공항, 댐, 고속도로,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폐기물처리, 폐수종말처리, 상수도, 하수관거, 관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송전·배전시설, 공동주택 등)가 이에 해당되며 부분책임감리대상용역은 교량, 터널, 배수물,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쓰레기소각로,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공사중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를 부분 책임감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공사는 아래와 같다.

- 문화재 보수공사
- 농어촌정비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당해 기관소속직원이 감독하는 공사
- 공사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공사로 덧씌우기, 준설, 사방, 단순토공사, 농업용 도로공사, 단순하천공사, 창고, 축사건축 등
- 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공사 및 국가기밀관련공사 전문기술을 요하는 방송시설공사, 원자력시설공사

책임감리의 대가지급기준은 감리원 배치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로, 감리원 노임단가기준은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공표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설계·감리 등 용역은 손해배상 보증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다. 이는 설계, 감리용역의 과실로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다.

보증대상은 모든 설계용역과 책임감리용역이 이에 해당되며, 보증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로 하고 있다.

보증서는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까지로 하고 있으며, 책임감리 용역은 용역계약체결시까지 보증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설계·감리 등의 용역업자는 설계, 감리용역의 과실로 인한 발주청 및 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발주청에서는 용역비에 보험가입비를 계상한다.

○ 엔지니어링 활동에 의한 용역

-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평가, 자문, 지도활동, 시설물의 검사, 유지, 보수활동(건설공사 제외)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신고대상은 기술인력 10인이상 엔지니어링 활동영업자, 기업내 엔지니어링 부서로서 기술인력 10인이상인 자를 말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은 사업추진계획을 공고하는데 입찰공고 예정일기준 60일전에 공고를 하게 되며,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는 입찰공고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하게 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과 가격, 분리입찰사업과 과다 경쟁으로 성과품의 부실우려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며,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평가제외사업은 설계시공입찰로 발주한 사업, 수의계약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사업은 평가제외대상 사업이 된다.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협회가 과학 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다.

※ 엔지니어링활동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

기술부문(15)	전 문 분 야(94)
기계부문	1. 기계제작 2. 유체기계 3. 산업기계 4. 공조냉동기계 5. 건설기계 6. 차량 7. 기계공정설계 8. 용접 9. 금형 10. 정밀측정 11. 철도차량
선박부문	1. 조선설계 2. 선체 3. 선박기계
항공, 우주부문	1. 항공기계 2. 항공기관
금속부문	1. 철야금 2. 비철야금 3. 금속재료 4. 표면처리 5. 금속가공
전기, 전자부문	1. 발송배전 2. 전기응용 3. 전기철도 4. 공업계측제어 5. 전자응용 6. 전자계산기 7. 철도신호
통신, 정보처리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전자계산조직응용
화학부문	1. 공업화학 2. 고분자제품 3. 화학장치설비 4. 화학공장설계 5. 세라믹
섬유부문	1. 방사 2. 방적 3. 제포 4. 염색가공 5. 생사 6. 의류
광업자원부문	1. 지하자원개발 2. 탐사 3. 지하자원처리
건설부문	1. 토질 및 기초 2. 토목구조 3. 농어업토목 4. 토목품질시험 5. 항만 및 해안 6. 도로 및 공항 7. 철도 8. 교통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건축구조 12. 건축품질시험 13. 도시계획 14. 조경 15. 건설안전 16. 화학류관리 17. 건축기계설비 18. 건축전기설비 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농림부문	1. 식품 2. 농화학 3. 축산 4. 종자 5. 산림 6. 임산가공
해양, 수산부문	1. 해양 2. 수산양식 3. 어로 4. 수산제조
산업관리부문	1. 공장관리 2. 품질관리 3. 포장 4. 산업위생관리 5. 기계안전 6. 전기안전 7. 화공안전 8. 소방설비 9. 가스
응용이학부문	1. 지구물리 2. 용지질 3. 제품디자인 4. 원자력발전 5. 핵연료 6. 방사선관리 7. 비파괴검사

○ 건축설계용역

건축설계용역이란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서류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서 『건축사』로 정해 놓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다.

-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건축법에서 건축사 업무로 규정한 사항
 -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건축주는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감리하게 해야 한다.

건축공사의 감리는 감리자가 건축사가 되며, 감리대상은 도시지역 및 준 도시지역내의 건축물,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3층이상 또는 200㎡이상 건축물, 기타 건축허가 구역 또는 지역의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건축물 공사의 상주감리대상은 바닥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 5층이상으로서 3,000㎡이상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가 해당되며 상주감리인원은 건축분야는 건축사보 1인이상, 기타분야는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서 예정가격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임

○ 용역등의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개발 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출자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등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음

※ 계약절차

개산가격 결정 ⇒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결정, 공시 및 열람 (입찰공고, 입찰설명서, 수의시담문서) ⇒ 계약이행후에 정산절차, 원가계산기준 등에 따라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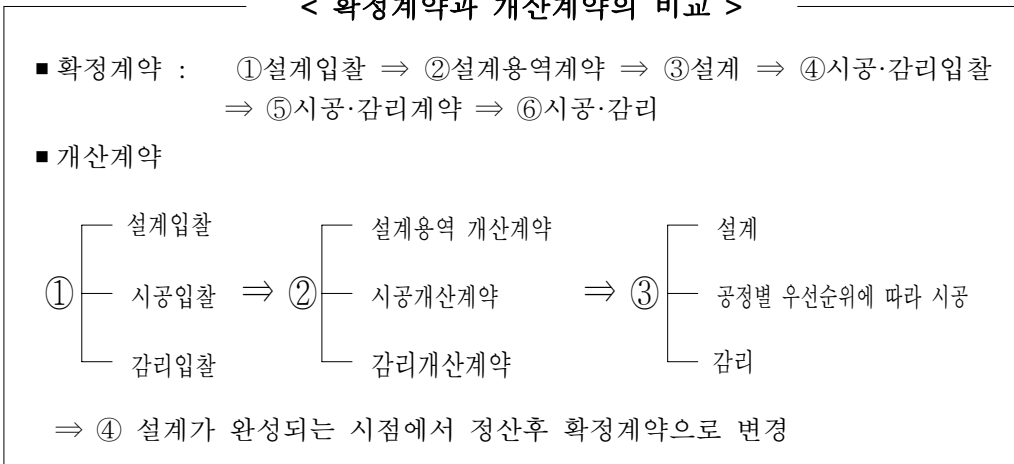
< 유 의 사 항 >

- 개산계약에 있어 계약이행 완료후 정산처리는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함
- 정산을 항목별로 할 것인지,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정해야 함
- 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단가 금액에 낙찰율을 곱함
- 개산금액은 견적금액 등을 참고하여 작성
- 개산계약 체결시 시·군은 시·도에 시·도는 행정자치부에 통보해야 함
- 개산계약이라도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지급을 하되 정산에 따른 감액예산금액에 대한 유보율을 마련, 일정부분 지급 유보

○ 긴급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 설계가 확정되기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
- 정산기준·절차를 입찰공고문에 미리 공개
-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낙찰률을 곱하여 정산을 하고 확정계약으로 전환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 대 상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에 한정(영 제82조)

- 10억원 미만 일반공사(전문·소방·전기공사 등은 6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재해복구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 용역

- ① 도로공사 ②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적석쌓기, 제방축조포함)
 - ③ 상·하수도 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포함)
 - 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 복구 공사
 - ⑤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 ⑥ 제 ①내지 ⑤호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개산예정가격의 작성(영 제8조제3항)

-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

▲ 입찰방법(영 제83조)

-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을 같은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에 부쳐야 함

▲ 원가검토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영 제81조)

- 사후정산을 위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절차**를 **미리 정하고**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낙찰자 결정방법(영 제84조)

- **적격심사**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방법(영 제85조)

- 설계 등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할 수 있음
- 시공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공사를 우선 시공토록 함
- 시공계약 상대방은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당해공사설계자와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 당시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정계약으로 전환**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품목에 대한 금액을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 계약이행 후 동 품목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는 계약

※ 계약이행절차

- ①사후 원가검토 계약대상 품목 결정 ②구매결의 및 입찰유의서에 동 내용 명시 ③입찰 또는 시담전에 참가자에게 주지 ④계약서에 사후 정산기준 명시 ⑤계약이행후 사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음 ⑥대가지급시 일부 유보(10%이내) ⑦사후원가검토 및 감액금액 결정

※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과의 차이점 : 개산계약은 개발시 제품, 시험·조사·연구용역 등 전체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이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만 사후정산

<p><감사사례> 사후원가 정산을 소홀히 하여 물품대금 과다지급</p>
<p>원가계산 수입기관이 계약물품의 일부부품에 대하여 수입확정 후 수입면장에 의하여 가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원가계산을 하였음에도 정산자료 확인 없이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수입면장에 의하여 재확인 결과 4,119만여원 상당 과다지급 됨</p>

□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 공사의 연간단가 계약제도 도입(법 제25조, 영 제22조, 제79조)

- 대상공사 : 신호등 수리, 차선도색, 관로복구, 도로·하천 보수·복구 등
- 공사의 연간단가 계약 절차
 - 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수·수리·복구공사에 대하여 연간 추정물량을 산출(최근 3년간 실적치를 산술평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정가격 산정
 - ② 추정물량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산정**
 - ③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대금정산 절차·기준을 반드시 명시
 - ※ 가능한 공동도급에 의한 경쟁입찰 실시로 발주자의 위험부담 최소화
 - ④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거리, 장비 보유상황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 ⑤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첨부토록 하여 계약체결**
 - ⑥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사후정산 실시**

< 단가계약의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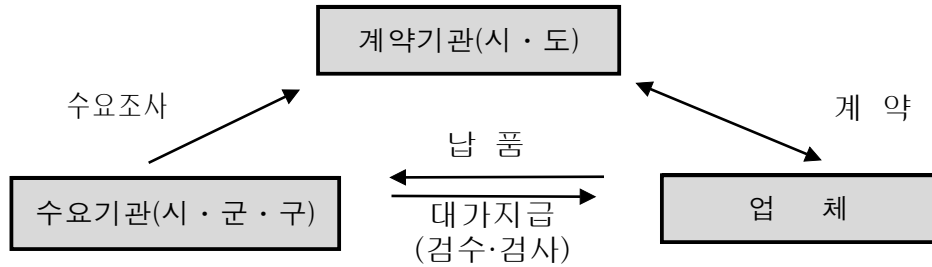
- **계약보증금** : 단가계약에 의하여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 납부해야 함
- **선금지급대상** : 단가계약의 경우 선금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물품에 대하여 지급함
- **연간단가계약** : 당해연도에 사용할 예정수량에 대하여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일정분 납부 요구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조달청이 물품별로 단가입찰을 실시하여 해당연도 단가를 결정하고 지자체는 해당업체에 동일단가로 납품토록 요구

※ 시·도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기능부여(법 제26조, 영 제79조)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도에서 시군구에 대한 **수요조사 후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입찰후 계약체결**
 - ※ 다만, 조달청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은 제외
- 시·군·구에서는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

< 세부절차 >

- 시·군·구 수요물품 파악(시·도) ⇒ 단가입찰·계약(시·도) ⇒ 물품납품 요구(시·군·구) ⇒ 물품납품(사업자) ⇒ 대금 지급(시·군·구)



□ 장기계속계약, 단년도계약, 계속비계약

○ 장기계속계약

-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

○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및 단년도계약 비교 >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확정	확 정	확 정	확 정
총 예산 확보	미확보 (당해년도분 확보)	확 보	확 보
계 약 체 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년도 예산범위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총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연부액 부기)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입찰·계약

※ 장기계속계약의 특징

- (가) 예정가격 :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 기준
- (나) 입찰금액, 입찰보증금 :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 기준
- (다) 산출명세서 : 입찰금액 또는 낙찰금액 기준
- (라) 계약서작성 :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체결. 이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관으로 정해야 함(총공사 부기금액 - 제1차 계약금액)
- (마) 계약금액 : 매년 계약분만 계약금액이 되고,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은 부기함
- (바) 계약보증금과 연대보증인 : 낙찰된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 기준
- (사) 공정표작성 : 이행 연도분만 작성
- (아) 계약금액 조정 : 총공사비, 총제조금액 기준으로 조정
- (자) 선금과 지체상금 : 계약이행연도분 기준으로 지급
- (차) 하자보수보증금 : 매년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것 - 매년
매년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것 - 전체 이행분 기준

질 의 회 신

<질의>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준공처리, 지체상금부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연대보증인의 입보방법은

<답변>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준공처리하여야 하며, 지체상금도 연차별로 산정·부과하는 것이며 선급지급도 계약이행연도를 기준으로 함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매년도 계약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년도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전체공사 완공후에 일괄적으로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매년도 계약 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공사 완공 후에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함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입보된 연대보증인은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가 있으며, 제2차 이후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증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임

□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

○ **단독계약** :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를 말함

○ 공동도급계약

-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제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함

① 분담이행방식과 ②공동이행방식 ③주 계약자 관리방식의 3가지 형태로 구분

※. 건설공사의 『주(主)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법 제29조, 영 제88조)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7개 업종이 포함된 공사만 적용가능

※ 7개 업종 : 철강재 설치·준설·삭도·난방·가스·시설물 유지관리·승강기 설치공사

3. 공동계약의 형태 및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① 구성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 종합조정·관리 ○구성원 분담내용으로 구성
② 대 표 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 이 행 및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1차·구성원,2차·연대보증인)	○구성원 각자 책임 (1차·연대보증인,2차·구성원)	○구성원 각자 책임 (1차·주계약자,2차·연대보증인)
④ 하 도 급	○구성원 전원 동의를 하도급 가능	○각자 책임하에 일부 하도급 가능	○구성원 직접시공 ○주계약자 5%미만 가능
⑤ 실적인정	○금액 출자비율로 산정 ○규모·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 전체실적 ○구성원·분담시공부분
⑥ 적용분야	○하자 불분명 공사에 유리 ○건축, 동일구조물공사 등	○분할 용이한 공사에 유리 ○토목, 면허분담공사 등	○전문분야가 복합된 공사 ○건설공사, 소방공사 등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는 제도
 - ※ 다만, 지역안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 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0%이상이 되도록 입찰공고 해야 함 다만, 지역업체의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 시공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이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시공 비율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 ※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 업체와 지역 업체 이외의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는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음

질 의 회 신

- 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한 것임
- ② 용역물품계약의 경우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한 지
 -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계약은 적용되지 않음

○ 종합계약

- 동일장소에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
예) 지상 및 지하의 구조물 및 매설물 공사
- 예산낭비를 막고,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도입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 임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
예) 차량용 및 난방용 유류단가계약, 업무용전산장비 유지보수, 청사경비용역 계약 등 성질상 중단이 곤란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체결
-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지방계약법시행령 76조)

다. 경쟁형태별 분류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자격을 갖춘 자에게 참여기회 개방
- 정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
-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부적격 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및 부실공사 우려가 있음

2)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임

3)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

4) 수의계약

-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업체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라. 낙찰자 결정방법별 분류

1) 적격심사낙찰제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2) 최저가 낙찰제

-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300억원 이상공사
 - 1.9 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제외)

3) 희망수량경쟁입찰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입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량(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4)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입찰

-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부칠 수 있는 경쟁방법으로서 유사물품별로 별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5) 2단계 경쟁입찰

- 용역입찰의 경우 1단계로 규격(또는 기술) 입찰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심사한 후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서를 제출케 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6)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물품입찰에 있어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2개의 봉투에 각각 넣어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법(규격을 먼저 개봉 한 다음 가격개봉)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과의 차이점>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규격(또는 기술) 적격자가 1인 뿐이라도 낙찰자 결정이 가능하나 2단계 경쟁입찰은 불가능함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안보목적 등이 있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하는 제도

※ 아래와 같은 지식기반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체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4호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용역은 고난도,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사업, 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사업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사업
-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등
- 예술성 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 하는 사업

<절차> : 협상기준(지식기반사업은 행자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및 절차 작성·열람·입찰 공고(입찰공고시 협상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함) → 참가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 교부 → 제안서 제출 → 심사위원회명단작성(정수의 3배수) → 입찰참가자가 심사위원 추천 → 심사위원확정(불참자를 예상115% 확정) → 우선 협상대상자(적격자) 선정 → 협상기준 및 가격작성(견적가격 평균가, 예산·원가금액 등 참고) → 가격 및 조건협상 → 계약체결

※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처리

-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별로 평가한 심사결과는 참가자별로 최고점수자와 최저점수자의 평가결과를 배제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 산술평균(중위평가)

< 협 상 요 령 >

- ① 가격협상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 체결
- ② 조건협상후 가격 협상 : 발주기관이 제출된 제안서의 장점을 종합하여 작성한 최적제안을 제시하여 이에 동의하는 조건하에 가격 협상을 실시
- ③ 조건 동의 및 가격입찰 : 다수의 적격자에게 최적제안을 제시하고 동의하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실시

지식기반사업(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객관적지표 (계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등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주관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등 	60	▪ 심사위원이 평가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 아래

※ 세부평가 기준을 발주자가 정하여 운영하되 각 분야별로 10%범위 내에서 배점을 가감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와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사전협의 해야함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자 모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80)**]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8) 건설기술의 공모에 의한 계약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및 동시행령 제38조의2, 제38조의3의 규정에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가장 뛰어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공모대상 요건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이상 인 경우
- 공모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을 것

※ 공모절차

- ① 공고(사업명, 시행기관, 사업주요내용, 총 예정사업비 및 당해연도사업비, 사업시행시기, 기타 필요사항)
- ② 건설기술자의 능력, 수행실적, 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발주청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

-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업자 선정은 설계의 예술성, 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음

학습정리

- 계약은 크게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과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구분되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예정가격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한자와 계약하는 것이며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 그 종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계약목적물별, 계약의 체결형태별, 경쟁형태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계약담당자는 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계약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 및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계약목적물에 따라서는 공사, 용역, 물품으로 구분되며 공사인 경우 일반건설공사, 전문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 공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용역인 경우 학술연구 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으로 구분되고 있음
- 계약의 체결 형태에 따라서는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 계약, 단년도 계약 / 단독계약, 공동계약 / 종합계약 /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구분되어 있음
- 경쟁 형태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나 경쟁 입찰이나를 우선 구분하고 경쟁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 인지, 제한경쟁입찰인지, 지명경쟁입찰인지를 선택해야 하며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지역제한, 실적제한, 기술제한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함

연습문제

1. 다음중 단년도·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특징을 잘못 기술한 것은?

- ①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모두 총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 ② 장기계속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계속비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고 총액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 ③ 장기계속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고 총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부기한다.
- ④ 단년도계약은 당해연도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찰·계약하는 것이다.

<정답> ① 장기계속계약은 입찰은 총액으로 하나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임

2. 다음중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개념과 가장거리가 먼 것은

- ① 시도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만 가능
- ② 기술용역의 입찰시에도 적용
- ③ 시군구는 금액제한이 없음
- ④ 공동수급체중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

<정답> ② 지역의무공동 도급제도는 공사의 경우만 적용이 가능토록 규정(지방 계약법시행령 제 88조)

3. 다음 중 공사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교통 신호등설치 계약
- ② 건물내 인테리어 계약
- ③ 전기시설물의 설치
- ④ 선박의 제조

<정답> ④ 선박의 제조는 공사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물품제조 계약에 해당됨

용어사전

○ 예정가격(Standard Price)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 기술용역(Engineering Services)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함

예) 건설공사에관한계획, 조사, 설계, 감리, 안전진단 등

○ 산출내역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에 대한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한 내역서를 산출내역서라 하며 5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문화재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법령,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나타난 공사의 업종 구분
-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축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기술사법 등에 나타나 있는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 장기계속계약, 공동도급계약, 공모에 의한 계약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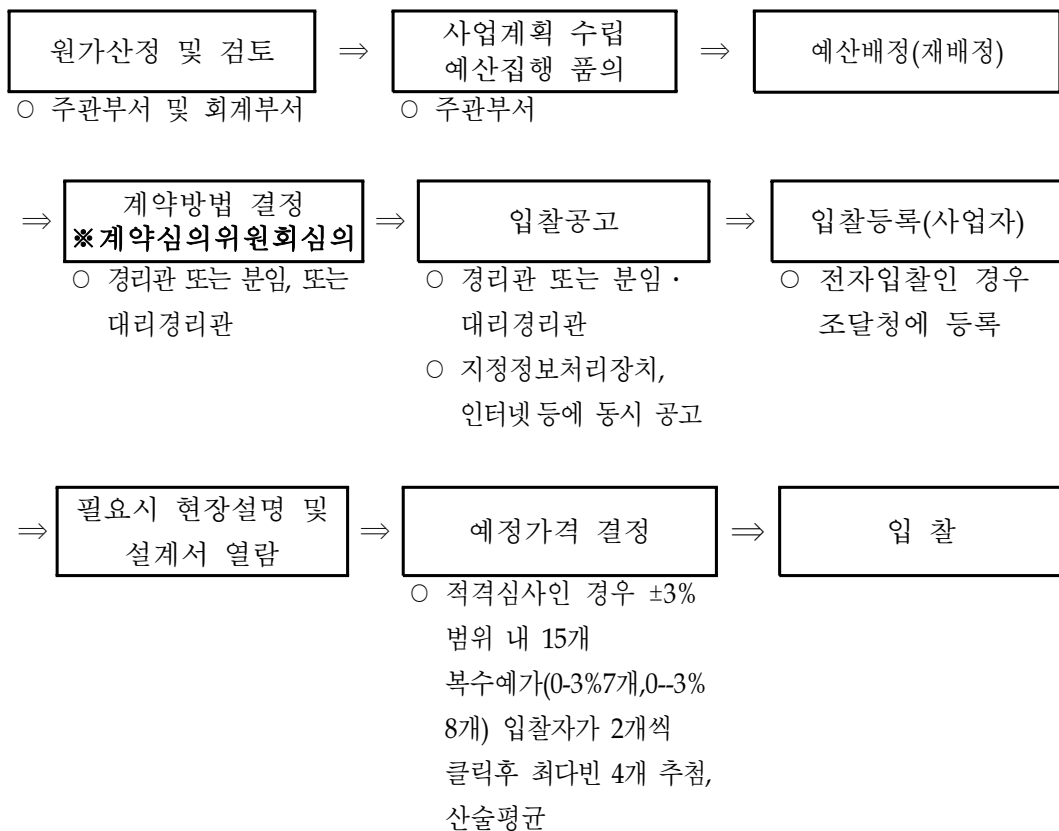
제Ⅲ장 입찰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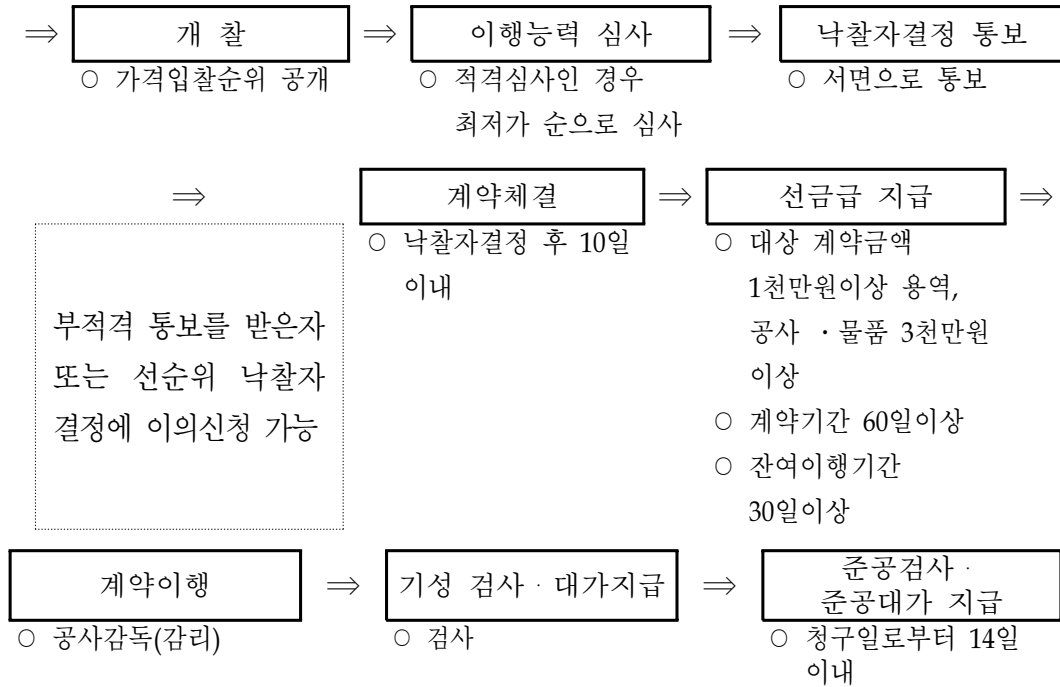
학습목표

- 입찰 및 심사의 절차를 알아본다.
- 입찰공고의 요령 및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학습내용

1. 입찰 및 계약절차 흐름도(적격심사인 경우)





2. 입찰절차별 세부내용

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 제시한 자와 계약
- 대가의 선납이 원칙이며 모두 선납을 받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불필요
- 예산집행품의 매각·임대·판매 등의 계획서 작성

나. 예산집행품의

- 예산집행품이란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의사(계획)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러한 의사결정행위는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니다.
- 예산집행품의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며, 사업계획수립(세부사업계획 수립)도 넓은 의미에서는 예산 집행품의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집행품의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① 공사집행(수선) ② 물품의 구매·제조·수리 ③ 용역의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의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집행내용이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 ②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인지
- ③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④ 집행예정금액은 법령 또는 기준 내의 단가에 의한 산출인지 여부 등

다.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토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원가 검토 의뢰
 - ※ 다만, 공사의 특수성,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자체검토 가능
- 전문기관(대학, 회계법인 등)에 검토의뢰 가능
-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 및 물품, 용역도 자율적으로 검토 가능
- ◆ 원가 검토만 위탁 가능한 기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 해당)
 - 국가·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 원가검토를 하고자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

라. 계약방법의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품의요구가 이송되어 오면 아래 사항을 선택하여 결정하거나 분류해야 한다.

- 계약목적물의 분류
 - ▲ ①공사 ②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③용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계약체결방법
 - 공동도급계약인지 단독계약인지 여부
 - 확정계약인지, 개산계약인지,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인지 여부
 -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여부
 - 종합계약, 회계년도 개시전 계약인지 여부
 - 장기계속계약인지, 계속비계약인지, 단년도계약인지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대상 여부
- 경쟁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방법을 선택 또는 결정 최저가, 적격심사, 희망수량경쟁입찰, 2단계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모에 의한 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여부를 판단

마. 입찰공고

입찰공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입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입찰공고의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현장설명회 장소, 일시,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공사입찰의 경우)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포함)
 14.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 등에 관한 사항
 15.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기타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로서 예를들어 시설공사의 경우 시공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규모, 평가대상 업종, 실적인정 범위, 실적인정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도 입찰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에 명시해야 함

2) 입찰공고일

○ 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PQ심사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는 30일 전)

※ 현장설명일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 " 10억~50억원 미만 :	" 기산하여7일전
└ " 50억원 이상 :	" 15일전

33일전

○ 현장설명일이 없는 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 추정가격 10억~50억 미만 : " 15일전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고시금액 미만 : " 30일전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 " 40일 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 추정가격이 1억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물품 제조·구매·용역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10일전

※ 긴급 및 재공고 입찰의 경우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5일 전까지

3) 입찰공고 방법

경쟁입찰은 반드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함 (지정정보처리장치 : 세출.G2B /세입 온비드)

○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하여야 함.

4) 입찰공고문 정정근거마련 (2007.9.20)

입찰공고내용에 오기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정정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공고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하여야 함.

바. 공사의 현장 설명

1) 현장설명 의무적 참가 및 입찰 무효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
 - ※ 불참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 중 1인(대표자의 위임)만 참가해도 충족

2) 현장설명 참가자격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한 자

사. 입찰 참가자격

1) 경쟁입찰 참가자격

-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 경미한 공사의 입찰(시공)참가자격
 - 일반건설공사는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 1천만원미만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입찰(시공) 참가자격이 있음
- 보안측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적합판정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자

2) 입찰참가 배제

-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불참자
-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현장설명 의무화 대상 불참자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내용에 미달되는 경우
-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면허 등이 취소된 자

아. 입찰참가 신청 ⇒ G2B를 이용하는 경우 조달청에 등록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가) 등록시 구비서류

- 공사
 - ① 등록신청서
 - ②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 ④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함)
 - ⑤ 인감증명서
- 물품의 제조·구매
 - ① 등록신청서
 - ② 관련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④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함)
 - ⑤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사본
 - ⑥ 인감증명서

○ 용역

- ① 등록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③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함)
- ④ 인감증명서

○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아래 사항을 지정정보 처리 장치에 게재하여야 함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 ② 등록에 필요한 서류
- ③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 등록 해야 한다는 뜻

나) 등록시 조치사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등록된 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함.

※ 전자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내용으로 입찰진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2) 입찰수수료 납부(입찰수수료가 없는 자치단체는 납부 제외)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전자입찰인 경우 전자입찰 system에 의하여 납부하나 대부분 각서만 징 구하고 납부면제 처리

4)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 현장설명 참가 의무화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일 기준
 - ※ 예외 : 현장설명일과 입찰등록마감일 사이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5) 대리인의 입찰참가(전자입찰의 경우 제외)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또는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인정

6)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 보증금 납부서(전자입찰인 경우 면제확약서로 대체),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전자입찰은 제외) 사용인감(전자입찰은 별도) 등이 포함.

7) 신청서류 확인조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접수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조사를 할 수 있음

- ※ 신청서류 접수 확인 심사 후 입찰참가자 등록자조서 작성 후 결재를 득하고 계약서류에 첨부

자. 입찰

1) 입찰의 개념

-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
 - ※ 현재는 대부분이 제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G2B를 통한 전자입찰

2) 공사의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구 분	내 역 입 찰	총 액 입 찰
대 상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 내역입찰대상 이외의 공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9항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서 - 산출내역서	- 입찰서
기 타	- 산출내역서에 관련된 입찰무효 사유가 있음 -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됨	- 낙찰자가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까 지 제출 -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배부하여야 함 (설계서에 포함)

3)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가) 재입찰(현장입찰의 경우만 해당됨)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나) 재공고 입찰

- 입찰자가 1인뿐 이거나, 입찰자·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공고 입찰시 최초 입찰시 참가하지 않았어도 추가 참여 가능
-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종전 서류로 대체 가능
날짜를 제외하고는 참가자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새로운 입찰 :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입찰가능
(조건변경가능)

4) 입찰무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미달자 포함)
- 입찰서가 지정시간까지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 한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불참자가 한 입찰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다른 입찰
 -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총액이 다른 입찰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액과 다른 입찰
 - 산출내역서에 주요물량에 대한 산출내역의 누락 또는 변경금액이 예정가격의 5% 이상인 경우
 -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의 정정 날인이 누락된 경우
- 품질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시 품질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 담합자, 타인의 입찰 참가 방해자, 공무집행방해자가 한 입찰
 - 내역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주요물량 누락 또는 변경한 내역서를 첨부한 입찰
 -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한 내역서를 첨부한 입찰 등

학습정리

- 경쟁입찰의 계약 절차는 원가산정 → 원가산정의적정성 검토 → 예산집행품의 → 계약방법의 결정 → 입찰공고 → 입찰등록 → 현장설명 → 예정가격 결정 → 개찰 → 이행능력심사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의 이행 → 검사 → 대가 지급 순서대로 이루어 짐
- 경쟁입찰시에는 입찰공고문의 작성이 정확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자들의 입찰 참가 자격미달여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함
- 공사의 현장설명은 계약담당자가 필요시 하는 것이나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 공사의 현장설명시 불참한 입찰자는 입찰 무효사유가 됨을 고지해야 한다.
-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내역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참가변경등록 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됨으로 입찰무효 여부를 검토해야 함

연습문제

1.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예산집행품의 시 자금배정 여부를 판단하여 자금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의가 불가능하다
- ② 수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예산만 우선 당해 연도분이 편성된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형태가 “장기 계속계약”이다.
- ③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필히 명시해야 한다.
- ④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정답> ① 예산만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집행품의는 가능함

2. 다음 중 입찰공고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는 계약방법 결정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인지 여부
- ②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여부
- ③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대상인지 여부
- ④ 선금지급, 기성금지급, 개산급 지급대상인지 여부

<정답> ④ 선금지급, 기성금지급, 개산급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계약체결 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

용어사전

○ 추정가격

추정가격은 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기준, 적격심사대상 기준,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에 사용됨

○ 추정금액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 등으로 사용함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령 소방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축사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환경관련법령
-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공고)

제Ⅳ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학습목표

-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개념을 이해한다.
- 예정가격의 작성 절차를 알아본다.
- 적격심사시에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절차를 숙지한다.

학습내용

1. 추정가격

가. 의 의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 P.Q심사, 적격심사, 수의계약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전에 예산상의 금액 등과 지방계약법시행령 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나.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 1)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 2)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 3)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 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 추정가격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 >

구 분	입찰방법 등 구분	관 련 규 정
1. 국제입찰 대상	○ 광역자치단체 - 공사 : 222억원이상 - 물품·용역 : 3.0억원이상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입찰대상기관에서 제외됨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2. 공사의 현장설명	○ 100억원이상인 현장설명의 경우 참가가 의무이며,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3일전에 실시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시행령 §14 ⑤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 교부대상 - 공사 : 100억원이상 - 물품·용역 : 3.0억원이상	- 지방계약법시행령 §14①, §16①
4. 내역입찰, 총액입찰	○100억원이상 공사는 내역입찰 실시	- 지방계약법시행령 §14 ⑥
5. P.Q 대상	○ P.Q : 200억원이상 공사중 18개공종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23
6. 수의계약 대상	○ 공사 :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이하 ○ 물품·용역 : 3천만원이하	- 지방계약법시행령 §26① 제5호
7.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 1.9억원미만 물품, 300억원 이상공사 ※물품의 경우 1.0억미만도 적격심사 가능 ○ 적격심사 대상 - 공사 : 1억원초과 - 용역 : 3천만원초과 - 물품 : 1.9 억원이상	- 지방계약법시행령 §42

질 의 회 신

<질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 바,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2. 예정가격

가. 의 의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에 앞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

나.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1) 예정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 2)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3)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의 결정은 당해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 4)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5)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 작성절차

-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가격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예정가격의 결정시 세액합산 등

- 1)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할 원재료의 매입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다. 예정가격산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예정가격의 비치

- 1)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 1)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괄입찰은 의무사항임
 - 가) 시행령 제2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나) 시행령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임차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다)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라)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마) 시행령 제9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경우(의무규정)
- 2)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국제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나)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다)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라)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마)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사)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아.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감사지적 사례

○○에서 의약품구매를 위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면서, 2인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견적가격을 직접조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도 1개회사(□□실업주식회사)에게만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견적을 요구받은 업체가 자사의 견적서 외에 (주) ○○약품의 견적서 용지를 인쇄하여 그 용지에 자사의 견적보다 높은 가격을 임의로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위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로부터 6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계 5,235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부당하게 구입함

3.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가. 기초금액 작성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초금액의 확정

1.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2. 기초금액이 가감조정 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산정(소액수의계약과 적격심사에서만 적용)

가.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내에서 7개, 0%~-3% 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나.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 1)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천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 2) 추천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천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3)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천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다.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공무원은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5. 감정가격·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가.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 2)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 1백만원이하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나.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 1)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 2)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1) 거래실례가격의 개념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바 그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2)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지)
- (2)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지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3)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하여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단가산출표, 일위대가표 등의 물품 산출기초가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사급자재 등에 대한 물품은 원가계산요소가 되므로 직접재료비로 분류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되어야 한다.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가. 원가계산의 개념

1) 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의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노무비 단가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나. 제조원가 계산

1) 제조원가 :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조원가계산서 >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작업설치부산물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 비	전수검수특기연시지보복보외산소여세폐도지	역도반가리허술구험급협리관주업모·교과물인수법			
			력광비상수권료개검임료후비가안품·과물인수법			
			비광비상수권료개검임료후비가안품·과물인수법			
			열각선사발사차생공전보건관리비			
비비용료비비료						
비비료						
비생비						
비공전보건관리비						
비통신비						
비통신비						
소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3) 제조원가의 구성

가) 재료비

(1) 직접재료비

- ①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②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등

(2) 간접재료비

- ①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②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
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
비품의 가치
- ③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나) 노무비

(1)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① 기본급, ② 제수당, ③ 상여금, ④ 퇴직급여충당금

(2) 간접노무비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경비

(1) 경비의 산출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 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2) 경비의 세비목

① 전력비, 수도광열비, ② 운반비, ③ 감가상각비, ④ 수리수선비, ⑤ 특허권 사용료, ⑥ 기술료, ⑦ 연구개발비, ⑧ 시험검사비, ⑨ 지급임차료, ⑩ 보험료, ⑪ 복리후생비, ⑫ 보관비, ⑬ 외주가공비, 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⑮ 소모품비, ⑯ 여비·교통비·통신비, ⑰ 세금 및 공과금, ⑱ 폐기물처리비, ⑲ 도서 인쇄비, ⑳ 지급수수료, ㉑ 기타 법정경비

4)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장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의 계상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아래와 같고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업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5)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영리사업으로 보아 목적사업으로 보지 않음)

다. 공사원가 계산

- 1) 공사원가 :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2) 작성방법 :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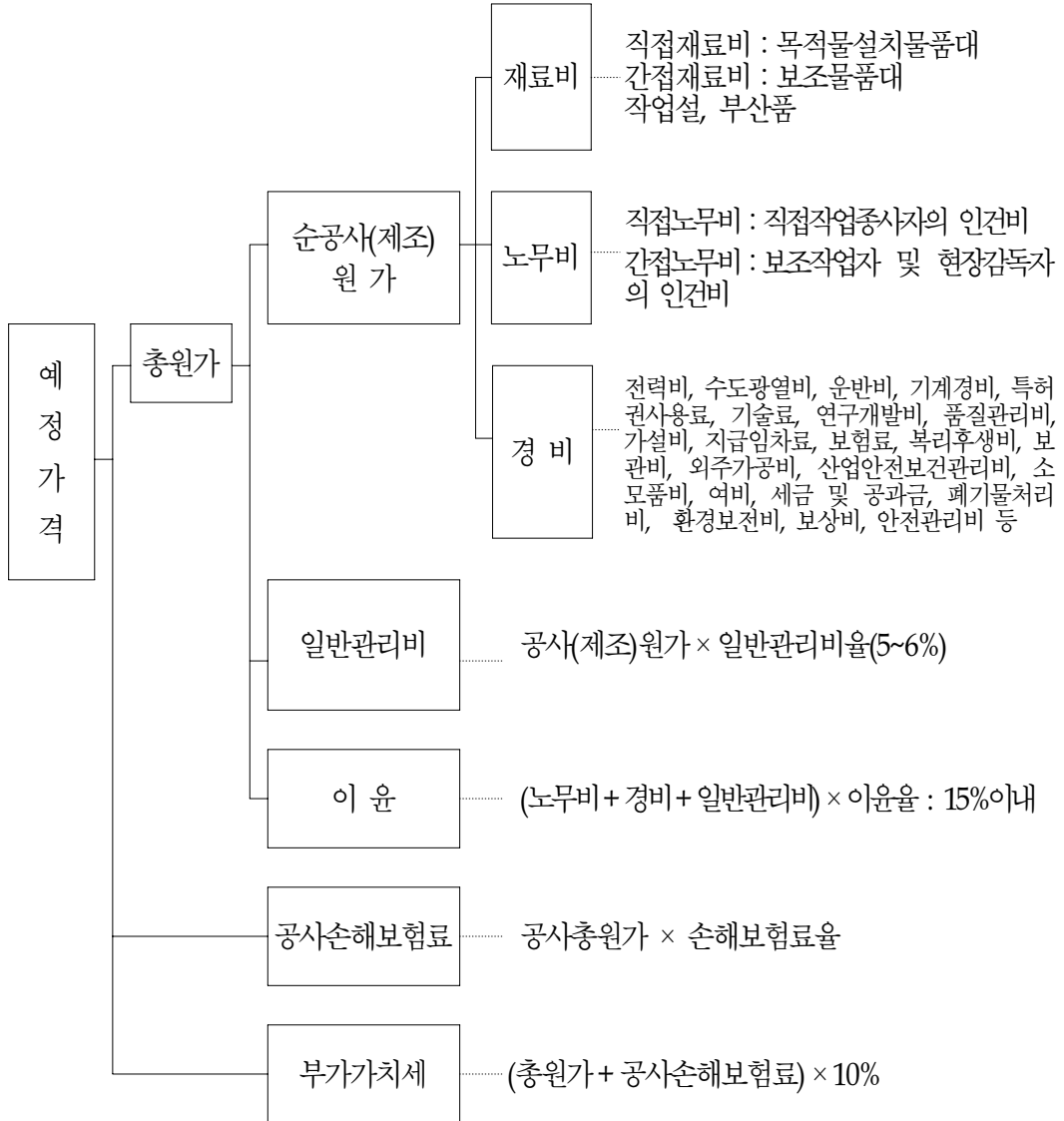
< 공사원가계산서 >

공사명 :

공사기간 :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순공사원가비	전력비				
	수도비				
경비	운반기계특기연품가지보복보외산소여폐도지환보안건기	열비 경비 권사 용 료 개발비 관리비 임차료 료후생비 가공전보 건 관 리 비 품비 교통공과 물 처 리 비 인쇄비 수전비 상관리비 전관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법정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3) 공사원가의 구성체계



가) 재료비

(1)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을 말한다.

- ①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②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 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등

(2)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을 말한다.

- ①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②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③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나) 노무비

- (1) 제조원가의 노무비 내용을 준용한다.

(2) 공사에 있어서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① 직접계상 방법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② 비율분석 방법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공 식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14.5	
	토 목 공 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 사 규 모 별	5억원 미만	14	
	5~3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14.5%) / 3 = 15.5%

다) 경비

(1)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① 전력비, 수도광열비, ② 운반비, ③ 기계경비, ④ 특허권사용료, ⑤ 기술료, ⑥ 연구개발비, ⑦ 품질관리비, ⑧ 가설비, ⑨ 지급임차료, ⑩보험료, ⑪ 복리후생비, ⑫ 보관비, ⑬ 외주가공비, 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⑮ 소모품비, ⑯ 여비·교통비·통신비, ⑰ 세금 및 공과금, ⑱ 폐기물처리비, ⑲ 도서인쇄비, ⑳ 지급수수료, ㉑ 환경보전비, ㉒ 보상비, ㉓ 안전관리비, 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㉕ 기타 법정경비

4) 일반관리비의 산정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내용과 같고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5)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6)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 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text{공사손해보험료} = \text{공사총원가} \times \text{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라. 학술용역원가계산

1) 학술연구용역의 종류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용어의 정의

- 가)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나)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라)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학술용어의 원가구성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가) 원가작성 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원 가				

나) 인건비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 경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라) 일반관리비의 계상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마) 이윤

- ①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②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부 공고)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 공사원가계산 예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조달청)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환경부 고시)
- 공무원여비 규정(대통령령 제18673호)
- 시중노임단가 기준
 - 공사부분노임단가 기준(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단가 기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3)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 고용보험료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8)목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
- 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환경보전비

-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및 별표 15(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1)목

● 품질관리비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7)목
-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2-5 제3호 (3)목
-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4)목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5, 동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4)목

● 공사손해보험료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9

제V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

학습목표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임무, 역할 등에 대하여 살펴보자
-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의미, 역할, 법률적 효력, 분쟁조정 대상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자

학습내용

1.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법 제32조)

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사항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심의범위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학술연구용역을 특정인에게 수의계약하는 등)

▪ 심의대상 금액

- 시·도 :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10억이상 물품·용역)
- 시·군·구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5억원이상 물품·용역)

※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 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금액제한 없이 모두 심의

나.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당해 자치단체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당연직으로 됨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위촉대상 위원이 됨

- 대학의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
- 변호사로서 관련분야 경험·지식이 있는 자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 관련협회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 시·도지사가 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인력풀(Pool) 명부를 시·군·구에 제공가능
-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 구성·심의 가능
 -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성을 갖춘 자로 지명

다. 운영(소위원회 포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대상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 행자부의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영 제110조 및 제1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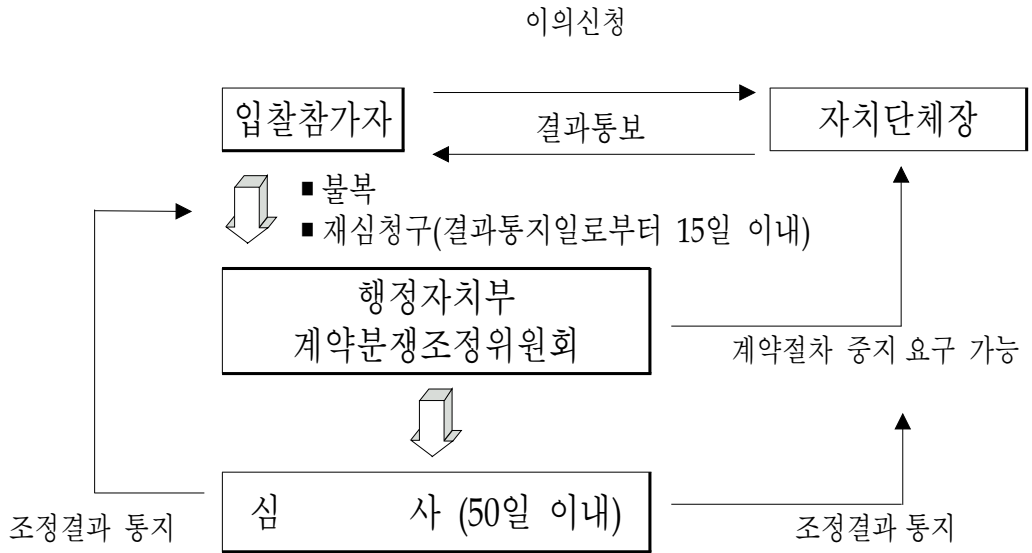
가. 확대내용

종 전(2005이전)	현 행(국내입찰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울산 제외) 발주계약 중 공사 222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3.0억원 이상 - 시·군·구 는 조정대상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사 : 70억원 이상 - 전문공사 : 7억원 이상 - 물품·용역 : 3.0억원 이상 ※시·군·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수 : 15인 이내(14명 위촉) - 위원장 : 행정자치부 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수 : 15인 이내 - 위원장 : 지방재정세제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 운영 가능

나. 조정대상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다. 조정절차 : 조정결과 이의가 없으면 합의로 간주



제VI장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학습목표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특징과 개념을 파악하고 각 계약 방법별로 법령상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숙지한다.
- 각 경쟁계약 방법별로 사례를 찾아보고 계약방법이 적정한지를 살펴본다.

학습내용

1. 일반경쟁계약

가. 의 의

일반경쟁계약이라 함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시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제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낙찰자라고 한다),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나.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일반경쟁입찰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실업자가 참가하여 입찰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소한 제한

1)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법정자격 요건을 갖출 것

나)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건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을 것

2. 제한경쟁계약

가. 의 의

제한경쟁계약이란, 일정한 지역,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계약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경쟁과 지명경쟁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며, 실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편임

나. 제한의 유형 및 형태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①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 일반공사 이외의 공사 ■ 추정가격 30억원(3억원) 미만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당해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0.7배 이내) · 가능한 규모 또는 물량으로 제한
	물품·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②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1>의 30개 공사 참조 <별표 1> 참조
	물품·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 	
③시공 능력 공시역으로 제한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 일반공사 이외의 공사 	

제한의 종류	계약 목적물	제한요건	비고
④지역제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사 :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추정가격 6억원 미만 ■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물품·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에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9억원 미만 ■ 안전진단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⑤설비로 제한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경쟁기준을 정하고 등록한 그 사업자로 제한 	
⑦물품의 납품능력	물품의 제조 및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능력 요구 	
⑧중소기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한
⑨재무상태	공사·용역 및 물품·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의 상태가 있는자의 배제 	

※ ④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제한의 기본원칙

- ①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동일실적	②기술의 보유상황	③시공능력(도급한도액) 제한	④지역제한
⑤설비제한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⑦물품의 납품능력	
⑧중소기업자	⑨재무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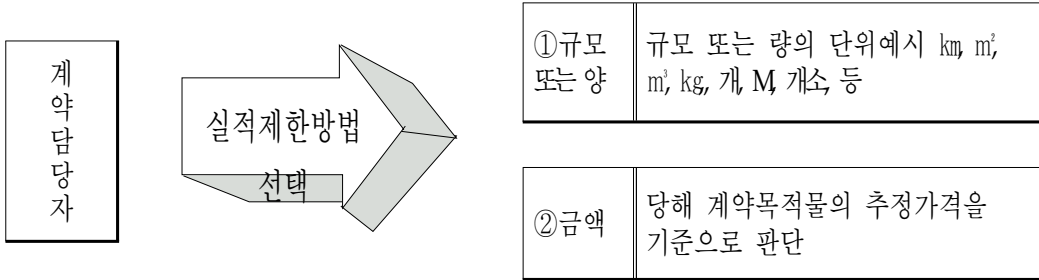
< 예 외 >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제한경쟁입찰은 ④의 지역제한과 ①의 실적제한 또는 ④의 지역제한과 ②의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④의 지역제한과 ⑧중소기업자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라.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 ①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 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한다.
- ② 지역제한이외의 제한기준일
 - 현장 설명을 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10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장 설명일이 기준일이 된다.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 또는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로 한다.

마. 제한요령

- 실적제한



- ① 시설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또는 량에 의한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량)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②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 또는 량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법령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공시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 ④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이 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⑤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 및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I 에 의한다.
- ⑥ 용역·물품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금액)를 정한다.

- 운용요령

- 공사의 실적제한은 당해공사 규모의 **1/3 기준으로 제한**하는 원칙 제시
 - ※ 다만, 특성상 필요시에는 가감조정 가능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에 의한 제한경쟁요령 제시
 - 신기술포함 공사설계 전에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협의**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등 대책 강구

바.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공사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당해공사의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 발주(사업)부서에서는 공사시공에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 후 설계를 해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신기술 및 특허개발자와 사전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발주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아 래 >

-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시공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3) 물품의 납품능력에 의한 제한

발주부서는 물품의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협의하고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일부 포함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 후 규격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해서는 아니되는 사항

가. 입찰 참가요건을 대표자의 본적,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당해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수(예시 :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다.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당해지역 전문업체에게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도록 하고, 자재납품업체까지도 당해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② 실적제한시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례

③ 당해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 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④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

예시) ▪ 하수관거공사 발주시 택지조성공사 및 경지정리공사와 관련된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발주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조성공사 실적을 제외하는 사례

⑤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실적만 인정하고 다른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발주공사, 민자 또는 민간발주공사, 해외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⑥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됨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⑦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⑧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⑨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 ⑩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 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⑪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용역이 당해용역의 주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감리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 시공능력 공시액에 의한 제한

-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 공시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 ②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도급한도액이 당해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

3. 지명경쟁계약

가. 의 의

- 1) 지명경쟁계약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임
- 2) 이 방법은 절차가 간소하고 능력있는 자 만을 참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인을 정실 지명하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음

나. 지명경쟁계약의 대상

-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 보유자가 아니면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2) 추정가격이 3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
-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
- 5) 공하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에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의한 규격표시 인증제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 나목의 제품 또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품질경영 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 7)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9) 보수 복구 및 수리등의 공사를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지명기준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를 지명하여야 함.

1) 공사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지명하고,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유자를 지명하여야 함. 이때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하여야 함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 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자를 지명할 수 있음

2) 물품제조·구매 기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

라. 지명 및 통지절차

- 1) 5인 이상을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야 함
- 2) 지명경쟁참가 적격자에게는 통지를 하고 입찰참가승낙서를 받아 참가여부를 확인
- 3) 지명기준을 명백히 하고 대상자로부터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수하여 비치하여야 함

감사지적 사례

- 일반경쟁계약으로 할 것을 부당 지명경쟁계약
홍보용 영화와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면서 해당업자가 78명이나 됨에도 10인 이내로 인정하여 지명경쟁계약

마. 지명경쟁계약 체결시 보고서식(당해 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

- 1) 계약의 목적
- 2) 품명, 규격, 수량, 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 적용사유
- 4) 지명대상자의 주소, 성명, 업체현황
- 5) 기타 참고사항

4. 수의계약

가. 의 의

수의계약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함. 이 방법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용됨

이 방법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의 생략으로 행정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음

나.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은 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함 다만 단체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조합원만 자격요건이 있으면 계약 가능

다.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와 영업정지 중인자 또는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 하여서는 아니 됨.

라. 수의계약의 유형

유 형 구 분	주 요 내 용
①소액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일반공사, 1억원이하인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 용역·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추정가격이 3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
②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억원초과 일반공사, 1억원초과 전문공사, 8천만원초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5천만원 (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추정가격이 3천만원)초과 물품·용역으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③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 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 공법 등에 대한 수의 계약	④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의 수의계약으로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④1인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	①, ③의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마. 수의계약 대상자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1) 소액수의계약

구 분		공 사			용역·물품·기타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은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나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은 1천만원 이하

가) 소액수의계약 요령

(1)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VI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나라장터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② 계약담당자는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 ㉔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 ㉕ 광역시 내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 ㉖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인접시군(인접시군 중 일부 인접시군만 제한 가능)
 - ㉗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인접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 자치구)
 - ㉘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시도(인접시·도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 ③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이하 “안내공고일”이라 한다)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음.
- ㉔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당해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㉕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당해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내에서 당해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 ㉠ 시공실적
 - ㉡ 규격
 - ㉢ 재질 또는 품질
 - ㉣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 ㉤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 ㉥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⑤ V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음.
- ⑥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에 의함.
- ⑦ 제①의 소액수의계약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 금액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단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1천만원 미만)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⑧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시도로 견적제출공고하였으나 견적제출자가 1인뿐 이거나 없는 경우 수기로 2인이상 견적을받아 계약가능

결격사유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발주기관에서 자격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자
-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금액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또는 1천만원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 3건 이상인 자

- ⑨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 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⑩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⑪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금액은 잔여 이행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최근 계약한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아래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① 계약체결 요청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수의계약 요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당해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 ④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2)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가) 공 사

① 대상

- ㉠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거나 없는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한다.
- 예정가격의 작성은 행정자치부 예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 요령”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에 의한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최고가격)을 제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이 경우 견적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특허 공법 등 공사

가) 대상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 대상 공사
①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동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하수도접합, 조정, 토공, 준설 및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이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연대보증시공,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②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③ 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예정금액의 2분의1미만인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공사가 전차 공사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고 2억 이상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이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연대보증시공,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④ 특허 공법 등에 의한 공사, 신기술 또는 새로운 전력기술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나) 계약 배제대상

-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기간중에 있는자
- 부도, 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일 : 수의계약요청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과장	(인)
일반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급	신용평가	점수
	시공능력 공시액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3배 이상		8.0점
			2배 이상		7.2점
			1.5배 이상		6.4점
			1.5배 미만		5.6점
	시여유율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중인 관급공사 ▪ 진행중인 관급공사 ▪ 진행중인 관급공사 ▪ 진행중인 관급공사 	1건 이하		8.0점
			2건		7.2점
3건				6.4점	
4건이상				5.6점	
경영상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150% 이상	AA 이상	8.0점	
		120% 이상	A+ 이상	7.2점	
		100% 이상	BBB 이상	6.4점	
		70% 이상	B- 이상	5.6점	
		70% 미만	CCC+이상	4.8점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1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등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 지방계약법령 또는 다른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무		3점	
		유		△3점	
		무		3점	
유		△3점			
기술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하차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2×70%= 점수
		㉡하차보수보증기간	(전차하차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 ×100= %		
	②혼잡	㉢시간적 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 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③마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 공사추정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액)×100= %		(㉤+㉥)/2×70%= 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금차부대시설공사추정금액/시공중(기시공포함)인공사계약금액)×100= %		
④특허 공법 등	㉦독점적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70%=점수	
평가결과	일반사항	점	경쟁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합계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라) 평가결과 반영

-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우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 소숫점이 있는 경우 전체 항목점수 합산후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 공시액

-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 공시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자가 시공하고자 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공시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시공능력 공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시공능력 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나) 시공여유율

- 관급공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법인)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그 사업자가 시공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계약금액) 3억원(전문 7천만원, 전기·소방·기타는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 시공중인 관급공사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되,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 시공중인 관급공사라 함은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 경영상태 업종별 업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안내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한 신용평가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기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과징금 처분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 기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 공사규모 대비시의 전차공사는 하자 또는 혼잡도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전차공사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규모는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공사수탁비 등)를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의계약 사유가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공사전차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시공능력 공시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산정한다.
-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p>①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미만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4)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가) 수의계약 대상

- ① 천재지변, 작전상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가격의 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②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응급복구 또는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자재구입, 물품, 의약품구입,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시설물 붕괴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등
- ④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 ⑤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⑥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포함)또는 정비하는 경우
- ⑦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⑧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⑨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 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 ⑪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등을 위한 용역 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⑫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하는 경우
- ⑬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⑭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자와 그 사업장을 보유한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⑮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 ⑯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

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 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⑱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직접 구매·제조하는 경우
- ⑲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⑳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㉑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㉒ 해외시장의 개척이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㉓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 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㉕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주무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 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 ㉖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㉗.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하는 경우
- ㉙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㉚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㉛ 장애인 복지법 제 44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③②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③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③④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 포함) 또는 정비하는 경우
- ③⑤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나) 세부평가 방법

- ①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 ②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 한다
- ③ 계약상대자의 자격유무 판단
 -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인가·허가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요건이 없는자는 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 계약상대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중이거나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경우에도 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5) 수의계약 공개요령

가) 공통사항

-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 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나) 대상사업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수의계약내역 공개 제외

- 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 일반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공사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및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 ②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 소액 수의 계약 중 수기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음식물(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 버스임차(숙식 포함가능)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㉔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 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㉕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㉖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1인 견적제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㉗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인 이상 추천하는 추정가격 2천 만원 미만인 경우
- ㉘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7)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제Ⅶ장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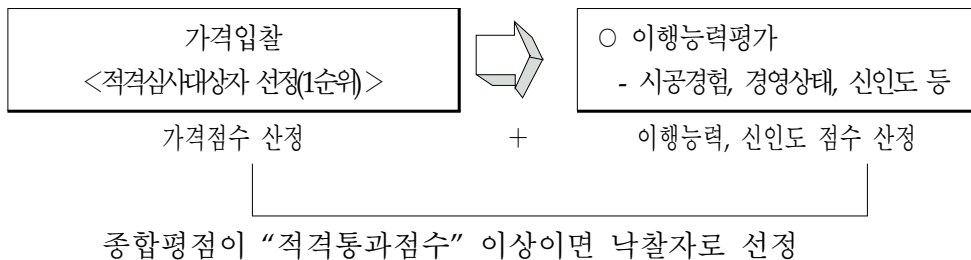
학습목표

-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적격심사제도의 개념 및 내용을 이해한다.
- 적격심사의 절차,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가격입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학습내용

1. 적격심사제도 개념

- 적격심사낙찰제이란 낙찰자결정시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요소인 계약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낙찰자 결정방법임



2. 적격심사 범위 및 적용대상

가. 적용범위

-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초과인 공사(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8천만원 초과인 공사)
- 물품 : 추정가격 1.9억원 이상인 물품구매·제조·수리
- 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되는 용역(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추정가격이 3천만원)

나.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 일괄입찰, 대안입찰, 300억원 이상공사, 건설기술공모(발주자 선택사항) 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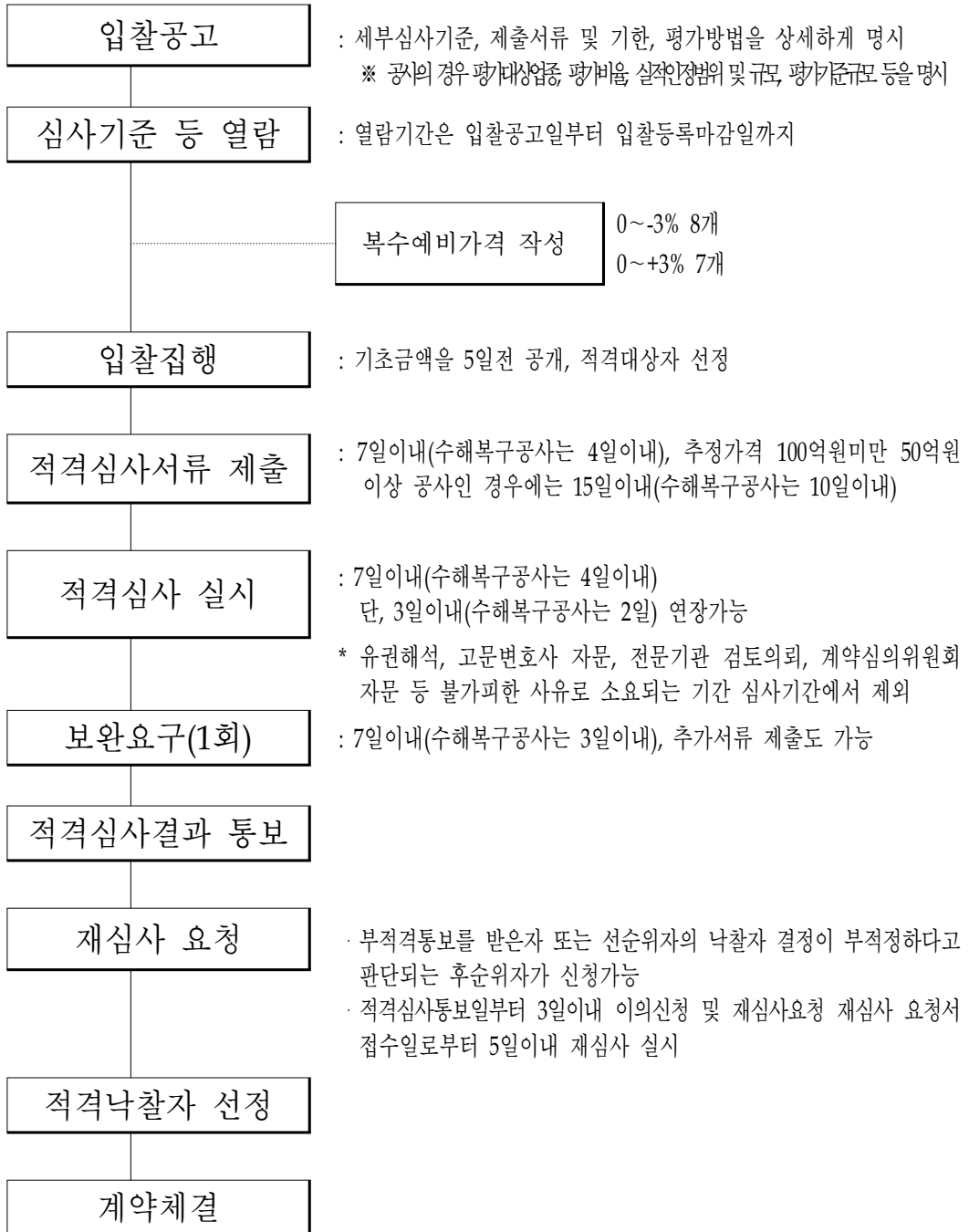
다. 적격심사 비적용 대상

- 300억원 이상 공사와 추정가격 1.9억원 미만 물품은 최저가입찰(중소기업 자간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
- 물품·용역의 경우에 공모(건설기술용역)에 의한 낙찰자결정,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 2단계경쟁입찰, 희망수량경쟁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종합낙찰제,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 등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가능
- ※ 다만 지식기반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계약 체결대상임

3. 심사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 입찰공고에 계약목적 내용에 따라 적격심사기준, 실적인정규모, 평가 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 업종별 평가비율, 서류제출기한 등을 명시
- 개찰 후에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
- ※ 낙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선순위 업체는 서류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자동 탈락을 고지
-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에 따라 종합평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서대로 심사
- 선순위 낙찰자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부적격 통보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업체는 3일 이내 재심 요구 가능, 5일 이내에 재심 실시

4. 적격심사 절차



질의 회신

<질의>

- 00도에서 발주한 00시설공사 적격심사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 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2호)제8조 제3항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 질의사항과 같이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적격심사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당해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 회신

<질의>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02. 11. 26일 입찰공고하고 동년 12. 3일 입찰을 실시한 시설공사에 있어 적격심사 **1순위자**로 선정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명의변경(등본상 11.21.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입찰 유효·무효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등록마감일(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일)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가 입찰을 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대표자 명의로 입찰하였다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무효인 입찰에 해당됨

질의 회신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하여 개찰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은 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입찰 진행절차는?

<답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있고, 입찰가격의 평가는 각 평가기준별 가격평점 산식에 의거 낙찰하한율이 결정되며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통보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 질의사항과 같이 낙찰자 결정 이전에 가격평점산식(낙찰하한율)의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격평점산식(낙찰하한율)을 재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적격심사의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도한 제한의 금지
사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민간실적, 해외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사례, 1개의 면허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면허로 제한하는 경우 등
- 법령, 규칙, 예규를 준수하여 입찰공고
- 법령, 규칙, 예규 등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자기모순되는 입찰공고를 해서는 안 됨
 - 공고내용과 현장설명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공고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 등의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시공실적제한공사의 경우 평가대상업종,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실적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평가대상업종, 평가대상업종별 실적평가 비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 ※ 기술용역의 경우 실적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여부를 입찰공고시 명시해야 함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0~+3%는 7개, 0~-3%는 8개를 작성
- 입찰참가자가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천하여 산술평균
 - ※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클릭)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함
- 기초금액은 입찰집행 5일전까지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

7. 적격심사 배점기준 및 심사요령

구 분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억이상 공사	3억미만공사 2억원이상	2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공경험	12	15	15	15	10	5	4.8
경영상태	13	15	15	15	10	5	5
접근성					+0.5	+0.5	0.2
신 인 도	±1.2	±1.2	-1	-1	-1	-1, +2	-1, +2
기술능력	15	-	-	-	-	-	
하도급계획 적정성	12	10	-	-	-	-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성성	14	10	-	-	-	-	
시공여유율	4	-	-	-	-	-	
입찰가격	30	50	70	70	80	90	90
적격통과점수 (낙찰하한율)	92점 (79.995%)	95점 (85.495%)	95점 (86.745)	95점 (86.745)	95점 (87.745)	95점 (87.745)	95점 (87.745)

< 기술용역 > ※여기서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을 말함

심사항목	용역 규모 별					
	30억원이상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3.3억원이상	3.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수행능력	69	69	49	29	29	10
지역업체참여도	1	1	1	1	1	-
입찰가격	30	30	50	70	70	90
※ 낙찰가능 입찰가격하한선	예정가격의 72.995%이상	예정가격의 77.995%이상	예정가격의 85.495%이상	예정가격의 86.745%이상	예정가격의 86.745%이상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종합평점	85점이상	90점이상	95점이상	95점이상	95점이상	95점이상

< 물품구매입찰 >

심사항목	물품 규모 별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1.9억원이상
계	100점	100점
납품이행능력	70	50
입찰가격	30	50
※ 낙찰가능 입찰가격 하한선	예정가격의 80.495%이상	예정가격의 80.495%이상
종합평점	85점이상	85점이상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 시설공사의 가격평가 방법

〈 공사규모별 입찰가격 평점산식 〉

공사규모	평점산식	비 고
100억원 이상	$30 -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당 1점 감점
100~50억원	$50 - 2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당 2점 감점
50~10억원	$70 - 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당 4점 감점
10~3억원	$80 - 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당 20점 감점
3억원미만	$90 - 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당 20점 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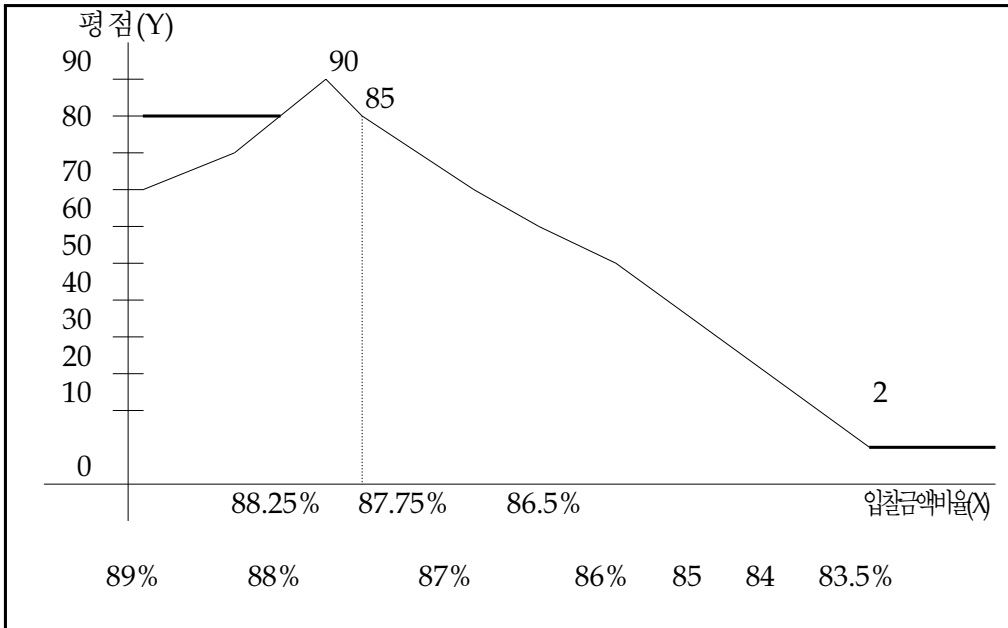
1-1.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문·설비공사는 1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낙찰율 분석(예시)

배 점	수행능력 10점 입찰가격 90점		
	가격점수	수행능력평가	
		점 수	100점환산 점 수
87.90%	88.0	7.0	70
87.89%	87.8	7.2	72
87.88%	87.6	7.4	74
87.87%	87.4	7.6	76
87.86%	87.2	7.8	78
87.85%	87.0	8.0	80
87.84%	86.8	8.2	82
87.83%	86.6	8.4	84
87.82%	86.4	8.6	86
87.81%	86.2	8.8	88
87.80%	86.0	9.0	90
86.79%	85.8	9.2	92
87.78%	85.6	9.4	94
87.77%	85.4	9.6	96
87.76%	85.2	9.8	98
87.75%	85.0	10.0	100
87.74%	84.8	(10.2)	범위초과
87.73%	84.6	(10.4)	"
87.72%	84.4	(10.6)	"
가격평점 방 법	90 - 20× (88/100-입가/예가)×10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그래프

- 산 식 : $90-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10억미만의 공사에 있어서 입찰가격의 산식에 기울기(20)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0.01%포인트씩 변동이 있을 때마다 ±0.2점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의 88%(순공사비 수준)에 만점(30)이 된 후 그 미만의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0.01% 포인트에 0.2점씩 감점하여 87.75% 85점에 도달하여 수행능력 10점과 입찰가격 85점을 더하면 3억원미만 2억이상 공사에서 낙찰가능점수 95점 이상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추정가격이 3억원인 공사의 경우 수행능력 등 비가격요소 부문에서 9.6점을 획득하였다면 낙찰격격 점수인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기 위해서는 입찰가격 부문에서 85.4점을 얻어야 하므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가격 비율을 87.77%로 하여야 함

2.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2-1. 공사규모별 평가방법

구 분	동일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공사																							
①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2점)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실적 으로 평가 (평가기준규모 대비 11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a×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3년간 업종별실적+ (추정가격×b×업종평가비율) ■ ㉠ a=12, b=2.1 																							
②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5점)	최근10년간 동일실적(95%,14.3점) + (평가기준규모 대비 100%이상) 최근3년간 업종별실적(5%,0.7점) ㉠방식에 a=0.7 b=2.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식에 a=15, b=2.0 적용 																							
③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15점)	최근10년간 동일실적(90%,13.5점) + (평가기준규모 대비 100%이상) 최근3년간 업종별실적(10%,1.5점) ㉠방식에 a=1.5 b=2.0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실적 = 당해업종 등급점수 × 업종별평가비율 (추정가격 대비 일반공사 200%이상) (전기.통신.소방.전문.기타 100%이상) 																							
④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전기.통신.소방.전문.설비. 기타등 20억원미만 3억원 이상] (15점)	최근10년간 동일실적(90%,13.5점) + (평가기준규모 대비 100%이상) 최근3년간 업종별실적(10%,1.5점) ㉠방식에 a=1.5 b=1.8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실적 = 당해업종 등급점수 ×업종별평가비율 (추정가격 대비 일반공사 180%이상) (전기.통신.소방.전문.기타 100%이상) 																							
⑤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기.통신.소방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기타 등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실적 = 당해업종 등급점수 × 업종별평가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A등급</th> <th>B등급</th> <th>C등급</th> <th>D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평가</td> <td>실적인정기간 4년이상</td> <td>70%이상</td> <td>60%이상</td> <td>50%이상</td> <td>50%미만</td> </tr> <tr> <td>실적인정기간 4년미만</td> <td>60%이상</td> <td>50%이상</td> <td>40%이상</td> <td>40%미만</td> </tr> <tr> <td colspan="2">점 수</td> <td>10.0</td> <td>9.0</td> <td>7.0</td> <td>6.0</td> </tr> </tbody> </table>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⑥ 3억원미만 2억원이상 [전기.통신.소방 15억원미만 (5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A등급</th> <th>B등급</th> <th>C등급</th> <th>D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평가</td> <td>실적인정기간 4년이상</td> <td>60%이상</td> <td>50%이상</td> <td>40%이상</td> <td>40%미만</td> </tr> <tr> <td>실적인정기간 4년미만</td> <td>50%이상</td> <td>40%이상</td> <td>30%이상</td> <td>30%미만</td> </tr> <tr> <td colspan="2">점 수</td> <td>5.0</td> <td>4.0</td> <td>3.0</td> <td>2.0</td> </tr> </tbody> </table>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⑦ 2억원미만 [전문.설비등1억원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 2억미만 공사는 4.8점으로 환산 적용 																								

2-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실적평가 방법

1)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 (규모, 물량)으로 평가
- 평가방법은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실적 인정규모이상의 준공실적을 합산한 실적 (최근 10년 이내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일 종류의 실적 ÷ 평가기준규모) × 100% ⇒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평가점수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함
- 공동수급체실적 = (최근 10년간 각 구성원의 동일실적×각 구성원 시공비율)
※ 다만,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곱하지 않을 수 있음

질의 회신

<질의>

- 최근 개정된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을 보면 일정금액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시공경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와 시공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2가지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등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2가지 시공경험평가방법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시공실적제한은 금액제한이 아닌 규모로 제한하였을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맞다면 금액제한을 제외하고 규모로만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답변>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실적제한의 경우 당해계약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제한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기준에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는 규모 또는 물량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2) 실적인정범위

- 실적인정범위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한하여 인정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로서 그 범위는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해야함
 -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동일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함
 - 동일구조물(체)라 함은 상호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1건의 구조물(체)을 말함

질의 회신

<질의>

- 『○○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참가자격을 최근10년 이내에 농업용수개발사업 저수지 신설 단일건 제당고 H=24m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으며, 적격심사시 평가기준규모도 농업용수개발사업 저수지 신설 단일건 제당고 H=24m를 100%로 적용한다고 공고 하였는바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적을 【저수지(식수전용댐) 신설공사 제당고 H=32.4m, L=120m】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발주처에서는 저수된 물의 용도(농업용수/식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답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83호) <별지1>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물량)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적이란 명칭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용도 또는 같은 종류의 실적을 의미하는 것임.

3) 실적증명

-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실적증명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현장 실사
- ※ 현재 적용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발급된 증명서는 평가에서 제외

질의 회신

<질의>

- 공동도급계약의 실적인정 방법에서 과거에 출자비율범위내에서 실제 시공한 내용대로(A사 : 도로 10km, B사 : 교량1km)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가 A사가 교량 부분의 실적이 필요하여 기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와는 달리 시공비율대로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 <별표1> I-3-나-②-㉞)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 범위내에서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구성원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부분(예:구간·공종)별로 나누어 시공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날인하고 발주기관에서 증명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부분(구간·공종)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실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실적증명서가 발급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같은 실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실적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2개의 실적중 하나는 실제 시공내용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된 증명서에 해당될 것임.

4) 실적인정 방법

< 유 의 사 항 >

- ① 평가기준규모 및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 70%까지 하향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음
- ③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발주공사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와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음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란?

-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을 말함
 - 여기에서 당해공사와 동일한 실적을 구분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당해 공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실적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
 - 명칭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용도(종류)의 실적을 의미
- 예) 시민회관을 발주하는데 구민회관이나 군민회관은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용도의 실적범위에 해당

질의 회신

<질의>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하수관거, 우·오수관거 또는 차집관로공사(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연계된 복합공정의 경우 차집관로만 인정하고 구획정리,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공사와 연계된 하수 및 우·오수관거는 제외)로서 관경 Φ 250mm 이상 연장 20km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상기와 같은 제한은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명칭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이 경우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가 현재 발주하는 하수관거와 실질적으로 같은 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확인)에 따라 실적인정 유·무를 판단할 사항임.
예) 농공 및 산업단지와 연계된 하수관거가 현재 발주하는 하수관거와 동일하다면 실적인정이 가능함

2] 인정실적과 인정되지 않은 실적이 혼재된 경우 심사방법

- 동일종류의 실적이 1건의 실적 속에 혼재되어있는 경우 실적인정방법은 1건의 실적 속에 인정되는 실적 규모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1건의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
 - 예를들면 도로실적의 경우 연장 5km를 폭 8M 이상으로 실적인정범위를 정한 경우 총 5km 이상 폭 8M 이상은 실질적으로 인정범위에 해당되나 중간에 폭 8M가 안된 부분이 혼재하여 있다면
 - 중간부분에 인정규모에 미달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인정부분을 합산한 연장규모가 인정규모 이상이라면 실적으로 인정 가능

질의 회신

<질의>

- 댐조성에 의한 수원지 및 취정수 시설물에 대한 실적제한 입찰시 적격심사의 실적인정규모가 제당길이 100m이상, 제당높이 20m이상인 단일 시공실적으로 정한 경우
 - 갑설 : 전체 제당길이 100m이상, 높이 20m 이상인 것만 유효한 단일적이다.
 - 을설 : 전체 제당길이 100m이상, 높이는 일부분만 20m이상인 것은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답변>

- 귀질의는 발주자가 요구한 제당길이 100m이상, 제당높이 20m이상은 동시에 충족해야할 것이며
- ※ 이 경우 발주자가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1배이내 이어야 함.(추정가격 50억미만 공사의 경우 0.7배이내)
- 제당 높이에 관한 사항은 설계서(도면등 포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야할 것임

질의 회신

<질의>

- 온실 신축공사에 따라 『온실 신축공사(기초금액 145,000천원)』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금속창호물·창호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단일공사 유리온실 180㎡이상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공사입니다.
- 1순위업체가 제출한 실적(○○신축 공사중 철물공사)중에 일부분이 유리온실 설치(200㎡)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유리온실 부분을 단일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91호) 제3장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집행』 제5조제2호에 “단일공사”란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 공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구조물로서 전체 공사내용 중 인정되는 실적이 일부분만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단일공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③ 공동도급계약으로 시공한 실적의 인정

공동수급체를 구성, 신청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실적에 공사 참여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예외)

- 각 구성원의 실적인정시 과거의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을 받은 공사로서 출자비율의 범위 내에서 실제 시공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의하여 날인하고 발주자가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실제 시공한 부분의 실적인정(이 경우 실적증명서는 계속 동일하게 발급 되어야함)

예 시 : 실제 시공한 부분의 실적인정

- 교량과 도로를 공동이행 도급으로 시공한 경우 출자비율 범위내에서 A사는 교량, B사는 도로를 시공하였다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적인정 가능
 - ※ 이 경우 출자비율범위내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날인하고 발주기간에서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 기계실 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실적으로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 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함

예 시 : 기본요소 미만의 의미?

- 교량공사(L=100m, 경간 50m)를 공동이행방식에 의거 A사(60%)와 B사(40%)가 시공한 경우
 - A사의 실적은 지분율이 60%이므로 L=60m, 경간 50m 이며
 - B사의 실적은 지분율이 40%이므로 L=40m, 경간 50m 이나
- B사의 경우에는 시공규모가 L=40m 로서 기본요소(경간 50m) 미만이므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여기서 **경간**이란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를 말함.

- 분담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실적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이 경우에도 규모에 의한 시공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규모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비율만큼 물량을 환산하여 적용함
- 과거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 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과거 구성원이 동일한 구성상태(시공비율, 구성원 등)로 동일하게 공동으로 입찰, 적격 심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과거 1건 공사의 실적은 당해 공동수급체의 적격심사 실적으로 그대로 인정함(이 경우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을 별도 곱하지 아니함)

예 시

: 00 시에서 입찰공고시 실적 인정규모 L=10km, B=20m의 이상 도로공사 실적으로 적격심사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 과거 A사와 B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60%:40%)하여 도로공사 L=12km, B=20m를 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현재 공동수급체 시공비율(50% : 50%)인 경우
 - A사의 실적은 L=7.2km, B=20m에 다시 50%를 곱하면 L=3.6km, B=10m가 됨
 - B사의 실적은 L=4.8km, B=20m에 다시 50%를 곱하면 L=2.4km, B=10m가 됨
- 그러나 A·B사가 과거 참여 비율과 동일하게 다시 입찰(60%, 40%)한 경우
 - 당해공동수급체(A와 B사)에 L=12km, B=20m의 1건의 실적을 그대로 인정함

《 주계약자 관리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 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됨

○ 대상공사 : 아래 7개업종이 포함된 공사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겸업 할 수 있는 업종(건설법 제12조)

○ 제외대상

① 일반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 하는 경우

②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①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 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함

②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함

③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자신의 실적으로 인정함

④ 하도급 부분에 대한 실적 인정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액을 당해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며 규모의 실적은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규모에 곱하여 산정함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원도급업자에게 전체실적을 인정함
-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수급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함

질의 회신

<질의>

- 일반건설업체가 과거에 도급받은 상수도시설 공사중 일부분(제당시공부분)을 일반건설업자에게 100%하도급을 주었고 제당높이로 시공실적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한 내용의 실적 인정방법은?

<답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 <별표1> I-3-나-③-㉠에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인정

-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 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함

6]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행정자치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발주기간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수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실적으로 인정함

질의 회신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도교 가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간장 30m 및 3m 이상의 스틸박스 교량 시공실적이 있는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데
- 적격심사 해당업체에서는 「도로 확·포장공사」의 3차분에 포함된 스틸박스 교량공사 실적을 제출 하였는데 동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서 1차, 2차, 3차분까지는 준공이 되었고 현재 4차분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 2차분 및 3차분 공사의 공정을 보면 대교 공정이 있는 바 동 공사는 연장이 300m로서 하부공(교대2기, 교각5기)은 기 완료되었고 상부공은 강교제작, 강교 거치만 완료된 상태로서 스라브, 난간 등은 현재 4차분 공사에서 시공 중에 있음.
 - 이와 관련 업체에서 제출한 교량실적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83호)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8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 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7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최종 연차가 준공된 경우 연차별 단위구조물(체) 전체를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단위 구조물(체)별로 공사 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 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질의 회신

<질의>

- (재)○○도 영어문화원에서 발주한 영어마을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단일계약 공사 건축연면적 25,000㎡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는데,
- 당사가 보유한 실적은 종합강의동 및 지하주차장, 호텔관광대학 신축공사로서 동 공사는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구조물이며 연차별로 계약 준공한 경우인데 이를 합산하여 단일 실적으로의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 실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191호) 제3장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구조물 공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83호)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발주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 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회신

<질의>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에 있어 동일인이 연차적으로 발주한 동일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수년동안 수 회에 걸쳐 준공한 실적을 1건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83호)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동일구조물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한 경우 최종 연차계약이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경우 공사 전체 구조물을 1건의 실적으로 보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동예규 별첨양식2, 주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⑧ 면허보유 유·무에 따른 실적인정

-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
-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질의 회신

<질의>

- 00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낙찰예정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완료하였으나, 낙찰예정업체에서 제출한 『00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의 실적은 2000. 3. 20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25%)으로 참여하여 준공한 실적과 관련하여
- 낙찰예정업체는 계약당시(2000. 3. 20)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없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하고 시공에 참여한 후 2001. 3. 1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를 준공하였는 바, 동 실적을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참고사항

- 시공실적 가운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1,960백만원)의 공정은 2차분 이후에 시공한 실적임(2001. 4. 20~2003. 4. 19)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83호) 별표1(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도급 또는 단독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 하며,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사항과 같이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해당면허(등록) 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라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과 관련된 제반서류(공정표 등)를 검토하여 발주처에서 판단·처리할 사항임.

9)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①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
 - ②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봄
 - ③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
 - ④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 사업 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

10)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중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부분은 당초 시공비율로 실적을 산정하되, 변경된 날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하며,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
 -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
 -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업체가 법인의 파산 또는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

질의 회신

<질의>

- 2개회사가 공동도급으로 이행중 1개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나머지 공사를 잔여구성원이 이행하고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현행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하여 잔여구성원이 전체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적증명서 발급방법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 2005. 12. 30) <별표 1>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거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되 현재 발주하고자하는 공사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경우로서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부도 등의 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잔여 시공자는 실제 시공한 부분에 대한 실적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III 실적인정 기준시점

- 실적평가자료는 평가기준일인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최종 준공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 평가
- ※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하여 날짜를 계산

질의 회신

<질의>

- 최초 1992년도에 △△시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년차별로 계약하여 준공하는 계속공사를 진행하던중 해당 도로가 △△시 군도에서 ○○도 지방도로 승격되어 1995년에 △△시에서 ○○도 종합건설사업소로 공사가 이관되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한 도로공사입니다. 이 경우 단일도로 실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공사시공 중 도로관리기관의 변경으로 발주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1건의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질의>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시설공사적격심사 실적심사시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평가할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 용도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층별 세부용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 〈별지 1〉의 규정에 의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우 최근 10년간 실적은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 실적(범위)을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를 입찰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용도 입찰공고의 실적인정범위,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 내용이 동일한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3.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평가 방법(업종별 평가방법)

1) 협회에서 관리하는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가방법

-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협회에서 증명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
- 협회에 1회연도 단위로 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하되 신고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불인정
 - ※ 이 경우에도 협회에서 발급받는 시공실적의 인정기간, 실적인정 금액 단위와 동일하게 평가

2) 10억 미만공사 (일반공사기준)협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실적의 합산 평가방법

- 협회에서 확정된 업종별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의 기간 중 준공이 완료된 실적과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상반기의 경우에는 4년 이상 (최대 4년 6개월)실적으로 평가
 - 하반기의 경우에는 4년 미만 (최대 4년) 으로 평가

3)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은 실적의 평가방법

- 협회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 준공된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동 평가방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예: 문화재공사)
 - ※ 협회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협회에 시공실적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업체의 시공실적을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시공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질의 회신

<질의>

- 적격심사 중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 금액으로 평가할 경우 연차별 준공실적으로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중인 경우 차수별 준공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제2조 제3항제3호 및 <별표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II-3호의 규정에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간의 기간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 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여러 개의 업종이 복합되는 공사의 평가방법

- ① 서로 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동일법령내 해당하는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

※ 예시 : 전기공사와 건축·조경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건축·조경 공사가 주 공사에 해당하면 전기업종은 제외하고 건축·조경 공사만 3년간 실적의 평가

- 건축, 조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서로 다른 법령에 해당 됨

질의 회신

<질의>

- 소방전기2종 공사 발주시 2년전에는 전기업자가 낙찰 후 소방면허와 연계해 계약이 가능하였으나 불법 하도급이라 규정하여 현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면허를 가진 자와 공동도급을 한 사항이 불법이 되는지 입찰전에 공동도급은 불법이 아니고 입찰후 공동도급은 불법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안으로 분리발주를 시키던지 낙찰후 공동도급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참고로,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 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전기공사업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 법령내 복합업종인 경우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되 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비율을 공고에 명시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업종 및 구성원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함

예) A업체 토목30%, B업체 조경30%, C업체 소방 30%로서 소방공사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A업체 50%, B업체 50%가 됨

③ 평가대상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가방법

- 각 업종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
- $(A\text{업종 평가점수} \times \text{평가비율}) + (B\text{업종 평가점수} \times \text{평가비율})$
 - ※ 단위업종 평가점수 = 해당업종/평가기준금액×해당업종 평가비율
 - ※ 주(主) 업종만 평가하는 경우 = 해당업종실적/평가기준금액×해당업종 평가비율
 - ※ 평가기준금액 = 추정가격 × R(2.5~1.8), 다만 추정가격10억미만의 일반공사는 R가 없음

3)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사의 평가방법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평가함(이외의 사항은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의 규정을 준용)

- ①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②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함
 -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제3조 제1항제1호라목(복합업종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 실적계수 산정은 <별지1> 내지 <별지6> 에 정한 방식에서 “1”을 더하여 (추정가격×2.5⇒추정가격×3.5, 추정가격×2⇒추정가격×3)평가함
- ③ 기술능력,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일반건설업자만 평가함**
 -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축적정도”항목에 대한 평가시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실적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규모의 0.5배 이상 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함

- ④ 시공평가 결과 평가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동일실적으로 시공평가 결과를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규모의 0.5배 이상 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공동수급체는 0점 처리함
- ⑤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시공 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함
- ⑥ 신인도 항목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평가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우 <별표 4> 신인도평가기준 제2호, 제3호, 제6호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의 경우는 <별지5> 내지 <별지9> 신인도 항목에 의하여 평가함
- ※ 일반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는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 점수산정 방법 >

점 수 = 업종별 점수의 합 ← ⑤

업종별점수 = 실적계수 × 배점한도 × 업종평가비율 ← ②, ④

실적 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 (추정가격×차등계수×업종평가비율) ← ①, ③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예시 1

: 토목+조경공사의 3년간 실적평가(실적계수에 의한 평가)

추정가격 50억원인 일반공사이며 공동이행방식(A사가 50%, B사가 50%)인 경우
로서 평가비율이 토목 40%, 조경 60%인 경우

- A사 3년실적(토목 60억원, 조경 40억원), B사 3년실적(토목 40억원, 조경 40억원)

▶ 토목업종(40%) 평가

$$(A사 60억원 \times 0.5) + (B사 40억원 \times 0.5) = 50억원(토목실적)$$

$$\Rightarrow 50억원 \div \{50억원(추정가격) \times 2.0(차등계수) \times 0.4(평가비율)\} = 1.25 \dots \textcircled{1}$$

\Rightarrow 실적계수는 1을 초과하면 1로 인정(1.25 \Rightarrow 1)

$$\therefore 1(실적계수) \times 15(배점한도) \times 0.4(평가비율) = 6점 \dots \textcircled{2}$$

▶ 조경업종(60%) 평가

$$(A사 40억원 \times 0.5) + (B사 40억원 \times 0.5) = 40억원(조경실적)$$

$$\Rightarrow 40억원 \div \{50억원(추정가격) \times 2.0(차등계수) \times 0.6(평가비율)\} = 0.666 \dots \textcircled{3}$$

\Rightarrow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67

$$\therefore 0.67(실적계수) \times 15(배점한도) \times 0.6(평가비율) = 6.03점 \dots \textcircled{4}$$

따라서 실적점수는 ② + ④ = 12.03점

\dots \textcircled{5}

예시 2

: 토목 + 조경공사의 3년실적(실적계수에 의한 평가)

추정가격 50억원 일반공사이며 공동이행방식(A사가 60%, B사가 40%)인 경우
기초금액상 평가비율이 토목 82%, 조경이 18%인 경우

- A사 3년간실적(토목 60억, 조경 40억), B사 3년간실적(토목 40억, 조경 40억원인 경우)

가. 토목·조경을 모두 평가하는 경우

▶ 토목업종(82%) 평가

$$\begin{aligned}
& - (A사\ 60억\ 원 \times 0.6) + (B사\ 40억\ 원 \times 0.4) = 52억\ 원(\text{토목실적}) \\
& \Rightarrow 52억\ 원 \div \{50억\ 원(\text{추정가격}) \times 2.0(\text{차등계수}) \times 0.82(\text{평가비율})\} = 0.634 \\
& \Rightarrow \text{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 0.63 \dots\dots\dots \text{①} \\
& \quad \therefore 0.63(\text{실적계수}) \times 15(\text{배점한도}) \times 0.82(\text{평가비율}) = 7.749\text{점} \\
& \quad = 7.75\text{점}(\text{소숫점세째자리 반올림}) \dots\dots\dots \text{②}
\end{aligned}$$

▶ 조경(18%) 평가

$$\begin{aligned}
& - (A사\ 40억\ 원 \times 0.6) + (B사\ 40억\ 원 \times 0.4) = 40억\ 원(\text{조경실적}) \\
& \Rightarrow 40억\ 원 \div \{50억\ 원 \times 2.0(\text{차등계수}) \times 0.18(\text{평가비율})\} = 2.222\text{점} \\
& \Rightarrow \text{실적계수는 1을 초과하면 1로 인정}(2.222 \Rightarrow 1) \dots\dots\dots \text{③} \\
& \quad \therefore 1(\text{실적계수}) \times 15(\text{배점한도}) \times 0.18(\text{평가비율}) = 2.7\text{점} \dots\dots\dots \text{④}
\end{aligned}$$

따라서 실적점수는 ② + ④ = 10.45점

..... ⑤

나. 주업종(토목 82%)만 평가하는 경우

- ▶ 시공비율을 주업종 평가방법에 맞게 다시 산정해야하나 평가비율은 불변
- ▶ 평 가
 - (A사 토목실적 60억원 × 0.6) + (B사 토목실적 40억원 × 0.4) = 52억원
 - = 52억원 ÷ {추정가격(50억원) × 2.0(차등계수) × 0.82(평가비율)} = 0.63(실적계수)
 - = 15(배점한도) × 0.63 = **9.45점**

<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점수산정 방법 >

총 합 점 수 = 업종별 점수의 합 ← ⑤

업종별점수 = 업종등급점수 × 업종평가비율 ← ③, ④

※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예시 3 : 건축 + 조경 + 전기공사의 3년간 실적 평가(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40억원(기초금액 44억원)인 경우로서 기초금액상 평가비율이 건축 50%, 조경 30%, 전기 20%
 - 분담이행방식으로 A사(건축) 50%, B사 30%(조경), C사 20%(전기)
-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조경인 경우 최근 3년 실적 평가
 - A사 건축실적 40억원, B사 조경실적 18억원 보유

▶ 평가대상 업종별 평가비율 산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평가에서 제외되는 전기공사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

- 건축 : 22억원/35.2억원 = 62.5% ①
- 조경 : 13.2억원/35.2억원 = 37.5% ②

▶ 업종별 평가

- 건축 : 40억원(추정가격) × 50%(건축 평가비율) = 20억원
 - 40억원(건축실적) ÷ 20억원 × 100% = 200%
 - 200% = 15점(200%이상은 A등급으로서 15점)
 - ∴ 15점 × 62.5% = 9,375점 ③

- 조경 : 40억원(추정가격) × 30%(업종별 평가비율) = 12억원
 - 18억원(조경실적) ÷ 12억원 × 100% = 150%
 - 150% = 11점(150%이상은 B등급으로서 13점)
 - ∴ 13점 × 37.5% = **4.875점** ④

따라서 실적점수는 ③ + ④ = 14.25

..... ⑤

예시 4 : 단독입찰로서 토목+조경공사의 3년간 실적평가(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초금액 33억원(조경 22억원, 토목 11억원)으로서 추정가격 30억원(조경 20억원, 토목 10억원)인 일반공사의 경우 실적평가
 - 3년실적 : 조경 80억원, 토목 10억원

- ▶ 평가대상 업종별 평가비율 산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 조경 : 22억/33억 = 66.67%(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 토목 : 11억/33억 = 33.33% ②

※ 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 ▶ 업종별 평가
 - 조경 : 30억원(추정가격) × 66.67%(업종별 평가비율) = 2,001,000,000원
 - 80억원(조경실적) ÷ 2,001,000,000원 × 100% = 399.8%
 - 399.9% = 15점(200%이상은 A등급으로서 15점)
 - ∴ 15점 × 66.67% = **10.0005점** ③
 - 토목 : 30억원(추정가격) × 33.33%(업종별 평가비율) = 999,000,000원
 - 10억원(조경실적) ÷ 999,000,000원 × 100% = 100.1%
 - 100.1% = 11점(100%이상은 C등급으로서 11점)
 - ∴ 11점 × 33.33% = 3.663점 = **3.663점** ④

따라서 실적점수는 ③ + ④ = 13.66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⑤

예시 5 : 분담이행방식으로 토목+조경공사의 3년간 실적평가(실적
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초금액 33억원(조경 22억원, 토목 11억원)으로서 추정가격 30억원(A사 조경
20억원, B사 토목 10억원)인 일반공사(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실적평가
- 3년실적 : A사 조경 80억원, B사 토목 10억원

▶ 평가대상 업종별 평가비율 산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 A사 조경 : $22\text{억}/33\text{억} = 66.67\%$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①

- B사 토목 : $11\text{억}/33\text{억} = 33.33\%$ …………… ②

※ 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평가

- 조경 : $30\text{억}\text{원}(\text{추정가격}) \times 66.67\%(\text{업종별 평가비율}) = 2,001,000,000\text{원}$
 · $80\text{억}\text{원}(\text{조경실적}) \div 2,001,000,000\text{원} \times 100\% = 399.8\%$
 · $399.9\% = 15\text{점}(200\%\text{이상은 A등급으로서 } 15\text{점})$
 ∴ $15\text{점} \times 66.67\% = 10.0005\text{점}$ …………… ③

- 토목 : $30\text{억}\text{원}(\text{추정가격}) \times 33.33\%(\text{업종별 평가비율}) = 999,000,000\text{원}$
 · $10\text{억}\text{원}(\text{조경실적}) \div 999,000,000\text{원} \times 100\% = 100.1\%$
 · $100.1\% = 11\text{점}(100\%\text{이상은 C등급으로서 } 11\text{점})$
 ∴ $11\text{점} \times 33.33\% = 3.663\text{점} = 3.663\text{점}$ …………… ④

따라서 실적점수는 ③ + ④ = 13.66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3-1. 평가방법

1	공통사항
---	------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 가능(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

※ 적격심사자료 제출시 평가방법을 미리 선택하여 자료제출

2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	---------------

가.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

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이하 “직전회계년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

※ 일반건설업의 경우 법인의 회계연도말 기준 재무제표를 4월15일까지 관련협회에 제출하여, 평균비율 작성 후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적용

다.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감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

라.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合)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마.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단,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하며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공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 평가가 가능함

바.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 예시) A사, B사 : 정기결산서가 있는 업체, C사 : 신설법인 으로서
A, B, C사가 합병하는 경우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 A사, B사의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C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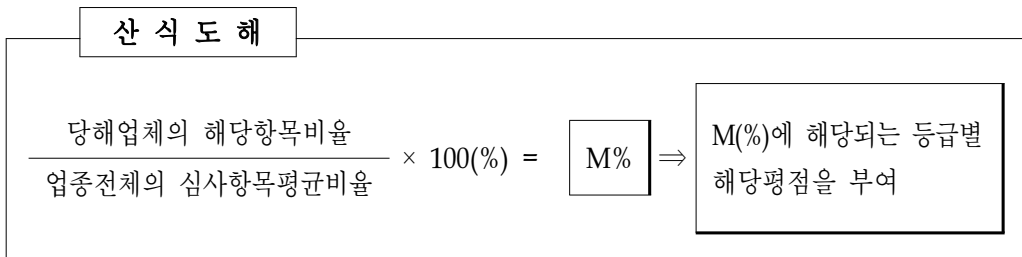
사.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 결산서 합으로 평가

아.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자.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아’목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

※ 이 경우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 중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련 협회에 실적신고시 제출된 감사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최종 취득점수에서 감점처리하고,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아 감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감점처리를 하지 않음

차. 평가산식



경영상태평가지 유의할 사항

- ① 평가결과 부(-)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②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③ 업종평균비율이 부(-)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 ④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평가함
- ※ 총자산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 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함

카.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모든 공사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모든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경영상태보완이 불가능함

예 시 : 추정가격 60억원인 일반공사에서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이 A업체 60%, B업체 40% 인 경우

- A업체 자기자본 100,000원, 부채가 80,000원
 - B업체 자기자본 60,000원, 부채 120,000원이고
 - 평균비율은 300%로 가정할 경우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 ▲ 공동수급체의 부채비율 산정방법(배점한도 6점) (별표3-4 평가기준 적용)
-

-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83호) 제3조제2호(경영상태평가)의 규정에 의거 모든 공사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 A업체의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Rightarrow 80,000/100,000 \times 100(\%) = 80\%$
 - B업체의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Rightarrow 120,000/60,000 \times 100(\%) = 200\%$
- ▶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하므로
 - A업체는 $80/300 \times 100(\%) = 26.6\%$, B업체는 $200/300 \times 100(\%) = 66.6\%$ 이므로
 - A업체는 6점(A등급, 50%미만), B업체는 5.4점(B등급, 75%미만)이므로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평가점수 = $(6 \times 0.6) + (5.4 \times 0.4) \Rightarrow \underline{5.76}$ 점

3 비재무항목의 평가방법

가.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방법(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 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의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 2)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나.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에 대한 평가방법(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

- <별표3> 경영상태평가방법 II.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 (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에 의함. 다만,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간주

다.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하여만 평가(시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입찰 공통적용)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 산립조합, 국·공립대학 등

라. 영업기간의 평가방법(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 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함
- ※ 당해공사 공종과 무관하게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면허)중 가장 오래된 것을 기준으로 평가
- 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을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일반건설업종 토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2년6월이상 영위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토건등록보유자의 경우 이전의 등록영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상 일반업종의 경우 일반업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하여만 합산 가능(전문업종을 영위하다 일반업종을 취득한 경우 영업기간 합산불가)

-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연도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영상태평가는 최근에 업체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함

-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유한 종합건설회사가 전기관련 공사입찰의 적격심사대상 순위가 된 경우 업체평균부채비율의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경영상태평가지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공사가 전기설비공사인 경우 업체평균부채비율은 전기분야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4-1. 평가항목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공사 등	12	10	전문·전기·정보통신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 평가
①하도급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4 3	3 2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②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 비율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2	1	하도급할 금액은 지급 자재 금액은 제외
③하도급 할공사의 총 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77%미만 B : 78%이상 ~80%미만 C : 80%이상 ~82%미만 D : 82%이상	2 3 4 5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 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부대입찰서류상의 금액임
④최근 1년간 하도급 대금 직불실적	A : 10%이상 B : 10%미만	1.0 0.5	1.0 0.5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6-1>에 의함
계		12	10	

가. 심사항목 ①, ②, ③에 대한 평가방법

- 1) 당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당업자제제, 영업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
-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의무하도급제도가 2008.1.1부터 폐지되었으므로 ②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 적용

나. 심사항목 ④에 대한 평가방법

- 1) 20억원이상인 관급공사에서의 하도급계약 중 직불실적의 비율로 평가
- 2)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 3)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만 평가

다.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시 가점사항 신설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대비 20%이상으로 제출한 때에는 0.5점을 가산부여하여 평가(이 경우에도 배점한도는 초과할 수 없음)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평가의 경우 신인도 등으로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직불실적이 10%미만인 업체의 경우 0.5점이 감점되어 사실상 낙찰자가 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당해공사에 대한 직불계획을 제출·이행토록 하여 당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불을 확대하는 효과유도

4-2.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관급공사

- 1)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 (1년) 신규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 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이 당해기간내에 포함되어 있고, 동 기간내에 하도급계약도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장기계속공사의 총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이어야 함

● 당해기간중 원도급계약을 하였으나 동 원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는 평가대상 관급공사에서 제외

나. 평가방법

- 1) 단독입찰인 경우

$$P = \frac{\text{적용 직불건수의 합}}{M} \times 100(\%)$$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 적용 직불건수의 합 = $\sum_{n=1}^M Dn/Sn$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2)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인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

● 소수점 처리방법

- 최종 평가비율(백분율)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절사

다. 실적 인정범위

- 1)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 산정

● 예시 : 원도급자 A가 하도급자 B, C, D에게 하도급 계약한 경우로서 B사에게만 직불합의를 한 경우 1건÷3 = 0.33333건이 됨

- 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 체결 후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 한 경우이어야 함
- 3)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성대기중 하도급부분의 전부를 직불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각각 모두 직불실적 1건으로 인정

라. 평가자료 확인방법

- 1)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직불건수, 총하도급 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 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중도에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직불실적에서 제외

- 2)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기간 및 내용이 틀린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건수 및 하도급계약건수 >

- 업체별로 20억원이상 공사목록 및 하도급계약 내역을 제출받음
- 발주자는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

<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

- 입찰참가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3)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건수를 직불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약서 징구

마.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 인정

- 최근 1년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 중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대가지급회수가 더 많이 경우로서 전문협회장 등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

바. 최근 1년 동안 20억원 이상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처리

사. 협회 신고 및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 (이 경우에도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아.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의 경우 <별표 1> I-3-나-⑧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방법을 준용

● 합병등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

차.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 1) 최근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작성·제출
- 2) 다만,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3)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서 직불한 경우로서 직불합의서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직불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 이를 구성원의 직불실적으로 인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하도급대금 직불을 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 불인정

- 4)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도 중에 하도급자 부도로 퇴출된 경우 기시행된 직불에 대하여는 건설적으로 인정하고, 새로이 하도급자를 선정·계약 체결하는 경우 별건의 하도급건수 및 직불건수로 산정

- 5)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 도중에 원도급자 부도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고 연대보증인이 직불을 계속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당초 계약자의 직불합의서와 보증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직불 인정

● 사례) 입찰업체의 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구분	관급공사 (M)	하도급계약 건수(S)	직불건수(D)	비고(D/S)
A업체	a	5	0	0
	b	10	1	0.1
	c	7	1	0.14285
	d	20	1	0.05
	e	12	1	0.08333
	합계 : 5	-	-	0.37618
B업체	f		2	0.16666
	g		4	0.26666
	h		1	0.14285
	합계 : 3	-	-	0.57617

▲ 단독입찰의 경우

- A업체 : 7.52 → **0.5점** - B업체 : 19.21 → **1점**

▲ 공동수급체 입찰의 경우

① A(80%), B(20%)인 경우

→ $0.37618 \times 0.8 + 0.57617 \times 0.2 / 5 \times 0.8 + 3 \times 0.2 \times 100 \rightarrow 9.05\% \rightarrow$ **0.5점**

② A(20%), B(80%)인 경우

→ $0.37618 \times 0.28 + 0.57617 \times 0.8 / 5 \times 0.2 + 3 \times 0.8 \times 100 \rightarrow 15.77\% \rightarrow$ **1.0점**

5. 기술능력 평가방법

5-1. 평가항목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대상

심사항목	적용대상공사	비 고
기술자 보유상황	100억원 이상 공사	행자부장관이 별도통보
시공평가결과	100억원 이상 공사	행자부장관이 별도통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100억원 이상 공사	적용

5-2. 평가방법

가. 기술자 보유상황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PQ공중이외의 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가 미흡하여 동 데이터가 축적될 때까지는 사실상 평가를 할수 없는 상황

나.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환경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

※ 한국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다. 시공평가 결과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에 한하여 평가(실적제한이외의 경우 만점으로 평가)

● 시공평가제도에 대하여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45조

○ 주요내용

- 발주청은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총공사비 50억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감리원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시공평가를 하여야 함

※ 단순 반복적인 건설공사제외

- 평가분야(시공평가표 참조)

① 품질관리 ② 공정관리 ③ 하도급관리 ④ 기술개발

⑤ 안전관리 ⑥ 환경관리 ⑦ 현장관리 ⑧ 부실벌점

-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전문가가 평가 (전문가 4인 이상 포함)

라. 시공경험의 축적정도 평가를 위한 동일실적 준공기간 경과정도는 적격 심사시 발주처에 제출된 실적중 가장 최근연도 준공한 실적으로 평가

●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모두 만점평가

마.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은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 평가

-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로 산정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

바.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 방법

- 1) 기술자보유상황은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평가
※ 이 경우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2)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평가
-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
- 4)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산출평균한 값으로 평가
- 5)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

5-3. 적용시기

- ◇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우선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적용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만점 평가

6. 신인도 평가방법

6- 1. 기본원칙

- 가. 신인도는 배점한도이외에 해당업체의 가·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가점의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만점)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감점인 경우 감점된 만큼 적용하여 평점
-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평가

6- 2. 신인도의 종류 및 평가방법

- 가.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 1) 협력관계 평가결과(3점~0.5점 가점)
 - ※ 일반·전문 건설업자간, 대기업·중소기업간 하도급·공동도급 지도에 관하여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지 가산점 부여(건설법 제48조 및 동 시행규칙 제40조)
 - 2) 최근 1년이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처분(△3~△0.5점 감점)
 - ※ 과태료 등 경미한 행정제재는 제외
 - 3) 환경관련 과징금이상 처분(△1~△0.5점 감점)
 - ※ 감점처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는 감점대상이 아님
 - 4)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3~△1점 감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5) 재해율이 평균재해율보다 낮은 업체(0.5 ~2.0)

6)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1점)

- 최근 2년간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자,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나.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

○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1점)

- 뇌물제공, 담합, 부실시공, 허위실적 제출 등

신인도 평가시 유의할 사항

- ①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 ②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刑)이 확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
 - 이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형(刑)이 최종확정된 날을 기준시점으로 적용
- ③ 1개업체가 동일항목 내에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
- ④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보아 평가함

7. 기타 심사항목 평가방법

7-1.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평가점수계산식

$$\text{평점} = \{(\text{입찰금액} - \text{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 \text{평가기준금액}\} \\ \times \text{배점} \times \text{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공사유형에 따라 A~E등급으로 구분

·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 - 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입찰공고에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해야 함

●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초금액 대비 입찰금액을 평가하여 순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유리하도록 하여 건설시공 유도효과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별지2> 및 <별지8> 평가산식 중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케 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

-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10일 이내)

- 계약담당자는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여 입찰점수와 합산하여 적격통과 가능점수 미달이어서 낙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선순위 업체는 서류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자동 탈락을 고지

7-2. 시공여유율 평가(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가.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 4.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미만	4.6미만	6.9미만	9.2미만	9.2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나.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건설업에 대한 미기성총액을 산출하여 통보된 자료로만 평가

다.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라. 시공여유율은 일반건설업종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함

cf. 재해복구 경쟁입찰 평가기준의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의 시공여유율(0.5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평가

7-3. 접근성 평가

가. 추정가격 2억(전문·설비공사는 1억)미만 공사 : 배점 0.2점

나. 2억원이상 5억원미만 공사 : 가산점 0.5점(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 및 인접한 시·군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에 접근성 점수 부여 (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적용)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cf. 강, 호수로 인접할 경우 인접시·군에 해당

2)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접근성 점수 부여

3)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입찰참가자 전원에게 접근성 점수 부여)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함

7-4. 50억미만 일반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평가

- 가. 50억미만 일반공사 적격심사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입찰참가자는 낙찰배제
- 나.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일(투찰일)전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기준에 의한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한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시 감점(10점)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기술자등록요건**(건설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

- 토건 : 12인(토목기술자 5인, 건축기술자 5인이상 포함)
- 토목 : 6인(토목기술자)
- 건축 : 5인(건축기술자)
- 산업환경설비 : 12인(산업환경설비관련 기술자 6인포함)
- 조경 : 6인(조경기술자 4인, 토목·건축기술자 각 1인이상)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건설법시행령 제16조)

-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표2>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예시 : 평가대상업체가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록을 중복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당해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동 업체가 토목기술 6인, 건축기술자 3인을 보유한 경우, 건설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감점대상업체가 됨
- 반면, 당해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동 업체가 토목기술 5인, 건축기술자가 7인을 보유한 경우, 건설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적격업체가 됨

●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시 유의사항

- ① 기술인협회의 전산망은 등록기준에 충족하나, 실제로는 등록기준에 부족하다고 타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 기술인협회의 전산오류로 인한 경우
⇒ 기술인협회에 재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기술인협회 전산조회결과 등록기준에 부족하나 해당업체가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 불인정
- ②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기술자 보유수를 확인하여 구성원 각자가 등록기준상 기술자수를 모두 충족해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개업체만 미달해도 △10점 감점 적용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된 내용에 대한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을 적용
- ③ 건설업체가 복수의 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술자는 당해공사수행에 필요한 등록업종만 적용함
 - ※ 단, 1개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더라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를 보유해야 함(건설법시행령 제16조제3항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규정 반영)
- ④ 기술자가 복수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자격을 우선 적용
- ⑤ 당해공사 수행에 복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예 : 토목+조경)
⇒ 해당복수 공종의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7-5.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영업 기간 및 위장전입 여부 평가 항목 신설

□ 영업기간 평가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10억이상 공사는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 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10억이상은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 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10억이상은 2점)
- ※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

□ 위장전입여부 평가

-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제이전여부, 영업활동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장 업체로 판명되면 감점 (10점)처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1. 입찰절차 및 적격심사 방법

□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용역

→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당해용역의 수행능력(경영상태)을 평가

□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9억원이상인 용역

→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27점) 및 지역업체 참여도(3점)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입찰공고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공개한다.

□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용역(정밀안전진단용역은 1억원이상)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를 적격심사 점수로 환산한 후 지역업체참여도 점수(3점)와 감안하여 일정점수 이상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2. 세부심사방법

□ 수행능력 결격사유(기준 제3조)

-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중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
-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회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

□ 경영상태 평가(기준 제4조 제3항)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
-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외부 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 평가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평가방법(기준 제5조)

- 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
 -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선순위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라면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추정가격 2억원미만 기술용역 분야별 세부평가방법

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①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함.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평가방법 - 2개사 공동도급

$$\Rightarrow \text{자기자본비율} = \frac{(A\text{업체 자기자본} \times \text{지분율}) + (B\text{업체 자기자본} \times \text{지분율})}{(A\text{업체 총자산} \times \text{지분율}) + (B\text{업체 총자산} \times \text{지분율})}$$

-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 ③ 특별신인도평가는 당해 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나. 특별신인도 이행실적 평가 방법

- 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
- ②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지역업체참여비율 30%(20%)이상	20%(10%)이상
3점	1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공고일(PQ대상이외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기준 당해 시·도지역내에 사전심사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를 소지한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당해 시·도와 접한 시도를 말함)의 해당 자격 소지자를 당해 시·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로 보아 점수 적용
- 건설기술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의 지역업체참여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 1점을 적용한다.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됨.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있어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발주자가 선택적용하고 미적용시 수행능력점수 70점으로 평가하며 적용여부는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의 비율 산정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이 경우 발주대상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 산정
- ⇒ 입찰공고시 과업내용별 분담비율을 제시하여 점수 예측이 가능토록 함.

□ 기술인력 평가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 (10)처리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

□ 추정가격 19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특별재난 선포지역영업 활동평가

- 해당시도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상 : 2 점
- 해당시도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90일 미만 : 1점

【건설 기술용역이외의 용역】

→ 시·도지사 매년초 시·군·구 필요한 용역 수요조사, 시·도표준안 작성,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시행

※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제5조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1. 입찰절차 및 적격심사 방법

□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물품

-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대상인 경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추정가격 1.9억원이상인 물품

-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후 낙찰자 결정

●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 ①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때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구매하는 경우
- ② 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 ③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

가. 내자물자

-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1억원 미만인 경우
- 1억원미만에 해당하는 행정용품(저장품) 및 단가계약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함이 효율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나. 외자물자

- 구매예정금액이 미화 10만불미만

- ④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2. 세부 심사방법

□. 납품실적 평가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물품]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30	A. 100% 이상	30
			B. 70% 이상 ~ 100% 미만	26
			C. 40% 이상 ~ 70% 미만	22
			D. 10% 이상 ~ 40% 미만	18
나.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20	A. 100% 이상	20
			B. 70% 이상 ~ 100% 미만	18
			C. 40% 이상 ~ 70% 미만	15
			D. 10% 이상 ~ 40% 미만	12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입찰 대상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평가
- ② 심사항목 가와 나 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적용하되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③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붙임 서식 3)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④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붙임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⑤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실적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시 명시된 금액이상으로 함

[추정가격 10억원미만 2.1억원이상인 물품] : 배점한도 2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25	A. 100% 이상	25
			B. 70% 이상 ~ 100% 미만	19
			C. 40% 이상 ~ 70% 미만	13
			D. 10% 이상 ~ 40% 미만	6
나.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15	A. 100% 이상	15
			B. 70% 이상 ~ 100% 미만	12
			C. 40% 이상 ~ 70% 미만	9
			D. 10% 이상 ~ 40% 미만	4

- ① 심사항목 가와 나 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적용하되 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10억이상 납품실적 ①, ③, ④, ⑤ 동일하게 적용

□ 기술능력평가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물품에 한하여 평가,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10.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인 이상	10.0
			② 3인 미만	9.5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인 이상	9.0
			② 3인 미만	8.5
			C. 기능사 보유	
			① 3인 이상	8.0
② 3인 미만	7.5			
			D. 미보유	6.0

○ 심사항목의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

□ 경영상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9.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7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3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8.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7.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균 결과가 2개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신인도 평가

- 신인도 평가는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품질보증	품질, 규격등에 대한 인증	2	A. EM, GQ,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2
			B. KS, CE, UL,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2
			C. “건”자 마크, 100PPM, K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	1
나. 기술보유	기술인증	2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KT, NT, IT, 전력 신기술,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2
			B. 특허, GD인증 보유자	2
			C.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보유자	1
다. 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2	A. GR, 환경표지의 인증(E마크) 보유자	2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또는 환경설비품질인증(EEC) 보유자	1
라.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2	A. 정부로부터 A/S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2
			B. 당해물품의 사후관리(A/S)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A/S망 또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2
마. 기 타	여성기업등	2	A. 여성이 대표인 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확인해 준 경우에만 인정)	1
			B. 여성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이상인 기업	1
			C. 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체상금	-2	A.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2
나. 품질하자	검사불합격 및 불량품발생	-2	A.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자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자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 규격과는 상이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 물품으로 감가조건부로 납품한 사실이 있는 자	-2

【계약질서 준수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부정당업자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10	A. 1년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6개월 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3개월 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D. 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6 -4 -2

- ①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가, 나, 다, 라”항의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동일 등급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함(단,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② “나”항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의 평가는 통상실시권자의 경우를 제외(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의 경우에도 제외)하여 평가함
- ③ “가”항의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에만 적용
- ④ “마”항 관련
 - 가)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에 가입한 증빙서류(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 등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나온 여성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함
 - 나) “C”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소기업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와 관련해서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소기업(중소기업청이 확인하는 소기업 관련 증빙자료 제출)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
- ⑤ 2. 계약이행성실도의 가항 및 3.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가항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자료에 의함

□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 등 기준일

-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평가에 따른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 업종평균율의 적용
 -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중분류업종(종합)의 자료를 적용하며 이를 입찰공고시 명시
 - 업종은 심사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이 속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업종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
- ※ 업종평균비율과 당해업체 경영상태는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시기가 존재함

□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 이행실적중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bullet \text{ 납품실적} = (\text{A업체 실적} \times \text{지분율}) + (\text{B 업체 실적} \times \text{지분율}) / \text{추정가격}$$

○ 기술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

○ 신인도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bullet \text{ 신인도} = (\text{A업체 신인도점수} \times \text{지분율}) + (\text{B 업체 신인도점수} \times \text{지분율})$$

□ 결격사유의 심사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

-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음.

VIII. 계약체결, 이행 및 대가지급

학습목표

- 계약의 체결, 이행, 대가지급절차를 숙지한다.
- 부정당업자 제재 및 효력, 지체상금부과절차 및 효력에 대하여 이해한다.
- 계약보증금의 귀속, 보증금 납부 및 면제대상을 숙지한다.
-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학습내용

1. 계약의 체결

-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자치단체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공사 낙찰금액 부기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의 종류

-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물품매각, 공공기관과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 1억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 과업지시서가 있는 경우 과업지시서
 -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다. 계약보증금

1) 금 액 : 계약금액의 10%이상

- 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경우 2배를 납부하거나 공사이행 보증서(40%) 제출 가능
- 용역의 경우 공사의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2) 납부수단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

-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음

3)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50%이상 출연법인, 각종 협동조합, 단체수의계약,
- 시행령제37조제3항제1호내지5호에 규정된자와 계약하는 경우
- 3천만원이하의 계약 및 일반적 관습상 보증금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물품구입이 곤란한 경우
-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동 가치 상당액 이상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가능

4) 계약보증금의 귀속

가) 자치단체귀속 사유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이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음

(2)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제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나) 자치단체귀속 절차

-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징수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또는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어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의 납부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납부조치
 - 동 지급각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

다) 자치단체귀속의 예외

- 당해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였거나 (예 : 보증시공 등),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건설공제조합 등)이 책임 시공을 하는 경우

● **TIP** :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20이상 납부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시공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지 않을 수 없음

● **TIP** : 일부 불이행시 자치단체 귀속

⇒ 일부품목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당해물품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결국 본래의 계약이 이행된 것이 아님, 따라서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함.

마)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부분 미지급금액과 상계가능 여부

○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 귀속할 계약보증금 중에서 동 미지급금액을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귀속사유발생시 상계가 가능함

5) 계약보증금의 반환

가)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나) 전체공사 등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해당 보증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수는 없음

다)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증금과 이자 지급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고
정기예금 예 탁	만 6개월 이 상	·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 당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최고의 이자율	
별단예금 예 탁	만 6개월 미 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 현금	·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 예금 최고의 이자율	

※ 이자 지급시에는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등을 반드시 징수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비교 〉

보 증 방 법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시	
	1 차 적	2 차 적
① 계약보증금납부 +시공연대보증인 입보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시 공 연 대 보 증 인 이 보 증 시 공	· 보 증 시 공 불 이 행 시 계 약 보 증 금 을 국 고 에 귀 속
② 계약금액의 20% 납부 *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음	· 곧바로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	
③ 계약금액의 40%상당 이행보증서 제출	·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	· 책임시공 불이행시 보 증 서 상 의 금 액 을 지 자 체 에 귀 속

질 의 회 신

<질의>

계약이행중에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의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1) 연대보증인 입보 없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변경이 가능하고,

2)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납부로 변경이 가능하며,,

3)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변경이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가능하나,

4)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을 경우로서 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임

<감사사례1> 계약보증금 부당 수납 및 부당 면제

- ①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방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수납
- ② 계약 불이행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약정함이 없이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히 계약보증금을 면제

<감사사례2>

○○공사가 1996. 6. 22. 김모와 단독택지 1필지에 대한 매도계약(금액 1억 700만원)을 체결하고, 3일 후에 위 김모의 요청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하면서 확정된 계약을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 제48조 제6항의 규정 및 매매계약서 제14조 제5항의 약정에 따라 수납한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함에도 계약체결 후 2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보증금(1,070만원)을 환불하였기 때문에 동액 상당 금액이 수입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

라. 연대보증인제도

- 1)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2)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20%의 보증서로 납부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도 없고
 - 보증서 발급기관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수도 없으므로
 - 타절 준공하고 새로운 입찰절차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함

TIP : 연대보증시 별도계약을 체결 여부

⇒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 대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바, 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3) 연대보증인의 의무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은 아님)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
- 연대보증인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계약자를 대신하여 당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받으면 지체없이 당해 의무를 이행(보증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보증이행의무를 짐
-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음

● TIP : 연대보증인이 선금보증 책임이 있는 지

⇒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보증의무는 당해 공사 시공상의 보증의무(계약 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한 보증 및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임

4) 연대보증인의 권리

-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

-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당해공사에 대한 계속공사에 있어서도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 등의 이익을 가짐

● TIP :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그 보증의무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 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하자보수는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의무).

5) 연대보증인의 교체등

-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 할 수 있음.
- 공동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
 -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 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함.

● TIP :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0%상당 보증서 등으로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처리방법

⇒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고 동 계약금액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관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수도 없음. 단지 이때에는 타절준공(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까지를 종결)하고 새로운 입찰절차 또는 수의계약 절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임

마. 공사이행보증제도

-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Performance Bond)를 발급한 기관이 업체를 선정하여 책임 시공하거나 보증금(계약금액의 40%)을 지자체에 납부
- 용역의 경우에도 이행보증제도를 준용할 수 있음

질의 회신

<질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책임범위

<답변>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보증의무는 당해 공사 시공상의 보증의무(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한 보증 및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임

3.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가. 착공 및 착수

1) 공사의 착공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2) 공사공정예정표
-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4)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5) 착공전 현장사진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신고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용역공정예정표
-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3) 기타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수신고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 사

1) 공사의 검사

-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나) 계약담당자는 준공(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 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의 검사

-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성검사

- 1)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3회마다 2회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 조서의 확인에 의한 약식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 2) 공사의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사급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선금지급

1) 선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노임이나 자재구입비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대상

가) 적용범위

(1) 대상 :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 ①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 ②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내인 계약 중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급범위

(1)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의무지급율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20%이상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30%이상	100억원~20억원	10억원 ~ 3억원	
계약금액의 50%이상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 (2)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범위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 **TIP : 20억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50%이상 ~ 70%미만 선금지급 가능, 즉 의무적 선금을 이상을 줄 수 있음**

● **TIP :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지급**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 것임.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능한 것이며, 지급 기준금액은 동예규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지급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다) 선금지급의 예외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선금을 지급전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내 지급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채권의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증서제출의 면제(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기관)

- ① 국가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지방공기업
- ④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정보화조합,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 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⑥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⑧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⑪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지급각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TIP : 선금반환시 이자상당액 산출기준

⇒ 종전 기준인 계약상대자의 주거래은행 어음대출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약정이자 산출은 현실적으로 발주처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대상 업체마다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서 발주처의 여유자금 정기예금시 이자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자율을 중 자치단체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개정

※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약정이자율은 7%

- (2)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 (1)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한다.

- ①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②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TIP : 선금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 지급 조건에 발주자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사용하는지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TIP :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가 아닌 자에게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나) 반환청구 및 재지급

-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②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③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 까지로 한다.
- (3) 선금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TIP : 기성금과 선금반환 및 하도급대금 관계

⇒ 계약해지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지시점의 기성금은 하도급대금 직불사유가 발생하여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지급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①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②다음으로 선금잔액과 상계하여야 하고 ③그래도 잔액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참고자료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 및 제51조 제5항, 대법원판례 2004.11.26. 선고2002다68362판결)

예) 기성금 10억원, 선금잔액 5억원, 하도급 신청액 3억원
①하도급자 지급 3억원 ②발주처 정산 5억원 ③계약상대자 2억원 지급

다) 선금지급조건

-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2)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아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동도급시 선금지급방법 비교선금의 정산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비 고
신청자	대표자	좌 동	
신청 방법	- 신청서상에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날인하여 구분 신청	- 신청서상에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날인하여 구분 신청	
지급계좌	- 대표자 계좌	- 대표자 및 구성원별계좌	
채권확보	- 원칙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납부 - 대표자 또는 구성원중 1인이 일괄납부 가능	-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	
선금반환	- 반환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의 선금에 대하여만 반환청구	좌 동	

마) 선금의 정산

- (1)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 예) 공동이행시 정산방법 >

- 계약금액 : 10억원
- 구성원별 출자비율 : A사 60%(6억원), B사 40%(4억원)
- 선금지급(5억원) : A사 3억원, B사 2억원
- 기성신청금액(2억원) : A사 1.2억원, B사 0.8억원
- 선금정산금액(1억원이상)
 - A사(0.6억원) = 3억원 × 1.2억원 / 6억원
 - B사(0.4억원) = 2억원 × 0.8억원 / 4억원

< 예) 분담이행시 정산방법 >

- 계약금액 : 30억원
- 구성원별 공사금액
 - A사 토목공사(20억원), B사 오수공사(10억원)
- 선금지급(9억원) : A사 6억원, B사 3억원
- 기성신청금액(10억원) : A사 5억원, B사 5억원
- 선금정산금액(3억원이상)
 - A사(1.5억원) = 6억원 × 5억원 / 20억원
 - B사(1.5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바) 선금 및 대가지급의 종류·근거규정 및 절차

종류	내용 및 근거규정	절차
선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액의 70%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다만,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0~50%는 의무적으로 지급 ○ 한계 : 자금사정허용한도내 지급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65조, 행정자치부 예규 “선금지급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후 선금지급 신청 → 보증서 징구하고 선금지급 → 선금사용후 사용실적 증명서 제출 → 기성대가지급시 정산 <p style="margin-left: 20px;">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p>
기성 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검사완료후 지급 ○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 근거 : 국가계약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부분이행완료 통지 →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 → 기성대가지급신청 → 7일 이내에 지급
준공 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대가지급 ○ 근거 : 기성대가지급 규정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완료 통지 → 14일 이내에 검사완료 → 준공대가지급 신청→7일 이내에 지급

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다)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기성대가의 지급

- 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지급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3-나-1의 경우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같음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3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1억원 이상(전문 7천만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5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공사이행의 주민참여감독제도 도입

○ 대상공사(영 제60조)

- | | |
|-------------------------------|---------------|
| ①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 ② 배수로 설치공사 |
| ③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 ④ 보안등 공사 |
| ⑤ 보도블럭설치공사 |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 ⑥ 마을회관 공사 | ⑦ 공중화장실 공사 |
| 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

※ 공사금액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함

○ 자격요건(영 제57조)

- ① 발주공사 관련 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②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이상 현장관리 업무 종사자 또는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 ③ 대학교수,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 ④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 ⑤ 감독대상공사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주민으로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공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 감독범위(영 제61조)

-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단체에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의 시정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

※ 계약담당자는 건의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또는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감독자 실비지급(영 제59조)

-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표준조례안 참고)

○ 감독조서(영 제62조) :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 감독자의 해촉(영 제58조)

- 감독 관련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이 하거나 불성실 하여 부적절한 경우
-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 공사감독일지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하자보수보증제도

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1) 하자보수보증금을

-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납부
-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

2)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 준공검사후 공사대가를 최종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국제법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준용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1) 국가계약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토목사업 및 기타소규모사업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의 재배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내지 4호에 규정된 자(국가기관등 입찰보증금납부면제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

나)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

- 3)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조치

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

2)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정함

※ 개별법령에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담보기간 설정 예) 문화재공사(문화재보호법), 소방공사(소방법)

라.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1)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

2)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3)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 유기증권취급공무원(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 **TIP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자체에 납입
- ⇒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세입세출현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토록 보증기관에 통보

● **TIP :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절차**

- ⇒ 하자보수를 위한 지출원인행위(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 → 지출

마.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계약보증금의 반환 참조

- 1)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함
- 2)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

● **TIP :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 ⇒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TIP : 공사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나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처리방법은

예) 선금정산후 준공대가 1억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예정금액 2억원

⇒ 준공대가에서 우선 1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 계약이행보증서를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

<회계통칙> 노사분규에 따른 지체상금 처리기준

- 노사분규로 인한 계약이행지체는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의 관련업체 노사분규로 인하여 원자재, 부품등 조달이 불가능하여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보아 그 해당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부품의 대체사용이나 공급업체의 대체가 사실상 가능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없음

질 의 회 신

<질의>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될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감리용역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인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감리계약의 이행지연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5. 계약의 이행 지체 및 해지·해제

1) 사 유

가)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

(1)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물품구매계약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1)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①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하거나 ②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2)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지체상금은 병과하지 않음

나) 단, 국가정책사업대상, 노사분규의 경우 연장 가능

※ 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질 의 회 신

<질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요건산정시 공사기간의 의미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위의 규정중 공사기간은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아닌 총공사의 이행을 위한 공사기간을 의미함

6. 부정당업자 제재

1) 의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2) 제재사유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재기간

1개월이상 2년이하

※ 6개월 범위내에서 경감 가능

4) 제재효력

가)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쌍벌주의

나)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

다) 효력의 승계 : 동질성 기준(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확인)

<회계통첩> 장기계속공사의 2차이후 계약체결거부는 부정당업자 해당

장기계속공사계약자가 그의 사정으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감사사례>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등 계약업무 부당처리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갑”회사에 총액 13억 7,700만원에 도급한 교사증축 등 공사의 제2차분 공사를 “을” 회사가 보증 시공하였으므로 제3차분은 당초의 낙찰률 80.5%를 적용한 금액으로 “을”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수의 계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을”회사도 참가시킨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동 회사와 계약함으로써 위 낙찰률 적용금액보다 1억 9,532만원 상당 공사비 과다 부담

질 의 회 신

<질의1>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답변>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면허에도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임

<질의2>

법인합병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임

-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7. 하자보수

- 계약이행완료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하자보수를 책임 짐
- 하자담보책임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별표 1)
 - 1~10년
 - 공사의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시 기 :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전까지 납부
 -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5%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제가능

공 종 별	보증금율(%)	보증기간
· 철도, 댐, 터널, 철강교,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 등 주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5	최장 10년 최단 1년 (6단계)
·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4	
· 관개수로, 도로(포장포함),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3	
· 기타공사	2	

- ※ 복합공사의 경우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함
-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약정사항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납부방법과 같이 현금과 각종 보증서로 납부 받아, 이를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 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직접 사용 가능
 - 사용(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금고에 귀속
- 하자검사
 -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 하자검사 조서 작성
 - ※ 3천만원이하 공사는 동 조서작성 생략 가능
- 하자보수의 이행
 - 계약 상대방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하자보수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동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소요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 착공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

질 의 회 신

<질의>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 지역주민과의 계약, 정부투자기관, 국가 및 지자체가 50%이상 출연한 법인, 각종 협동조합과의 계약, 3천만원 이하의 소액공사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감사사례>

○○시 북구에서 구의회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4층-7층, 1,542㎡)을 수의계약(계약금액 : 9억 6,000만원)으로 임차하면서 그 건물은 감정평가액을 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후 순위 전세권등기만으로는 채권확보를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주)한국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39억원, 감정평가액 32억원)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도 인근 부동산업소의 추정시가(50억원)만을 받고 후순위 전세권등기만 하고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건물주의 부도에 따른 경매처분결과 위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자치단체에 동액의 손해를 끼쳤음

질 의 회 신

<질의>

연대보증회사의 하자보수책임여부 및 소요비용부담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시 입보된 시공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보수를 위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시공연대보증인간에 민사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학습정리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금)를 징구해야 하며공사의 경우 계약보증서 10%에 연대보증인 1인, 계약보증서 20%, 계약이행보증서 40%중 계약상대자가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한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된 후 100분의2이상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계약목적물에 따라 준공 대가지급전에 하자보증서를 징구한다.
- 지체상금은 계약만료일 이전에 준공검사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검사중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 보완 지시일 부터 최종준공일 까지를 일수로 지체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계약만료일 이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익일부터 최종 검사일 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함
- 부정당 업자의 제재는 1월이상 2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재시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연습문제

1. 공사의 의무적인 계약보증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연대보증인 1인과 계약보증금을 10%이상 납부
- ② 연대보증인없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0%이상 납부
- ③ 연대보증인없이 공사이행보증서 (계약금액의 40% 납부를 약정하는)를 제출
- ④ 연대보증인 1인과 계약보증금 20%이상 납부

<정답> ④연대보증인 1인과 계약보증금을 10%이상 하도록 하고 있음

2. 부정당 업자의 제재에 대한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 ① 최종 결정은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다.
- ③ 제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 ④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정당 업자로 제재토록 규정하고 있음

3. 다음중 상계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 ① 계약보증금(면제자 협약서)과 기성대가 ② 입찰보증금과 기성대가
- ③ 하자보증금과 준공대가 ④ 지체상금과 준공대가

<정답> ② 입찰보증금은 시기적으로 기성대와 상계처리가 불가함

용어사전

○ 계약문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문서는 공사·물품 및 용역계약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① 공사 :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② 물품 :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효과를 가짐
- ③ 기술용역 :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 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 되며 상호 보완적 효과를 가짐

○ 연대보증인

지방계약법령상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 보증금의 10%를 납부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입보토록 하는 바 그 자격은 아래와 같음

-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 ②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
- ③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등

○ 유가증권

지방계약법령상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음

- ① 국채증권 ② 지방채증권 ③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 ④ 사채권(社債券) 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출자증권 ⑥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관련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1호)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92)

제Ⅸ장 계약금액 조정

학습목표

- 계약금액 조정사유와 조정요건을 이해한다.
-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시 조정방법 및 조정절차를 알아본다.

학습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의 의

- 1)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함

나. 조정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되었을 것
 - 이행여부와 무관하므로 공사중지기간 등 포함
 -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일 것

다.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 조 정 금 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 품목 조정율 = $\frac{(\text{등락폭} \times \text{수량}) \text{의 합계액} + \left[\begin{array}{l} \text{통합계약에 대한 일반관리비} \\ \text{이윤, 부가가치세 등} \end{array} \right]}{\text{계 약 금 액}}$
○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등 락 율 = $\frac{\text{물가변동 당시 가격} - \text{계약체결 당시 가격}}{\text{계약체결 당시가격}}$
※ 위 산식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질 의 회 신

- 설계변경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계약체결후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당초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함
- 연대보증시공시의 계약체결일은 원계약자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의 선택은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체결시 미리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추후 계약당사자 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가격정보지 등에 명시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가격과 변동시 가격을 조사산정함
-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의 계약단가는 “내역입찰 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함
-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비목도 등락목 산출대상이 되며, 이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은 설계변경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금액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대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일부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만 산정하여 산출해서는 아니 됨
- 산재보험료를 변경으로 보험료가 증감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나 동금액의 증감으로 인하여 산출한 등락폭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 설계 후 계약체결일까지의 가격변동은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반영 불가
-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계약체결당시가격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함(계약당시 복합단가를 견적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변동당시가격도 견적방법으로 산정)

라.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1) 비목군 편성

A 노무비, B 기계경비(국산장비와 외산장비 분리), C 광산품, D 공산품, E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농림·수산물, G 산재보험료, H 안전관리비, Z 기타 비목군

2) 계수산정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 공사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a,b,c,d...z로 표시

○ 지수산정

- A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부문별 평균노임.
- B 기계경비 : 표준품셈상 건설기계의 국산 및 외산장비별 전체 가격의 평균치
- C ~ F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지수표 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G, H, Z : 지수조정을 산출요령상의 공식에 따라 산출

○ 지수조정율

$$K = (a \times \frac{A_1}{A_0} + b \times \frac{B_1}{B_0} + c \times \frac{C_1}{C_0} + \dots + z \times \frac{Z_1}{Z_0}) - 1$$

다. 조정금액의 산정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함.
-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정부귀책사유, 폭풍 기타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경우는 포함시킴
- 선금이 지급된 경우는 그 비율만큼 공제
 - 선금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 공제하는 것임
 - 공제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비율
 - 장기 계속공사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에서 공제함
- 기성수령부분은 제외됨(개산계약은 예외) →개산금의 활용 필요
- 계약이행기간 중 요건 충족되면 준공 후에도 조정가능

바. 계약금액 조정신청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사. 조정규정의 성격

-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임
-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지급 가능

아. 택일적용

- 품목조정율 방법과 지수조정율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택일하여 계약상 명시함

자. 감액 조정시의 고려사항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원칙 : 공사공정예정표 기준
 - 예외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동 기간을 포함
- 선금공제
 - 증액조정인 경우는 공제하지만 감액조정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기성대가 공제
 -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불공제(감액 받음)
 - 발주기관이 감액조정 요구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액조정 대상에서 제외(감액받지 않음)
- 감액 요청자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차. 조정기한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대가조정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질 의 회 신

- 물가적용대가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발주자가 감액조정통보 전에 기성대가가 확정급으로 먼저 지급된 부분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된 부분은 포함되는 것임
- 선금공제부분은 계약금액감액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당초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나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비율을 의미함
- 조정기준일 이후 실제조정 지급일 전에 선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금 부분 공제제도의 취지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대상이 되며 조정기준일 후에 수령하는 선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의 의

-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 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임
- 계약금액 조정사유
 - 설계의 변경으로 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신기술·공법 또는 신기술·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사유

구 분	조 정 방 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서와 현장상태(지질, 용수 등)가 상이한 경우 ○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 있는 경우 ○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절차> 업체의 서면통보→계약담당공무원 검토→설계변경조치(도면변경, 내역산출 등)→시공 ○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담당자는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공사규모 증감 등) <절차> 계약담당자 서면통보→계약상대자와 협의→설계변경조치→시공

다. 계약금액 조정방법(영 제7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구 분	조 정 방 법
업체요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 원칙 : 계약단가에 의함 예외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정부요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함 ○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합의 조정

※ 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대안부분) : 영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 계약물량증가 : 협의결정 (설계변경당시단가 ~ 계약단가 범위내)
- 신규비목 : 설계변경당시 단가

라. 조정기한

조정 신청일부터 30일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가. 의 의

설계변경, 물가변동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임

나.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
- 발주처의 사정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다. 조정방법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내에서 조정

※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라. 계약금액 조정신청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마. 조정기한 (규칙 제74조)

조정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질 의 회 신

-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됨
-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증감되는 물량 및 단가 등은 단가 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임
-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작성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당시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각각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실제가격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 함

학습정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중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의 개념 및 조정방법, 절차를 알아본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이해한다.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 및 방법을 이해한다.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대상 및 방법을 이해한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공제, 기성대가공제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한다.
- 계약금액조정시 감액조정사유 및 절차를 이해한다.

연습문제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이 아닌 것은?
 - 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되었을 것
 - ②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경과
 - ③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일 것
 - ④ 90일내에는 공사중지기간 등이 포함되지 않음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설계서와 현장상태(지질, 용수 등)가 상이한 경우
 - ②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 있는 경우
 - ③ 설계서간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 ④ 일위대가 적용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적용된 경우

<정답> 1. ④ / 2. ④

용어사전

○ 물가변동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계 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한 조정을 산정시 각 비목군의 산출내역서상 예정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 내역서상 예정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개산급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 후 조정된 계약금액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개산급이라고 함

○ 신규비목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을 의미함

관련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내지 75조
동법시행규칙 제72조 내지 제74조

제 X장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및 국제입찰

학습목표

- 대형공사의 입찰 및 낙찰자결정방법을 이해한다.
- 국제입찰대상금액, 대상기관, 국제입찰요령을 학습한다.

학습내용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가. 의 의

-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동 공사를 말함
- 대형공사 유형
 -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 대안입찰에 의한 계약
 - 특정공사의 계약(100억원 미만 신규복합공종 공사중 대안 또는 일괄입찰 공사)

<대형공사 설계비보상>

- 대상공사 :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사
- 보상비 수령자 : 탈락된 우수설계자(3인이내)
- 보상비 지급기준 :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총공사비의 1.5% 수준)

나.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대상공사의 공고

-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매년 1월 15일까지
- ↓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월말까지
- ↓
- 공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홈페이지 및 정보처리장치(인터넷, 일간신문공고 병행가능)에 공고

다. 예정가격의 결정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음

질 의 회 신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심의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해야 하는 것임

라.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구 분	대 안 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적격자 선정	- 낙찰적격자 선정 ○ 최저가격인 원안입찰금액과 관계없이 대안입찰금액이 총공사 예정가격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을 모두 낙찰적격입찰로 선정 -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 · 기본설계 우수자 4명중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구 분	대 안 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낙찰자 선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대안설계의 적격여부 및 원안설계와 대안설계의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에 통보 ○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한 후 원안설계자와 함께 적격 심사를 하여 기본설계대안제출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를, 실시설계대안제출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 	<p>실시설계적격자로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후 낙찰자로 선정</p> <p>※ 실시설계·시공일괄 실시설계점수가 높은 4명중에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p>

2. 국제입찰

가. 국제입찰 대상기관 및 금액 : 광역 자치단체만 적용대상

(단위 : 만SDR)

구 분	개 방 기 관	개 방 범 위
국가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 (안기부 등 4개 안보관련기관 제외)	· 건 설 : 500(84억원)이상 · 물품·용역 : 13(1.9억원)이상
지 자 체	· 6개 광역시와 9개도	· 건 설 : 1,500(222억원)이상 · 물품·용역 : 20(3억원)이상
기타기관	· 23개 정부투자기관	· 건 설 : 1,500(222억원)이상 · 물품·용역 : 45(7.5억원)이상

※ SDR :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1) 대상국가(정부조달협정국)

구 분	협 정 국
유 럽	EU 25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체코,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나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EC.
미 주	미국, 캐나다, 아루바
아시아	한국, 일본,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

2) 임의국제입찰계약 대상

개방대상은 아니지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국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준용함

-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내생산곤란 등 국제입찰에 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국제입찰 제외대상

-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 예시 · 재판매용 : 가스공사의 LNG구매
 - 생산용 :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구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제조 및 구매
- 관련법령에 의한 농수축산물의 구매
- 국방·공공질서 등의 목적을 위한 조달
- 장애인·자선단체·재소자 등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조달
- 관련법에 의한 인공위성 제조·구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나. 국제입찰공고

1) 공고기간

- 원 칙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40일전에 공고
- 예 외
 - 긴급 및 재공고 : 10일
 -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의 공고 및 반복계약의 경우 후속공고 : 24일
 - 지명경쟁의 경우 특례 : 유자격자명부(시공능력 공시명부등)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 입찰시 --- 최소 65일
- ※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일반공고일로부터 별도로 25일 이상 부여 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65일이상이 소요

2) 공고내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외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당해 조달과 관련한 후속조달에 관한 사항 및 후속 입찰공고에 대하여는 그 공고의 예정시기
 - 입찰방법 및 협상의 포함여부
 - 조달형태(구매·임차 및 할부구매 등)
 - 서류제출을 위한 주소와 그 마감일 및 사용언어
 - 협정대상여부
- WTO 공용어로 요약공고
 - 국제입찰공고에는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하나로 다음사항을 공고문 하단에 첨부하여야 함
 - 계약의 목적물
 -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 발주기관의 명칭 및 주소

질 의 회 신

<질의>

국제입찰대상금액 및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도 국제입찰대상금액에 해당되면 국제 입찰에 의하여야 하는지

<답변>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는 추정가격 222억원이상 물품·용역은 3.3억원 이상은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음
- 다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대상에서 제외됨

다. 국제입찰의 원칙

○ 국제입찰의 원칙

-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 특정 회원국이나 공급자에 대해 여타 회원국의 물품이나 공급자와 차별을 두지 않으며, 특정공급자에 대해 특별 우대 조치를 해서는 안됨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외국물품이나 공급자에 대하여 국내물품 또는 공급자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
- 그밖에
 - 협정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발주하거나,
 - 국산화 비율 지정 등의 제한조치를 금지

○ 낙찰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 낙찰자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당해 입찰, 낙찰자, 발주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
- 입찰참가자의 요구시 원칙적으로 낙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
 - ※ 예외 :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계약에 관한 기록의무(특례규정 제24조, 협정문 제19조)

-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 등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
- 보존문서 내역
 - 경쟁입찰 : 입찰자 및 개찰참여자 성명, 낙찰자성명, 낙찰금액, 낙찰사유 등
 - 수의계약 : 계약의 목적 및 금액, 적용법령조문 및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주소 등

○ 계약실적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취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라. 수의계약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 특정조달계약에서의 수의계약 사유

-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특허권 또는 출판권 등의 경우
-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물품 및 용역조달시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하거나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제상 관례의 적용

- 국제거래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써 통화, 보조금 형태 및 납부시기, 대금지급, 검사방법 및 물가변동조정 등에 대하여 국제상 관례를 적용할 수 있음

용어사전

○ 국제입찰

국제입찰이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 일괄입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지침 등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함

○ 대안입찰

-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의 제출이 허용된 입찰을 말함
- 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기본 및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설계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협정은 1994년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서명된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PTA)중의 하나임.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를 한 국가들에 대하여만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하여는 내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고시금액

WTO 협정시 정한 우리나라의 개방대상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매 2년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

※ 2002. 12. 24 고시 : 공사는 추정가격 244억원이상, 물품·용역 : 추정가격 3.2억원이상

관련규정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특례규칙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정자치부 고시)

제XI장 일반건설공사의 하도급

학습목표

- 하도급제도의 개념 및 관련법령을 이해한다.
- 하도급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한다.

학습내용

1. 하도급제도 개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시공·제조 또는 용역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제3자의 손익부담 및 책임하에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완성하게 하는 것

2. 하도급의 제한

- 일괄하도급의 금지 및 주된공사 전부 하도급 금지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 ※ 아래의 경우로서 발주자의 서면승낙시 가능
 - 전문공사 종류별로 각각 하도급
 - 도서지역, 산간벽지에서 하도급
- 재하도급의 금지

3. 부당하도급의 제재

- 발주자는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을 때 변경요구 가능
-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해지 가능
-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자는 1~2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4. 하도급계약 결과통보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하도급계약 변경 또는 해제 포함)

5. 하도급대가의 지급

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 하수급인의 시공부분 상당액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 어음은 만기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봄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 ※ 예외 : 고시수준이상 협력업체 관계 및 재무구조, 하도급 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미교부 가능
- 수급인이 선금을 받은 때에는 선금급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급을 지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검사 신청시 하수급인의 시공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에도 하도급 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함

나.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대가 직접 지급

-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직접 지급절차
 - 수급인의 파산 등의 경우
기성부분과 하수급인 시공부분 금액 확정 →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통지
→ 15일 이내 청구 → 직접 지급 → 수급인에게 통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아니한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을 통지 →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미교부 사유통보 → 보증예외사유 해당여부 검토 → 검토결과 통보
→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 시공부분 명시청구 → 직접지급 → 수급인에게 통보

6. 하도급 심사승인

-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관서의 서면승인
 - 일반업자가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통지로 같음
- 하도급금액이 계약금액의 82%미만일 때에는 심사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해야 함
- 법원판결 또는 파산, 부도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을 인정한다는 문서를 제출 받은 후 하도급계약을 승인해야 함
- 하도급 승인시 검토사항

< 사업부서 >

-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여부
-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지 여부
- 하수급인은 당해공사 시공에 적정한 자인가 여부
- 하도급계약서는 소정의 서식인가
- 첨부서류 누락은 없는가 :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등
- 하도급계약 공종내역은 적정한가
- 부대입찰인 경우 부대입찰서와 일치여부

< 계약부서 >

- 하도급계약의 통지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인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첨부되어 있는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발생시 이를 용인하는 문서 첨부여부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서식

<p>1. 발주자 : 원도급공사명 :</p> <p>2. 하도급공사명 :</p> <p>3. 공사장소 :</p> <p>4. 공사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p> <p>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공급가액 : 일금 원정 (노무비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p> <p>6. 대금의 지급 가. 선금급 1) 계약체결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회 2) 목적물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다.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일로부터 ()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p> <p>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p>	<p>8. 계약이행보증서발급기관 : 증서번호 :</p> <p>9. 공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기관 : 증서번호 :</p> <p>10. 하자보수보증금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복합 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기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r> <th style="width: 15%;">공종</th> <th style="width: 25%;">계약금액</th> <th style="width: 25%;">보증율(%) 및 금액</th> <th style="width: 35%;">하자담보 책임기간</th> </tr> </table> <p>11. 지체상금율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 건,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 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 년 월 일</p> <p>*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p> <p>*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p>	공종	계약금액	보증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종	계약금액	보증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질 의 회 신

- 2개 업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업종에 해당하는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음
- 발주자로부터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음
- 미장방수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종된 공사로서 도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도장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계약 이행을 불가능한 경우 기성대가 중 하도급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선금으로 공제해야 함
- 의무하도급금액 산출기준이 되는 1건 공사금액은 최초 도급계약체결시 총도급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차별로 나누어 시공하는 것이라면 전체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의무하도급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매건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의무하도급 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는 당해하수급인에 대하여 발행한 증명서만 첨부하면 될 것임

학습정리

- 하도급 심사승인하는 경우 부서별로 검토해야할 사항을 숙지한다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대상요건을 살펴보고, 직접 지급절차를 알아보자
- 하도급의 제한, 제제사항을 알아보자
-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및 부대입찰에 대해 알아보자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8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 내지 제30조
-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행정자치부예규)

<부록>

계약업무관련 법원의 명령

채권압류의 유형

1. 가압류 결정(假押留 決定)

가. 의 의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
 - 결정 : 변론을 거치지 않는 명령 ⇒ 당사자에게 송달로 효력발생
 - 판결 : 변론을 거쳐서 하는 명령 ⇒ 선고에 의해 효력발생

나. 관련규정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없이 한다(민사소송법 제560조).
-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은 당해공사의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 임금채권은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질 의 회 신

- 법원의 전부명령이 세무서의 채권압류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전부명령 해당부분의 채권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재산권은 압류할 수 없음
- 원계약자의 압류처분효력은 원계약자가 시공한 부분까지만 미친다고 보아야 함(따라서 선금은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2. 압류명령(押留命令)

-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서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채권의 압류효력을 발생하는 것(민집223)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이로써 개시되며(민집227·233·251) 이 명령에 위반하는 처분, 즉 채무자의 채권양도나 제3채무자의 변제는 압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함
 -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민집225)에 의하여 행해지며 압류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미리 제3채무자 및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음(민집226)
- ※ 민집 = 민사집행법

3. 추심명령(推尋命令)

가. 의 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게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하는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

나. 관련규정(민사소송법)

-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 절차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법 제563조2항).
 - ※ 채권자 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압류액을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차액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법 제565조1항).
-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압류제한한 추심명령액에 대하여 다른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법 제565조2항).
-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 제3채무자가 추심 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訴)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582조1항).

4. 전부명령(轉付命令)

가. 의 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변제에 대신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

나. 관련규정(민사소송법)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법 제564조).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채무자가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법 제563조5항).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법 제563조7항).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법 제580조2항).

질 의 회 신

-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당해공사대금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청구없이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징구하고 압류채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전부명령 집행과 관련없음(세금계산서를 징구할 필요가 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대위납부할 의무는 없음

5.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

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최우선적으로 송달됐을 경우 :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채권액내에서 단독으로 지급 가능

● TIP : 관련조항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민집 제229조제3항).
-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집 제231조)

나.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압류가 경합될 경우의 처리 : 공탁

● TIP : 관련조항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집 제229조제5항)
-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민집 제248조제1항)

6. 국세와 근로복지공단 압류의 우선순위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가)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가)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가)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채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나.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먼저 송달됐을 경우

- 1) 공단압류금액에는 가산금, 보험료로 구성되어있음
-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1호에 의하여 체납처분비, 가산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므로 체납처분비와 가산금은 공단에 지급하고
- 3) 남은 금액으로 국세압류금액 지급
- 4)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단에 지급 가능

 **TIP** : 근로복지공단에 압류금액 중 체납처분비와 가산금내역 송부 요청

다. 국세 압류가 먼저 송달됐을 경우

-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국세가 우선되므로 세무서 우선 지급
- 2)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단 지급 가능

7. 국세압류와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우선순위

가. 추심명령과의 관계

세무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 우선한다(제35조 (국세의 우선) 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나. 전부명령과의 관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 채권이 있는 경우 동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한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간 압류경합

가. 관련법령

1) 국민연금법

제79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9. 판례경향

○ 부산지법 2003.1.9.선고2002가소900026판결

- 국민연금보험법 제79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은(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전 법률) 징수절차에 관하여만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위 체납처분절차에서 그 채권의 수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분받아야 할 것이다.

10. 공탁처리절차

가. 의 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기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

나. 관련규정

-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 채무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
- 2) 금권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민사소송법 581조1항).
- 3)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581조2항).
- 4)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581조3항).

다. 공탁의 종류

- 1) 변제공탁 : 공탁함으로써 채무이행에 가름하는 공탁
※ 토지보상금 등
- 2) 집행공탁 : 압류채권자가 다수이고 제3채무자의 채무액보다 압류채권액이 많을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토록 하는 공탁
※ 부도로 압류채도시 활용
- 3) 보증공탁 : 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압류자(채권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공탁(일명 가압류보증공탁)
- 4) 보관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공탁
- 5) 몰취공탁 : 자기의 주장이 허위일 때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

라. 공탁절차(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 1) 공탁서 2통 작성 제출(규칙 19조) : 공탁자 → 법원 공탁공무원
- 2) 공탁서 수리 및 공탁금납입서 교부(규칙 25조) : 법원 공탁공무원 → 공탁자
- 3) 공탁금 납입(규칙 25조) : 공탁자 → 공탁물보관자(은행)
- 4) 공탁금 납입통지(규칙 26조) : 공탁물보관자 → 법원 공탁공무원
- 5) 공탁신고(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 140조) : 공탁자 → 법원(민사부)

마. 공탁금의 배당(민사소송법)

- 1) 배당요구(법 580조) : 채권자 → 법원
- 2)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법 586조) : 법원 → 각 채권자(7일내)
- 3) 공탁금배당표 작성(법 587조) : 법원
- 4) 배당표의 열람(법 588조) : 채권자 및 채무자(3일간)
- 5) 배당실시(법 589조)

11. 전부명령, 공탁 등과 부가가치세

가.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22601-564, '85.3.27)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338 판결)

공사수급자가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공사수급자가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공사수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그 자체의 존속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세액 상당금액의 양도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12. 하도급대금직불 사유와 압류 등의 우선순위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자가 발주청에 직접지급 요구서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1) 압류 또는 전부명령등이 직접지급 요구서보다 먼저 도달했을 경우 압류 등이 우선
- 2) 직접지급 요구서가 먼저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직접지급이 우선**

● **TIP**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다 하여 항상 직접지급이 우선 하는 것이 아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2. 개별법령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

가.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시행령 제88조

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법 제88조)

나)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령 제84조)

2)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에 동일하게 명시

나. 건교부 유권해석

1) 공탁할 수 있는 노임의 범위와 지급방법(건경58070-1467, '01.12.4)

⇒ 건산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은 압류대상이 아님으로 동 금액을 공제하고 공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당해 노임의 지급방법은 관련법령의 직불조항 등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주자인 공사발주기관이 노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압류금지대상 노무비에 제잡비가 포함되는지 (건경58070-283, '99.2.11)

⇒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산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3) 공사대금 압류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건경58070-1167, '99.7.5)

⇒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노임 압류 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항변등으로 다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최종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13. 채권양도의 제한

채권양도라 함은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특히 채권양도라 함.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다만, 선금지급액을 정산하지 않고는 양도할 수 없음(선금지급요령 제4조제2항)

나.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 가능

-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계약 특수조건에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및 조건을 명시

예) 지역개발공채 우선매입 조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14.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자

가. 관계법령

1) 국세징수법(제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지방세법(제38조)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부명령 등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자

1)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

-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 제출
-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 증명서 제출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상 수급사업자는 건산법상 하수급자를 의미함

다.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15. 시공도중 건설업체의 부도시 처리예시

<사 레>

- 공 사 명 : ○○○공사 ○ 계 약 자 : A
- 계약기간 : '95. 5. 1~'96. 6.30(사고이월) ○ 공동도급자 : B
- 계약금액 : 1,000백만원 ○ 연대보증인 : C
- 선금지급 : 300만원(30%) ○ 부도일자 : '95. 12. 1
- 1차 기성금 지급 : 350백만원(기성율 50%)
- ※ 선금정산 : 300백만원 $\times \frac{500\text{백만원}}{1,000\text{백만원}}$ = 150백만원
- 채권가압류('95.12.10까지) : 10건 5,000백만원
- 전부명령('95.12.11) : 1건 100백만원
- 추심명령('95.12.12) : 1건 100백만원

가. 조치할 사항

(1) 계약자 및 공동도급자에게 계속 시공여부 의견제출 요구

※ 포기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요청과 동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대상임을 강조

(2) 계속시공 포기 또는 사실상 공사중단시

① 공사중지명령 및 기성검사원 제출지시(계약자 및 공동도급자)

② 기성부분 검사실시 : 채권압류의 효력한계 구분. 보증시공대상의 명확한 구분

※ 기성검사원 미제출시 직권검사

③ 기성검사결과 지급잔액의 공탁조치

※ 기성율 70% 경우 : $\frac{700\text{백만원}}{\text{기성금}} - \frac{650\text{백만원}}{\text{기금지급액}} = \frac{50\text{백만원}}{\text{공탁금액}}$

④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 요청

※ 불응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대상임을 강조

⑤ 부정당업자 제재(계약자 및 공동도급자) : 청문 후 제재처분(행정절차법)

(3)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불응시

①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귀속조치

② 잔여공사 재설계 발주

③ 연대보증인의 부정당업자 제재 : 청문 후 제재처분(행정절차법)

색 인 목 록

【가】

개산급	109, 431
개산계약	207
경리간이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168
결산의 처리순기표	137
결산잉여금처리	143
계산증명	150
계속비계약	212
계약문서	420
계약분쟁조정위원회	267
계약심의위원회	265
계약체결 금지	174
고시금액	439
공동도급계약	214
공사이행보증제도	391
공유재산의 종류	153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161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155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157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75
국제입찰	439
기술용역	224

【다】	
단가계약	210
단독계약	214
단연도계약	212
대안입찰	439
도급경비	107
【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차이점	111
【바】	
부정당업자제재	413
【사】	
선금급	108
세입세출 외 현금수납 및 반환절차	128
세출예산의 집행흐름도	26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11
수의계약	279
신용카드발급절차	118
【아】	
연대보증인	420
연대보증인제도	388
예산의 집행품의·합의 범위	28
예산비목별 집행기준	57
예산의 과정	136
예정가격	224, 241

일괄입찰	439
일반경쟁계약	269
임시일상경비출납원	106
입찰공고	228
원가계산	249
유가증권	420

【자】

장기계속계약	212
적격심사제도	301
제한경쟁계약	270
지급명령시 지출원검토사항	54
지명경쟁계약	276
지방의회의결산승인 절차	146

【차】

총액계약	210
추정가격	238

【하】

하도급제도	441
하자보수	415
하자보수보증제도	408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13
회계관계공무원책임 및 재정보증	19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	10

회 계 실 무

2008년 2월 일 인쇄

2008년 2월 일 발행

편 집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기획지원부

집 필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서 기 관 최 두 선

교 정 : 경상남도 백인수
경상남도 김진성

인 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생인쇄조합
TEL : (02) 426-4415
FAX : (02) 429-9562

※ 이 책자의 전문(全文)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홈페이지
(www.logodi.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비매품>>

2008 공통교재
회계실무